

2013년

#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4. 2.

연구위원

천창민

연구위원

이현정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 序 言

2013년은 자본시장 관련 법제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우선, 금융당국이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대형IB, 대체거래시스템(ATS) 및 장외거래CCP 등의 법제가 완비된 한해였으며, 시장제도 측면도 코넥스시장의 창설을 통해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웅진, STX, 동양 사태 등 투자자의 신뢰를 실추시킨 사건들도 있었다. 특히, 2013년 하반기에 발생한 동양 사태는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투자자보호의 필요성과 면밀한 금융감독 및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2012년과 마찬가지로 2013년에도 금융당국은 이러한 자본시장의 다이나믹한 상황에 따른 관련 법령등을 정비하였다. 먼저 자본시장법은 2013년 4월 5일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구체적 사항을 마련하고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대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청산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였다. 5월 28일 개정에서는 대형IB 활성화에 대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고, 시장인프라의 선진화를 위해 거래소 허가제의 도입 및 대체거래시스템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도입하기 위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다. 8월 13일 개정에서는 코넥스시장의 참여자가 전문투자자 등으로 제한되는 특성을 고려한 여러 규제완화가 시도되었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그리고 자율규제기관의 관련 규정에서도 이상의 자본시장법상 제도적 변화에 따른 정치한 제도적 보완과 정비가 있었다.

올해의 보고서는 종래 본문과 부록으로 나누어 제도적 동향을 살펴 보던 이원적 체계에서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사항 및 법령 등의 주

무기관을 기준으로 분류체계를 바꾸어 일원적 방식으로 전체적인 편집 체계를 바꾸었다. 이러한 시도에 따라 이 보고서의 구성은 총 4편으로서 법령(제1편), 금융위원회규정(제2편), 한국거래소규정(제3편), 금융투자협회규정(제4편)으로 대분류하고, 보고서의 말미에 주요 용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색인을 덧붙였다. 또한 각 개정사항과 관련된 자료 등을 추가하여 제도동향에 관한 내역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보고서가 참조용으로서 보다 손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고서 용지의 크기를 종래보다 축소하여 인쇄하였다. 모쪼록 이러한 시도가 자본시장연구원의 제도동향 보고서를 애용하는 모든 독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연구원의 천창민 연구위원과 이현정 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저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원고 정리와 편집을 담당한 주혜림 연구조원에게도 감사드린다. 이 보고서가 우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2014년 2월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김 형 태

## 목 차

<b>제1편: 법령 등</b> .....	<b>3</b>
<b>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b> .....	<b>3</b>
1. 2013/4/5 개정 · 7/6 시행 .....	3
2. 2013/5/28 개정 · 시행 .....	13
3. 2013/8/13 개정 · 11/14 시행 .....	37
<b>I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b> .....	<b>45</b>
1. 2013/4/5 개정 · 4/5 시행 .....	45
2. 2013/6/21 개정 · 시행 .....	48
3. 2013/7/5 개정 · 7/6시행 .....	50
4. 2013/8/27 개정 · 8/29 시행 .....	61
5. 2013/11/13 개정 · 11/14 시행 .....	74
<b>II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 .....	<b>77</b>
1. 2013/7/5 개정 · 7/6시행 .....	77
2. 2013/8/29 개정 · 8/29 시행 .....	79
<b>IV. 전자금융거래법</b> .....	<b>87</b>
1. 2013/5/22 개정 · 11/23 시행 .....	87
<b>V.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b> .....	<b>91</b>
1. 2013/11/22 개정 · 11/23 시행 .....	91

<b>VI.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b> .....	<b>97</b>
1. 2013/8/6 개정 · 시행 .....	97
<b>VII. 금융지주회사법</b> .....	<b>99</b>
1. 2013/8/13 개정 · 2014/2/14 시행 .....	99
<b>VIII.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b> .....	<b>101</b>
1. 2013/8/13 개정 · 2013/9/14 시행 .....	101
<b>제2편: 금융위원회규정</b> .....	<b>105</b>
<b>I. 금융투자업규정</b> .....	<b>105</b>
1. 2013/2/5 개정 · 시행 .....	105
2. 2013/4/23 개정 · 10/24 시행 .....	111
3. 2013/7/9 개정 · 시행 .....	114
4. 2013/9/17 개정 · 시행 .....	119
5. 2013/10/22 개정 · 시행 .....	126
6. 2013/12/4 개정 · 시행 .....	129
<b>II.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b> .....	<b>131</b>
1. 2013/10/22 개정 · 시행 .....	131

<b>III.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b> .....	<b>135</b>
1. 2013/2/5 개정·시행 .....	135
2. 2013/6/25 개정·시행 .....	137
3. 2013/9/17 개정·시행 .....	139
4. 2013/12/4 개정·시행 .....	143
<b>IV.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b> ...	<b>147</b>
1. 2013/6/25 제정·시행 .....	147
<b>V.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b> .....	<b>155</b>
1. 2013/6/25 개정·시행 .....	155
<b>VI.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b> .....	<b>157</b>
1. 2013/9/17 개정·시행 .....	157
<b>VII.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b> .....	<b>159</b>
1. 2013/9/17 개정·시행 .....	159
<b>VIII. 전자금융감독규정</b> .....	<b>161</b>
1. 2013/12/3 개정·시행 .....	161
<b>IX.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b> .....	<b>169</b>
1. 2013/5/10 개정·7/1 시행 .....	169

**제3편: 한국거래소규정 ..... 175**

**I. 유가증권시장규정 ..... 175**

-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175
-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177
-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182
-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191
- 5.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203
- 6.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212
- 7.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 216
- 8.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지침 ..... 218
- 9. 증권상품시장 상장심사지침 ..... 219

**II. 코스닥시장규정 ..... 225**

- 1.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225
- 2.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30
- 3.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238
- 4.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249
- 5.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 257
- 6.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264
- 7.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지침 ..... 270
- 8. 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 271
- 9. 전문평가제도 운영기준 ..... 271

<b>III. 코넥스시장규정</b> .....	<b>273</b>
1.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	273
2.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76
3.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	279
4.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284
5.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	287
6.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290
7.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지침 .....	292
8.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	294
9.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운영세칙 .....	295
<b>IV. 파생상품시장규정</b> .....	<b>299</b>
1.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299
2.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304
3.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	314
4.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의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 .....	317
<b>V. 장외파생상품청산업무규정</b> .....	<b>319</b>
1.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	319
<b>VI. 시장감시규정</b> .....	<b>321</b>
1. 시장감시규정 .....	321
2.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	322
3.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	329

**제4편: 금융투자협회규정 ..... 333**

**I. 협회규정 ..... 333**

- 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333
-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352
- 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360
- 4.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지침 ..... 369
- 5.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370
- 6.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377
- 7.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 383
- 8. 신용평가기관 평가규정 ..... 384

**II. 모범규준 ..... 387**

- 1. 표준투자권유준칙 ..... 387
- 2. 컴플라이언스 매뉴얼(공통·증권·선물편) ..... 389
- 3.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자산운용편) ..... 392
- 4.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 395
- 5. 불공정거래방지 업무처리 모범규준 ..... 396
- 6. 녹색펀드 투자 모범규준 ..... 399
- 7.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모범규준 ..... 400
- 8.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 401
- 9. 금융투자회사의 임시사무소 운영을 위한 모범규준 ..... 403
- 10. 표준 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 405
- 11.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발행 및 운용에 관한 모범규준  
..... 410
- 12.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411
- 13.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413

14.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	415
15.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418
16.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	420
<b>III. 설명서 및 위험고지 .....</b>	<b>425</b>
1.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요령 .....	425
<b>IV. 표준약관 .....</b>	<b>427</b>
1.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	427
2. 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 .....	435
3. 신용거래약관 .....	436
4.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437
5.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약관 .....	440
6.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442
7.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447
8. 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	449
9.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	450
10. 증권대차거래약관 .....	453
11.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	454
<b>색인 .....</b>	<b>461</b>



## 제1편: 법령 등

---

- 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I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II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IV. 전자금융거래법
- V.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VI.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VII. 금융지주회사법
- VIII.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1편: 법령 등

## 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1. 2013/4/5 개정·7/6 시행(단, 일부 4/5 시행)

#### 가. 개정목적

-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제도 등을 도입하고, 상법개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특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 나. 개정경과<sup>1)</sup>

- 금융위원회는 2011년부터 우리 자본시장과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업계 및 전문가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자본시장, 기업 및 투자자의 4개 분야별로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
  - 2011년 2월에는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합동위원회 및 분과별 자문단 구성·운영

---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사위 통과”(2013.6.18)

4 제1편: 법령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정부안) 주요내용>**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금융산업: '선진형 투자은행(IB)'의 발전 촉진</li><li>2. 자본시장: 대체거래시스템(ATS) 및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등 도입</li><li>3. 기업: 개정 상법 반영,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제공, 주주총회 내실화</li><li>4. 투자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등</li></ol> |
|--|

- 법 개정안은 2011년 11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012년 5월, 국회입기 만료로 폐기된 이후 2012년 6월중 국회에 다시 제출됨
  - 2012년 11월 국제합의사항 이행, 상장기업의 역차별 해소 등을 위해 처리가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일부 내용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에 제출
    - 2013년 3월 4일 법사위에 제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

**다. 개정내용**

**1)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

-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개정 상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상장기업의 이익 소각이 비상장기업 보다 제한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자본시장법규정을 폐지함
  - 상장법인이 신주 배정 시, 인터넷 등에 주요사항보고서가 공시되므로 상법상 공고의무 적용 면제 등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165조의2~3)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방법

- 상법 341조 1항에 따른 방법
  -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 단,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상법 341조 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함
  - 위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 462조 1항에 따른 배당을 가능이익 한도 이내여야 함
  - 주권상장법인은 위의 방법 또는 상법 341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 요건 및 그 방법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165조의7)
- 기존 조항 제목을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 배정’을 위와 같이 개정하고 문구 수정
-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165조의9)
- 주권상장법인이 제3자발행 등의 방법으로 신주 배정 시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418조 4항에 따른 기존 주주에 대한 신주발행사항의 통지 또는 공고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 2) 자본시장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 정의 조항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추가(9조 17항 2호의2)

6 제1편: 법령 등

- 청산대상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산대상업자가 청산대상거래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이라 함
  - 청산대상업자: 금융투자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의 의무화(제166조의3 신설)

- 장외파생거래 등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G20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대해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청산하도록 함
  -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장외거래는 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를 '청산의무거래'라 함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청산의무거래 시 청산의무거래에 따른 자기와 거래상대방의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entral Counter Party: CCP)**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해 장외파생상품에 잠재된 결제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한 G20 정상회의의 합의 사항으로서 장외파생상품의 리스크 관리수단으로 도입된 중앙청산결제서비스기구를 말한다. 중앙청산소의 핵심 기능은 거래당사자 간의 결제이행보장과 다자간 결제금액차감이며 이를 통해 결제불이행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G20 국가들은 CCP를 이미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323조의2, 4/5부터 시행)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아야 영업행위 가능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323조의3, 4/5부터 시행)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청산업 인가업무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함
-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 청산업 인가업무단위별로 2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려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정관 및 청산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 임원이 자본시장법 24조2)에 적합할 것
  - 대주주<sup>3)</sup>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 위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2) 자본시장법 24조(임원의 자격) 참조

3) 자본시장법 12조 2항 6호 가목

8 제1편: 법령 등

□ 인가요건의 유지(323조의6, 4/5부터 시행)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청산업인가를 받아 인가요건을 유지해야함

□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323조의7, 4/5부터 시행)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인가받은 청산업 인가업무단위 외에 다른 청산업 인가업무단위를 추가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업무(323조의10, 4/5부터 시행)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하의 업무를 행함
  - 청산대상거래의 확인업무
  -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에 따른 채무부담업무
  - 청산대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차감업무
  - 결제목적물·결제금액의 확정 및 결제기관에 대한 결제지시업무
  -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업무
- 이외 위에 따른 업무에 수반되는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 청산업무규정 등(323조의 11, 4/5부터 시행)

- 금융상품거래청산회사는 청산업무규정을 정해야 하며 정관 및 청산업무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 청산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청산대상거래 및 그 거래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사항
  - 청산대상업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으로서 행하는 채무의 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부담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청산대상업자의 채무 이행 확보에 관한 사항
  - 청산증거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에 관한 사항
  - 비청산대상업자가 청산대상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 하여금 청산대상거래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의 중개·주선이나 대리에 관한 사항
  -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청산증거금(323조의13, 4/5부터 시행)

- 청산대상업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금전 등으로 청산증거금을 예치하여야 함
  - 단,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인정하는 청산대상거래는 제외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청산대상업자가 그 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산증거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 손해배상공동기금(323조의14, 4/5부터 시행)

- 청산대상업자는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금전 등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해야 함
  - 단,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청산대상업자의 경우는 제외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청산대상거래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적립해야 함
- 청산대상업자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의 범위에서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해 연대책임을 짐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보전한 경우에는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에 대해 그 보전 금액과 이에 소요된 비용에 관해 구상권을 가짐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구상권에 따라 추심된 금액을 손해배상공동기금에 충당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총적립규모, 적립방법, 사용·관리·환급 및 제4항에 따른 구상권행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장외거래정보의 축적을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323조의16, 4/5부터 시행)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청산의무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정보를 보관·관리하고 이를 금융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보고해야 함
  - 거래정보의 보관·관리 및 보고의 요령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323조의20, 4/5부터 시행)

-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3조의3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별표8의2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기대효과<sup>5)</sup>

1) 중앙청산소 도입 관련

- 장외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위험관리체계 구축

---

4)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

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사위 통과”(2013.6.18)

12 제1편: 법령 등

-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은 2011년말 잔액규모가 6,904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적절한 리스크 관리체계는 부재
  - 이자율스왑(IRS) 4,332조원, 통화선물·스왑 2,146조원, 주식관련 파생상품 98조 등(장내파생상품시장 잔액(70조)의 98배)
- 금번 법 개정으로 장외파생거래에 중앙청산제도가 도입될 경우, 계약당사자의 거래상대방 위험이 해소되고, 다수 거래자간 차감등으로 결제규모 및 리스크가 대폭 축소되어 장외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장내파생시장의 경우 CCP를 통해 차감할 경우 결제규모가 약 70~80% 축소
- 또한, 장외거래의 거래내역 및 리스크 규모 등이 실시간 정확하게 파악됨에 따라 체계적인 시장위험 관리에도 도움
  - CCP는 장외거래 정보내역을 집중 관리하며 감독당국에 실시간 보고체계 구축
- 특히, 장외파생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자율 스왑거래(IRS)에 CCP 청산이 의무화될 경우 장외파생시장의 결제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

□ 국내 CCP 도입을 통해 청산수요의 해외 이탈 방지

- 대부분의 G20 국가들은 CCP를 이미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홍콩·싱가폴 등 아시아 국가들도 도입을 서두르는 상황이며 일부 해외 CCP는 국내 파생거래에 대한 청산업무도 개시
  - 미국(CME), 영국(LCH), 독일(Eurex), 일본(JSCC) 등은 IRS·CDS 청산업무 수행 중
  - 싱가포르(SGX)은 2010년 IRS·NDF 청산업무 개시, 홍콩(HKEx)은 금년중 NDF 청산업무 개시 예정

- 싱가포르거래소(SGX) 및 영국청산소(LCH)는 원화 NDF 청산업무 수행 중

— 국내 CCP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해외 청산소로의 청산수요 이탈을 막고 2012년 말을 기점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청산소간 경쟁에도 조기 대응이 가능

- G20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장외파생상품 규제체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정비

## 2. 2013/5/28 개정·시행(단, 일부 8/29 시행)

### 가. 개정목적

-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 나. 개정경과<sup>6)</sup>

- 2013년 4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위원장 박민식 의원)를 통과

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2013.4.9)

14 제1편: 법령 등

-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등 개정안에는 성장기업 등에 대한 직접금융 강화,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자금조달수단 다양화 등을 위한 투자은행(IB) 활성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및 조건부자본증권 도입 등 당초 정부안(원안)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음

- 단, 투자은행(IB)에 대한 건전성 규제 관련 내용이 일부 보완되고 독립 워런트 제도도입이 유보되는 등 당초 정부안의 내용 중 일부가 수정되었음

-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정부안은 익일(4.1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개정안의 주요내용>

- (투자은행 육성) 신성장동력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
  - 자본력(3조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증권사를 투자은행으로 지정하고, 기업대출 등 신규업무 허용
- (시장 인프라 선진화) 매매체결 독점(거래소)체제의 비효율성 개선, 거래비용 절감 등을 위한 대체거래시스템 도입
- (기업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선진국에서 이미 허용된 조건부자본증권\* 제도 등을 도입
  - \* 발행 당시에 미리 설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식전환, 사채상환의무 감면 조건 등이 부여된 사채
  - 아울러, 실권주의 임의처리 제한, 저가 주주배정시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의무화 등 자금조달 수단의 남용방지 장치 등도 마련
- (주총 활성화) 그간 주총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중립적의결권행사 제도(Shadow Voting) 폐지(2015년 시행)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법안소위 주요 수정내용>

구분	정부안	법안소위 논의 및 수정안
투자은행 (종합금융 투자 사업자) 활성화	<p><input type="checkbox"/> (프라임브로커)전담중개업무를 법률에서 투자은행 업무로 정의하는 등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범위를 확대</p> <p>* [중진] 증권 관련 신용공여만 허용 → [개정] 증권 관련 이외의 신용공여도 허용</p>	<p><input type="checkbox"/>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확대 등으로 인한 투자은행의 위험증가, 시스템리스크 발생 우려 등이 제기</p> <p>- 신용공여 범위 확대 부문은 추후 검토(삭제)</p>
	<p><input type="checkbox"/> (기업대출) 투자은행에 대하여 기업신용공여 업무를 신규로 허용</p>	<p><input type="checkbox"/> 투자은행의 과도한 신용공여로 인한 부실화,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 가능성 등이 제기</p> <p>- 제도도입 초기임을 감안, 신용공여 총한도액*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5%) 등 위험제어 장치를 보완</p> <p>* [당초] 기업대출, 일반 신용공여(개인 신용융자 등)의 한도는 각각 투자은행 자기자본의 100% 이내 → [수정] 총 자기자본의 100% 이내</p> <p>- 계열회사 지원방지를 위한 대출금지 등을 법상 명문화</p>
	<p><input type="checkbox"/> (내부주문집행업무) 투자은행에 대해 비상장주식의 매매 체결 업무를 허용</p>	<p><input type="checkbox"/> 도입 추진중인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KONEX)과 기능 및 역할 구분 등에 대한 검토 필요</p> <p>- 향후 KONEX 시장 개설 등과 연계하여 자본시장 거시구조 정비 차원에서 중장기 검토(삭제)</p>

<자본시장법 개정안 법안소위 주요 수정내용>(계속)

구분	정부안	법안소위 논의 및 수정안
다자간 매매체결 회사(ATS) 도입	<input type="checkbox"/> (거래소 전환) 거래량이 일정 기준을 넘는 ATS(경쟁매매 방식에 한함)에 대해 거래소 전환의무를 부과	<input type="checkbox"/> 경쟁매매 방식 외에 ATS도 거래량이 일정 기준 초과시 투자자 보호, 매매체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무 부과 * 예; 매매체결 시스템 안정성 확보, 매매체결 관리조직 확충 등
	<input type="checkbox"/> (주식 초과보유) 일정한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아 ATS 주식을 15% 초과하여 보유 가능 *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경우, 외국 ATS와 제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 특히, 거래소가 자회사로 ATS의 주식 100% 보유 허용	<input type="checkbox"/> ATS 초과보유를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금융위의 승인을 받는 경우로 포괄하여 규정 * 2013.4.5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정무위안)의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초과보유 관련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취지  <input type="checkbox"/> 아울러, 거래소의 자회사 ATS 보유 관련 조항 삭제 * 유효경쟁 여건조성 등 ATS 도입추이를 보아가며 추후 검토
주권상장 법인 특례규정 개정	<input type="checkbox"/> (실권주) 발행을 원칙적으로 철회하되, 일정한 경우*에 예외 인정 * 적정 가격으로 발행된 경우, 주주간 초과청약 배정하는 경우, 증권사가 잔액인수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실권주 처리의 악용 소지를 보다 제한하기 위하여 적정 가격요건이 전제(공통 적용)되도록 예외사유를 보다 엄격화
	<input type="checkbox"/> (신주인수권증서) 주주배정시 신주가 저가로 발행되는 경우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유통을 의무화  <input type="checkbox"/> (독립 워런트) 미리 정한 가액으로 기업에 신주발행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증권(신주인수선택권증권) 도입	<input type="checkbox"/> 주주배정시 대부분 시가 보다 낮게 발행된다는 점 등을 감안, 발행가격에 관계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  <input type="checkbox"/> 독립 워런트는 발행기업의 대주주 등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수단 등으로 남용할 우려(삭제) * 추후 대주주의 악용방지 등을 위한 보완방안 등을 논의 후 도입 여부 검토

## 다. 개정내용

### 1)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

- 미래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형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 증권회사에 비하여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기업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8조 8항)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함(77조의2~3)
  - 금융위원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 증권에 관한 인수업을 영위할 것
    -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그 밖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공여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자기자본의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 2)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

-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맞춤형 투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구분을 그 특성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6조 3항, 6항, 7항, 9항)
  -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
  -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 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
  - ‘전담중개업무’란 법 249조의2 1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인 신용공여와 담보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계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의미

-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 금전의 용자, 그 밖의 신용공여
-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
- 그 밖에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87조)

—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함)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함

□ 다른 회사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투자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자에 대한 등록제 및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272조의 2, 270조 9항 등 참조)

### 3)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및 신설

□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상장주권 등의 매매체결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8조의2)

-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의미
-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의미
- ‘거래소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의미
  - 거래소시장은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구분
  - 증권시장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의미
  - 파생상품시장은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의미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의미
  - 경쟁매매의 방법(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 매매체결대상상품이 상장증권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거래소의 허가제 도입(373조의2)

-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개설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거래소허가를 받아야 함
  - 매매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
  - 회원(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자를 말함)이 되는 자의 범위
- 위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9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 거래소허가 단위별로 1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정관, 회원관리규정·증권시장업무규정·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시장감시규정·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 및 제373조의7에서 “정관등”이라 한다)이 법령에 적합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며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충분할 것
  -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다자간매매채결회사에 관한 특례 신설(78조)

— 다자간매매채결회사는 다자간매매채결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 준수의무 부담

- 매매채결대상상품 및 다자간매매채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에 관한 사항
- 매매채결대상상품의 매매정지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매매확인 등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과 채무인수·차감 및 결제방법·결제책임 등 청산·결제에 관한 사항
- 증거금 등 거래참가자의 매매수탁에 관한 사항
- 매매채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의 신고·공시에 관한 사항
- 매매결과의 공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다자간매매채결업무의 개폐·정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다자간매매채결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72조(신용공여), 73조(매매명세의 통지) 및 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2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은 다자간매매채결회사에는 적용배제

—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는 다자간매매채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감시할 수 있음

- 매매채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거래참가자가 다자간매매채결회사에 제출하는 호가의 상황

- 매매체결대상상품에 관련된 풍문·제보나 보도
  -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에 관한 신고 또는 공시
  - 그 밖에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가격 형성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또는 요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지정거래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참가자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거래참가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음
- 377조 1항 8호에서 정하는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종목 또는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 거래참가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
  -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소유하는 경우
- 383조(정보이용금지 등) 1항~2항, 408조(영업 양도등의 승인) 및 413조(긴급사태시의 처분)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준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경쟁매매의 방법에 따라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매매체결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373조)

- 누구든지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안 됨.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가능
  -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하는 경우
  - 협회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거래소 외의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공정한 가격 형성,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법으로 이관하면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 및 신용평가서 등의 투자자에 대한 공시의무를 확대(9조 26항)

- ‘신용평가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을 부여하고 그 신용등급을 발행인, 인수인, 투자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
  - 금융투자상품
  - 기업·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4)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기존 제도의 미비점 보완 신설

##### □ 임원의 자격(24조 2항~3항)

-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금융투자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함
  - 임원의 자격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 은행업 및 보험업 등 다른 금융산업에서의 임원 자격제한요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당연무효사유 외에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 사유를 추가(250조 7항 1호)

- 은행이 이 법에 따라 집합투자업,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포함)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을 두어야 함
- 임직원에게 다음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안 됨

-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 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함

□ 은행 및 보험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 대상에서 제외(251조 3항 1호)

- 보험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포함)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의 임원을 제외하며, 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을 두어야 함
- 임직원에게 다음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안 됨
  -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 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함

##### 5) 불공정거래·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 제고

□ 증권모집의 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동일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증권의 인수 관련 제도를 정비(119조 2항, 5항~7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일괄하여 기재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그 증권을 모집하

거나 매출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음

- 이 경우 그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괄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함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인 및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정정신고서(122조 3항, 6항)

-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의 요구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발행인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

□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125조)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짐
  - 단,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증권발행과 모집·매출에 관련한 위원회의 조치(132조)

-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매출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음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 거래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경우

- 투자설명서에 관하여 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 또는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을 위반한 경우
  -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에 의한 증권의 모집·매출,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을 위반한 경우
  -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또한 필요한 때에는 그 증권의 발행·모집·매출,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에 위임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174조 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법인(7)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됨
-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7) 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을 포함

-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 2호부터 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2호부터 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 1호부터 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호부터 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 ‘미공개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의미

□ 시세조종 행위 등의 금지(176조 4항)

-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 증권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 행위 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합병등을 통해 우회상장하려는 기업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되,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정식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토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124조 등)
-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에게 적합

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 됨

-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
  -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가 동의할 것
  -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투자자가 투자설명서의 사용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위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6)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

### □ 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152조의2)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위임장 용지 등을 교부하는 경우 5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하던 것을 2일로 단축

-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는 발행인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인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에 대하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를 포함)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행위
  -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를 위하여 그 의결권권유자의 비용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주주에게 송부하는 행위
- 발행인은 위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2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제외)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165조의10)

- 주권상장법인이 사채(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에 한함)와 「상법」에 따른 사채(주권 관련 사채권)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제2항 및 제4항(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를 준용
- 주권상장법인이 「상법」에 따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채는 발행할 수 없음

□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153조)

- 의결권권유자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 2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제외)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

-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이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165조의6)

- 주주배정 방식에서 실권주(失權株)가 유리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배정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세 번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의 방식에 따름
  -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첫 번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위 세 번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가 결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함
  -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165조의7(우리스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우리스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
-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가액 등이 확정된 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시점을 개선

□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165조의11)

-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
-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상법」에 따른 사채<sup>8)</sup>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
- 위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발행사항 및 유통 등의 방법, 조건의 세부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8)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

□ 예탁증권등의 권리행사 등(314조 4항~6항, 단, 2015/1/1 시행)

- 신종사채의 발행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에 관한 예탁결제원의 권리행사 및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그 주권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포함)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 상장기업 주주총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예탁결제원의 중립적의결권행사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에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159조 2항 3호)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그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함),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174조), 시세조종 행위 등의 금지(제176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78조)를 위반한 자에게 부정거래 행위 등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443조, 447조, 단 2013/11/29 시행)

### 3. 2013/8/13 개정·11/14 시행

#### 가. 개정목적

-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규정<sup>9)</sup>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기능이 여전히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규정
  
-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에 특화된 코넥스시장(KONEX)의 시장참여자가 전문투자자 등으로 제한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특례와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를 규정
  - 기술력 및 성장성 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는 기업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여 투자하고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2010년 3월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민간자금을 활용해 기업재무구조의 개선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회생절차나 파산을 신청한 기업,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기업 등 주로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의 자산에 투자한다. 2012년 말까지 12개 기업재무안정PEF가 설립되어 총 2조 9000억원을 투자했다.

9) 2013년 6월 12일자로 유효기간 만료

## 나. 개정경과<sup>10)</sup>

- 2013년 7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성완중 의원(2013.5.29, 기업재무안정PEF 관련)과 박민식 의원(2013.5.30, 코넥스시장 관련)이 각각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무위 법안소위(6.21) 및 전체회의(6.26)에서 이들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정무위 대안으로 의결
  -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의결(7.1)을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7.2)
  
-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중소기업전용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KONEX)을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반기·분기보고서 제출 의무와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 관련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최근 불확실한 국내외 경기여건에 따른 기업재무여건 개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13년 6월 12일 운용시한이 만료된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성장잠재력은 갖추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재무안정에 기여 또한 기업재무안정PEF는 PF정상화뱅크(유암코)로 활용되어 부동산 PF 시장의 정상화를 지원
  - 2012년말 기준, 총 12개 기업재무안정PEF가 설립되어 총 2.9조원 투자

---

1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3.7.2)

- 재무구조취약기업의 주식·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약 1.6조원
- 부실 부동산 PF채권 인수 등 약 1.3조원

□ 최근 불확실한 국내외 경기여건 및 부동산 시장 부진 지속 등에 따른 부동산 PF 추가 부실 발생 등에 대비하여, 2013년 6월 12일 운용시한이 기 만료된 기업재무안정PEF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

#### 다. 개정내용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추가(165조 2항)

— 기존 165조의 제목인 “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를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로 변경하고 2항을 신설

- 160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음

□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신설(165조의19)

—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대하여는 「상법」 542조의8(1항 단서, 4항 및 5항은 제외) 및 542조의10을 적용하지 않음

□ 기존 기업채무안정투자회사 관련 조항을 유효기간 경과로 삭제(234조의2, 278조의2)

□ 기업채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신설(278조의3)

— ‘기업채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개선기업<sup>11)</sup>의 경영정상화 및 채무안정 등을 위해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의미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조 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4조 또는 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94조 또는 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
- 채권금융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 법인(계열회사를 포함)의 합병·전환·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 그 밖에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기업채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는 27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음

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

-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 재무구조개선기업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매
  -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영업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매매
  - 자산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271조 1항 2호에도 불구하고 2항 1호부터 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음
-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는 83조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차입하거나 재무구조개선기업 또는 재무구조개선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있음
- 이 경우 차입금액 및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못하며, 271조 3항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차입한 금액 및 채무보증한 금액과 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차입한 금액을 합하여 이를 산정
- 「국가재정법」 13조 1항 2호부터 5호까지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 여유자금운용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음

- 이 경우 기금이 출자한 금액은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
-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취득한 지분증권을 처분하여서는 안됨
  - 단, 그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음
-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 및 투자목적회사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 및 투자목적회사의 운용 및 운용제한, 자금차입 한도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유효기간 등(부칙 2조)

-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며 본 특례규정의 효력이 상실될 당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와 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존속기한까지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
  - 위의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278조의3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는 추가로 출자를 받을 수는 없음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부칙 3조)

- 이 법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7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변경등록 할 수 있음
  - 이 경우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된 날부터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로 간주

□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4조)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와 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같은 조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각각 27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와 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간주
  - 위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법률 제100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3조 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78조의3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까지는 추가로 출자를 받을 수 있음



## I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 2013/4/5 개정·4/5 시행

#### 가. 개정목적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기업금융시장의 균형적인 발전과 단기자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전자단기사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자단기사채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와 관련된 규제의 적용대상증권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을 제외하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에 전자단기사채 등을 추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은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중 하나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인지를 판단하는 자산총액, 매출액 등을 기존에는 개별 재무제표 상의 금액 기준으로 하던 것을 연결재무제표 상의 금액 기준으로 변경

#### 나. 개정경과<sup>12)</sup>

- 동 개정안은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된 전자단기사채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만기가 일정기간 이내인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증권신고서

---

1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13.4.2)

제출 면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준 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판단 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전자단기사채제도 활성화 주요내용>**

- 만기 3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 전자단기사채가 CP를 원활하게 대체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내(3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면제
    - 발행인에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할 경우 신속한 자금 조달 뿐 아니라, 초단기물 발행도 기대하기 어려움
    - 채무증권의 모집·매출의 경우 통상 수리일부터 7일 소요(자본시장법시행규칙 §12① i)
    - 일정기간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더라도 전자단기사채가 발행시부터 일정 기준에 따라 등록·공시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음
    - 최소 분할한도 1억원 이상으로 개인투자자 진입 제약, 이사회 의 발행한도 설정, 등록기관을 통한 발행정보·미상환 발행잔액 등 실시간 공개
  
- 전자단기사채의 신용평가 기준 명확화
  - 전자단기사채는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인 사채권이지만 경제적 실질에 있어 CP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 발행의 편리성과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신용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기업어음과 동일하게 규정
    -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는 발행증권이 아닌 발행회사에 대한 평가(issuer rating)체계임
    - 현재 공모 무보증사채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라 복수의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를 받는 경우에만 인수가 가능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전자단기사채 투자제한 완화
  - 현재, 만기 1년 이내 CP의 경우 공·사모 제한 없이 MMF에 편입될 수 있으나, 사채권의 경우 공모에 한해 편입 가능
  - 법적으로 사채권인 사모발행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경제적 실질이 기업어음과 동일함에도 MMF에 편입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 이에 CP와의 형평성 및 전자단기사채의 수요 확대 등을 위해 공·사모 구분 없이 전자단기사채의 MMF 편입을 허용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준 정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단계적 도입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준을 정비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준 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판단적용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현행 개별재무제표 기준이 아닌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적용
    - (기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100이상의 자산을 양수도할 경우 주요사항보고의무 발생 → (개선)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100이상을 양수도할 경우 주요사항보고의무 발생(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인 경우)

**다. 개정내용**

- 증권신고와 관련된 규제적용대상제외 증권 추가(119조 2항 6호)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증권 추가 신설
  
-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171조 1항 1호~3호, 5호)
  - 기존 ‘자산총액’을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으로 변경
  - 기존 ‘매출액’을 ‘매출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을 말한다)’으로 변경
  - 기존 ‘부채총액’을 ‘부채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부채총액을 말한다)’으로 변경

48 제1편: 법령 등

— 이 규정은 시행 후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부터 적용

□ 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183조 3항)

— 전자단기사채 등의 장외거래 준용 항목 신설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241조 1항 7호)

— 단기금융상품에 전자단기사채등을 추가

## 2. 2013/6/21 개정·시행

### 가. 개정목적

□ 자기자본 및 매출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 주권을 상장한 창업초기 중소기업 상장법인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규제 및 합병규제 등을 완화해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 여건 등을 조성하기 위함

### 나. 개정경과<sup>13)</sup>

□ 입법예고(2013.3.26~4.25, 4.5~5.15), 법제처 심사완료(2013.6.13)

1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13.6.18)

—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완화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경우에는 전문투자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코넥스시장 참여 투자자를 모집·매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 권유 대상자(50인)에서 제외
    - 기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합병규제 완화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가액 산정기준 적용 배제,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 평가의무 적용 배제 등 합병 관련 규제를 완화
    - 현재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합병시 상장법인은 주가를, 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감안한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토록 의무화

다. 개정내용

- 창업초기 중소기업 상장법인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규제 완화 (11조 2항)
  - 자본시장법상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이나 매도·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경우 전문투자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창업초기 중소기업 상장법인에 대한 주요 투자자를 모집·매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의 권유 대상자에서 제외
  - 창업초기 중소기업 상장법인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규제를 완화하여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

- 창업초기 중소기업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규제 완화(176조의5)
  - 창업초기 중소기업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병 관련 규제를 완화
    - 창업초기 중소기업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원활한 합병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 여건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

### 3. 2013/7/5 개정·7/6시행

#### 가. 개정목적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청산의무거래의 범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요건과 방법·절차,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나. 개정경과<sup>14)</sup>

- 2013년 3월 5일 국회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장외파생상품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개정 상법 내용 반영

1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2013.3.25)

- 향후 개설될 중소기업 전용 시장(코넥스시장)의 안착을 위해 발행공시, 합병 관련 규제 등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장외거래 CCP 규제 요약>**

- 법률에 신설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이하 '청산업')의 청산대상업자와 청산대상거래를 규정
  - (청산대상업자) 법률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 외에 정부, 한은, 금융회사,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을 추가
  - (청산대상거래)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권 장외거래(RP거래, 대차거래, 그 밖의 채무증권 거래), 주식기관결제거래로 세분화
    - 증권시장에서의 투자중개업자와 전문투자자간의 주식 위탁매매의 결과로 발생하는 증권인도와 대금지급 거래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의무적 청산거래의 유형, 거래상대방 및 청산회사(CCP)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
  - 국내외 금융투자업자간에 이루어지는 원화 이자율스왑(IRS) 거래에 한정하여 우선 의무 청산거래로 규정
    - 의무 청산거래 추가 여부는 향후 글로벌 논의 등을 보아가며 검토
  - 아울러, 국내 청산회사 외에 일정한 기준(상호 감독요건 등)을 충족하는 해외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도 허용
    - 다만, 글로벌 논의 등을 감안하여 국내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외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을 제한
- 금융투자업을 준용하여 청산업 인가단위, 자기자본 등 구체적인 인가요건·절차 등을 정함
  - 인가단위는 청산대상거래와 동일하게 5가지로 구분하고, 단위별로 200억원 이상에서 최소자기자본 요건을 설정
    - 인가단위(자기자본): ① 장외파생상품거래(1,000억원), ② 증권RP거래(200억원), ③ 증권대차거래(200억원), ④ 그 밖의 채권거래(200억원), ⑤ 주식기관결제거래(200억원)
- 그 밖에 금융투자관계기관(거래소 등)의 경우를 준용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검사·조치, 보고의무 등의 세부사항 규정

## 다. 개정내용

###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14조의2)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청산대상업자의 범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투자업자 외에 국가, 한국은행, 은행, 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 및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을 추가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청산대상거래
  -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 증권의 장외거래로서 환매조건부매매, 증권의 대차거래, 채무증권의 거래
  - 수탁자인 투자중개업자와 청산대상업자 간의 상장증권(채무증권 제외)의 위탁매매거래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청산대상업자의 청산대상거래에 대한 결재불이행 위험을 축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 □ 장외시장 청산의무거래의 범위 및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신설(186조의3)

-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 등과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을 할 때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 하여금 청산
  - 청산의무 대상이 되는 거래를 원화로 표시된 원본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고정이자와 변동이자를 장래의 특정 시점마다 원화로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기초자산, 거래의

만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장외파생상품거래(원화이자율 스왑거래)로 정함

- 단,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는 제외
- 금융투자업자의 청산의무거래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서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 청산업에 관한 감독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중에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자도 할 수 있도록 함
- 청산의무 대상이 되는 거래의 구체적인 범위와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승인요건 등을 정함으로써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줄이고, 국내 자본시장의 효과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의 요건과 방법·절차 신설(318조의3 및 318조의4)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업무 단위별로 일정한 자기자본금을 갖추어야 함
  -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업무단위로 하는 경우 1천억원 이상
  - 증권의 장외거래로서 환매조건부매매 등을 업무단위로 하는 경우 2백억원 이상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사업계획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안정적인 영위가 가능할 것

-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 인가신청서에 들어갈 사항
- 상호
  -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 임원에 관한 사항
  - 경영하려는 인가업무단위(318조의2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업무단위)에 관한 사항
  -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대주주에 관한 사항
-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인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정관
- 청산업무규정안
-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 인가업무단위의 종류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 인력, 조직,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적은 서류
- 대주주가 법 323조의3 2항 7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예비인가(318조의5)

— 예비인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정관이나 정관안
- 청산업무규정안
-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임원(임원으로 선임이 예정된 자를 포함)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 인가업무단위의 종류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의미)
-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 인력,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물적 설비 등을 포함)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비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적은 서류
- 대주주가 법 323조의3 2항 7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거나 갖추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예비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특별한 이해관계(318조의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

- 채무보증
- 담보제공
- 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내용과 관련되거나 사업 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해관계

□ 금융투자업관계기관(318조의7)

—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예탁결제원 및 증권금융회사를 의미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318조의8)

— 청산대상업자는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총적립규모, 청산대상업자별 적립률 및 적립방법 등은 청산대상거래별 결제위험 등을 고려하여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함
-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손해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가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우선하여 사용

□ 보관·관리대상 거래정보 등(318조의9)

-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정보”란 청산대상거래(법 166조의3에 따른 청산의무거래는 제외)에 관한 정보를 의미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법에 따른 거래정보를 10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함
- 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매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법에 따른 청산대상거래 및 그 거래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사항
  - 청산대상업자의 채무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 청산증거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관리·운용 현황
  - 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감독기준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손해를 보전하거나 그 밖에 청산대상업자의 결제위험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보고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 주식소유의 제한(318조의10)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음

-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
-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와의 제휴를 위하여 소유하는 경우
- 거래소가 소유하는 경우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공정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 소유하는 경우
- 위의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외국인<sup>15)</sup> 또는 비금융회사<sup>16)</sup>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318조의11)

- 법 323조의20 1항 8호에서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 법 323조의20 2항 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1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16)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함

- 법 323조의20 2항 7호에서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 변상 요구
  -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시행령,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 법 323조의20 3항 6호에서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시행령,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 4. 2013/8/27 개정·8/29 시행

##### 가. 개정목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나. 개정경과<sup>17)</sup>

- 투자은행(IB) 활성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자산운용업 규제체계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이 지난 5월 28일 공포됨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
  - 따라서, 개정법률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운용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

1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2013.6.13)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p>투자은행의 세부 지정요건 마련</p>	<p>□ 투자은행 지정을 위한 자기자본(3조원), 위험관리·내부통제기준 등의 지정요건과 그 신청절차 등을 구체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전 규정에 따라 헤지펀드에 대해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고 있던 '전담중개업자*'의 지정요건에 준하여 규정</li> <li>* 2011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하고, 투자은행의 업무중 하나인 전담중개업무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우선 허용</li> </ul>
<p>투자은행의 업무역량 강화</p>	<p>□ 전담중개업무* 제공대상 확대 및 계약체결의무(안 §6의3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재산보관·관리, 신용공여, 증권대차, 각종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투자은행의 업무</li> <li>- (업무 제공대상) 법률에 명시된 헤지펀드 외에 금융회사,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 등의 전문투자자로 확대</li> <li>- (PBA 체결) 전담중개업무에 따른 책임·역할 등을 명확히하기 위해 투자은행과 업무 관련자간 계약체결 의무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은행-헤지펀드 등-업무 관련자(수탁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간 정보제공 등을 위한 계약(Prime Brokerage Agreement) 체결의무·내용 등 명시</li> <li>· 미국(SEC), 영국(CASS) 등 해외의 프라임브로커 규제논의 등을 감안</li> </ul> </li> </ul> <p>□ 투자은행의 기업 신용공여 업무기준 마련(안 §77의5①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공여 범위) 투자은행의 업무 특성, 타 업권 규제 등을 감안하여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매입 등으로 설정</li> <li>- (한도설정) 투자은행 업무특성 등을 감안, 신용공여 한도(자기 자본의 100%) 산정시 제외되는 신용공여의 범위를 구체화</li> <li>- 헤지펀드로부터 채담보를 통해 조달한 자금, M&amp;A 주선·중개와 연계된 단기대출, 보증부대출 등을 규정</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b>※ 신용공여 총한도 산정에서 제외되는 신용공여(상세)</b></p> <p>(i) 채담보를 통해 조달한 자금: 투자은행이 헤지펀드에게 받은 담보를 활용하여 제3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이므로 대출중개와 유사한 역할</p> <p>(ii) 단기 M&amp;A 대출: M&amp;A는 투자은행의 핵심기능이며, 그 중개·주선과 연계한 브릿지론(예; 6개월)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감</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계열사와 거래 금지) 투자은행을 통한 계열회사 부당지원 방지 등을 위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해외법인에 대해 전담중개업무, 대출 등의 영위를 금지</li> </ul>

자료: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다. 개정내용

1)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 확대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등

□ 전담중개업무의 범위(6조의3)

- 법 6조 9항 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을 의미
  -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으로서 전담중개업무의 대상이 되는 투자자재산)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의 집행업무
  -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따른 취득·처분 등의 업무
  -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업무
  -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업무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금융 및 채무 등에 대한 자문업무
-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금전의 용자, 담보관리 등을 제공하는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를 현행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외에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기금을 운용하는 법인,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및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으로 확대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77조의3)

-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려면 3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해야 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을 위한 적절한 인력,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장치를 갖출 것
  - 법 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 법 45조 1항 각 호 및 2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 이 경우 지정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결정한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지정 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
- 위의 사항 외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지정신청과 검토, 지정신청서의 서식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함

□ 신용공여의 범위(77조의5)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담중개업무 외에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출
  - 지급보증(이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을 포함)
  - 기업어음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음의 할인·매입
- 법 77조의3 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 기구 등으로부터 받은 담보를 활용하여 제3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조언업무나 그 인수·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와 관련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 정부, 362조 8항 각 호의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 보증한 신용공여(원리금의 상환이 보증된 부분에 한정)를 하는 경우
- 이외에 신용공여의 기준 및 신용공여의 현황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가 확대되고,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매매가격 결정방법

<ATS 관련 주요내용>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ATS) 도입	<p>□ (인가요건) ATS의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최저 자기자본 요건은 200억원(자기매매 포함시 500억원) 수준으로 설정*</p> <p>* [참고] 종전의 ECN(전자증권중개회사)의 경우 최소 자기자본은 150억원</p> <p>- 아울러, 주식의 15% 초과보유가 가능한 경우를 외국 ATS와의 제휴, 주주가 금융회사인 경우 등으로 구체화(안 §78 ④)</p> <p>□ (매매체결대상상품 및 방법) ATS에서 거래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을 법률상 주식 외에 주식예탁증권을 추가</p> <p>- 채무증권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을 매매체결대상상품에 포함할지 여부 등은 추후 ATS의 정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검토</p> <p>- 아울러, 경쟁매매 방식의 ATS의 거래량(과거 6개월)은 증권시장 전체의 5%(개별 종목은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p> <p>• ATS의 거래량이 상기 기준을 초과할 경우 '무허가시장 개설 행위'에 해당 → ATS는 거래량 초과가 예상될 경우 거래소로 전환할 필요</p> <p>□ (업무기준) ATS가 다양하고 차별화된 시장의 매매체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운용의 자율성·탄력성* 부여</p> <p>* 매매수량단위, 최소 호가단위, 거래시간, 익명대량매매체결 등</p> <p>- 다만, 시장감시, 시장안정화 조치(매매거래정지, 가격제한폭 등) 등은 거래소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ATS의 업무기준(상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소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매매를 정지한 종목 등의 거래 금지</li> <li>• 거래 참가자(거래소의 경우 회원)는 투자매매·중개업자로 함</li> <li>• ATS는 시장감시, 청산 등의 기능이 없으므로 청산, 가격제한폭, 수탁거부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정거래소의 업무규정에 따르도록 함</li> </ul> </div>
---------------------------	---

**<ATS 관련 주요내용>(계속)**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ATS)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규정 마련·보고) ATS는 업무기준에 따른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위에 보고 및 공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는 ATS의 업무규정이 투자자 보호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li> </ul> </li> <li>□ (비경쟁매매 ATS의 추가 조치의무) 비경쟁매매 방식의 ATS에 대하여 거래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추가조치를 취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TS의 과거 6개월 거래량이 전체 증권시장의 5%, 개별종목의 10% 초과</li> <li>- 미국, EU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ATS의 인력·전산설비 등을 확충하고,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강화하도록 함</li> </ul> </li> </ul>
---------------------------	--

□ 금융투자상품시장(7조의2)

-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경쟁매매 등의 방법으로 상장주권 등의 매매 또는 그 증개·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외에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시킴
  -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 그 밖에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거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증권
-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경쟁매매나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종목별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을 추가함

-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법 4조 2항에 따른 증권의 구분별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쟁매매의 방법을 통한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sup>18)</sup>이 같은 기간 중 증권 시장에서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의 5% 이하일 것
  -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쟁매매의 방법을 통한 종목별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그 종목별 매매체결 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의 10% 이하일 것
  -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종목별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 추가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도입 및 이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매매가격 결정방법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자본시장의 경쟁과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18) 매매가 체결된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총수량을 매매가 이루어진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함

3)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최선집행의무

<최선집행의무(Best Execution) 주요내용>

- 개정 법률은 복수시장 도입에 따라 기존의 시장매매의무를 대체하여 투자자의 주문이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집행의무 부과
- (적용대상상품) ATS 도입으로 복수 시장에서 거래가능한 주권, 주권예탁증권을 우선 최선집행의무 대상으로 함
  - 추후 ATS의 매매체결대상상품 확대,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상품 확대 검토
- (최선집행기준) 증권회사가 최선집행의무를 위한 '최선집행기준' 마련시 고려해야 할 요소 등을 구체화
- (고려요소)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금융투자상품 가격, 투자자의 비용, 주문 규모, 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명시
  - 다만,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투자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함(Opt-out 방식)
  - (점검의무) 최선집행기준을 매분기마다 점검하고, 이를 최선집행의무의 실행에 부합하도록 변경할 의무 부과
- (투자자 보호) 최선집행기준 마련·변경시 투자자에게 공표하는 방법을 구체화하고, 투자자가 요청시 최선집행의무를 입증하는 서면 등을 제공

최선집행업무(66조의2)

-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이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최선집행기준에 포함되는 내용과 공표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법 68조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를 의미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증권의 매매

-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복수의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가능성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 ①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② 장내파생상품
- 최선집행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등이 포함되어야 함
  -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 투자자가 매매체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 그 밖에 청약 또는 주문의 규모 및 매매체결 가능성 등
  - 단, 투자자가 청약 또는 주문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달리 처리할 수 있음
- 최선집행기준을 영업소 등에 게시하거나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는 방법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복수의 거래소 제도 도입에 대응하여 투자자의 보호와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4) 지정거래소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감시 등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78조 5항)

- 지정거래소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호가의 상황 외에 매매가격·거래량 및 매매체결의 시간 등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정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감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5) 신용평가회사 관련 규정 신설

### <신용평가업 규제의 주요내용>

- (신용평가대상의 범위) 법률상 금융투자상품, 기업·집합투자기구 외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을 추가
  - 그간 신용평가회사가 수행해 온 신용공여 원리금 상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는 개정 법률에 따라 부수업무로 분류됨
- (무인가 신용평가금지 예외) 신용평가 해당 소지가 있는 신용조회회사의 기업 신용조회업\*을 예외로 명시
  - \*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조회회사가 상거래 조건 결정 등을 위하여 주로 계량적 재무제표를 위주로 기업의 등급을 산출하는 업무(CB)
- (인가요건 구체화) 종전의 '신용정보법'의 내용을 이관하여 신용평가회사의 인가 요건을 명시
- (평가정보공개 강화) 이해관계자들이 신용평가서 등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공시 인프라 구축
  - 신용평가방법, 신용평가서, 신용평가실적서, 등급변화표 등을 DART 공시
- (영업행위 규칙) 평가의 공정성·독립성 확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신용평가회사의 영업행위 규칙 마련
  - 신용평가회사의 계열회사 등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특수관계 회사를 신용평가의 대상에서 제외
  - 다른 평가회사와 정보 교환, 평가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 수령, 다른 상품·서비스 제공과 연계된 평가 등을 제한

□ 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324조의3)

-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인가 신청서의 내용
  - 상호
  -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 임원에 관한 사항
  -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대주주에 관한 사항
  -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관하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은행, 금융지주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10%를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에 따른 조직구조 및 관리·운영체계가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 등의 인력과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 등을 갖추도록 함

6)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

<거래소허가 요건마련>

- (거래소허가 요건) 금융투자업자, 장외거래청산소(CCP) 등에 준하여 허가요건 및 허가절차 등을 구체화
  - (시장개설 단위) 거래소의 시장개설 단위를 4개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허가의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신설
    - ① 증권시장(모든 증권): 2,000억원, ② 증권시장(주권, DR): 1,000억원, ③ 증권시장(주권, DR 外): 1,000억원, ④ 파생상품시장: 3,000억원
  - (사업계획의 타당성) 영위 업무, 영업 소재지 등이 금융중심지 발전계획에 부합할 것 등을 세부요건으로 명시
  - (이해상충방지 강화) 거래소가 ATS에 대한 시장감시·청산 등을 수행함에 따른 이해상충방지 등을 위하여 내부통제기준 강화, 관련 부서간 정보교류 차단 등의 의무를 부과

□ 시장개설 단위(354조의3, 별표17의2)

-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면 시장개설 단위별로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따라 요구되는 최저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고, 금융투자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거래 안정성·효율성을 도모하기에 적합한 사업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건전성이 있는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추도록 함
  -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복수거래소 설립 등을 통한 자본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5. 2013/11/13 개정·11/14 시행

### 가. 개정목적

- 자본시장법 개정<sup>19)</sup>에 따라 그 적용대상이 되는 증권시장을 코넥스시장으로 정하고,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대해서는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나. 개정경과<sup>20)</sup>

-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 추진경과: 입법예고(2013.3.26~4.25, 4.5~5.15), 법제처 심사완료(2013.6.13)
- 동 개정안은 창조경제의 근간인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회수 및 재투자 여건 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특성, 코넥스시장 참여투자자의 범위 제한 및 지정자문인 제도 등 기존 정규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간 차이점 등을 감안하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공시·회계 관련 의무 등 상장유지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sup>21)</sup>

19) 2013.11.14. 시행

2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3.6.18.

- 코넥스시장 진입 재무요건: 자기자본 5억원 또는 당기순익 3억원 또는 매출액 10억원
- 기본예탁금 3억원 미만의 일반 개인투자자 참여가 제한되는 전문 투자자 중심의 시장
- 코넥스시장 상장대상 기업발굴·심사, 공시 등 규제준수 지도, 해당 기업에 대한 기업현황보고서 작성, 유동성 공급(LP) 등

#### 다. 개정내용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87조 1항 2호의2, 99조 2항 2호의2, 109조 1항 2호의2)

- 일정한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채권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또는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사채권을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
  - 기존 조문에서 '특수채증권, 그 밖에 10조 2항 1호·9호·10호·12호·13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수채증권 또는 법 4조 3항에 따른 사채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사채권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

21) 이번 개정으로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중소·벤처기업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의 상장사들과 달리 반기·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선임의무도 면제되었다. 상장사는 상법에 따라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뽑고 자산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코넥스 상장사는 이런 부담을 덜게 되었다.

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채권으로 한정한다'로 수정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176조)

- 조문 제목을 '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에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로 변경하고, 같은 조에 8항 및 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 법 165조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넥스시장을 의미
  -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대해서는 법 1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176조의19)

- 법 165조의1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넥스시장을 의미

□ 조항정비 및 조문 삭제(252조의2, 300조의2, 별표5 1호의7, 별표10 8호의2~3)

### II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2013/7/5 개정·7/6시행

##### 가. 개정목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sup>22)</sup>」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및 예비인가의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보고사항 및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나. 개정내용

-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34조의2)
  - 법 323조의4 3항에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함
    - 법 323조의3 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 법 323조의4 2항 후단에 따라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으려는 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

---

22) 대통령령 제24655호, 2013.7.5. 공포, 7.6. 시행

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34조의3)

— 법 323조의5 3항에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함

- 법 323조의3 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 법 323조의5 2항 후단에 따라 예비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의 내용이 예비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보고사항(34조의4)

— 영 318조의9 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청산대상업자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
- 청산대상업자가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청산증거금 또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항
- 청산대상업자의 재무상태가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청산대상업자의 가입요건 또는 유지요건에 미달하게 된 사항
- 청산대상업자가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미결제약정의 보유 한도를 위반한 사항

□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34조의5)

- 영 318조의10 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예탁결제원
  - 증권금융회사

## 2. 2013/8/29 개정·8/29 시행

### 가. 개정목적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의 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다자간매매채결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예외가 인정되는 기관 및 신용평가업 인가와 거래소허가의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개정내용

<개정 주요내용><sup>23)</sup>

<p>가. 금융투자업 적용이 배제되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요건을 정함  1) 발행인이 전문투자자일 것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일 것</p> <p>2) 발행인이 사업에 필요한</p> <p>나. 소유증권 예탁의 예외사유를 정함  1) 투자계약증권  2)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익명조합 등의 출자지분  3) 발행일로부터 만기가 3일 이내에 도래하는 어음</p> <p>다. 최선집행의무 적용시 예외가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류를 주권과 주권을 대상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을 제외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으로 정함</p> <p>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지정 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1) 지정요건충족확인예 필요한 자료수집기간  2)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p> <p>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시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인수·합병 관련 단기 대출의 기준기간을 6개월로 정함</p> <p>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지분을 30%까지 소유할 수 있는 금융기관,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p> <p>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함  1) 등록요건충족확인예 필요한 자료수집기간  2)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p> <p>아. 신용정보업인가심사기간 및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함  1) 인가요건충족확인예 필요한 자료수집기간  2)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3) 대주주 또는 외국 금융기관등을 상대로 제기된 형사소송 또는 감독기관 등 (외국 금융기관등인 경우에는 본국의 감독기관 포함)에 의한 조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p> <p>자. 거래소허가심사기간 및 예비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함  1) 허가요건충족확인예 필요한 자료수집기간  2)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3) 대주주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소송 또는 감독기관 등에 의한 조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p>
---

23)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37호, 2013.8.14.

□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1조의2)

- 영 7조 1항 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행요건 등'이란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이 전문투자자일 것을 의미

□ 소유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7조의2)

- 영 63조 2항 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 해당 증권이 투자계약증권인 경우
  - 해당 증권이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인 경우이며 단, 집합투자증권은 제외
  - 해당 증권이 발행일부터 만기가 3일 이내에 도래하는 어음인 경우

□ 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7조의3)

- 영 66조의2 1항 3호 각 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의미
  - 채무증권
  - 지분증권(주권은 제외)
  - 수익증권
  - 투자계약증권
  - 파생결합증권
  - 증권예탁증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은 제외)
  - 장내파생상품

□ 지정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7조의4)

- 영 77조의3 5항에서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의 기간을 의미
  - 법 77조의2 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 영 77조의3 4항 후단에 따라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 신용공여의 범위(7조의5)

- 영 77조의5 2항 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의미

□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8조)

- 영 78조 6항 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다음의 기관을 의미
  - 영 10조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 법 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 법 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28조의2)

- 법 272조의2 4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의미

- 법 272조의2 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 법 272조의2 3항 후단에 따라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36조의2)

— 법 335조의4 3항에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의미

- 법 335조의3 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 법 335조의4 2항 후단에 따라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36조의3)

— 법 335조의5 3항에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의미

- 법 335조의3 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 법 335조의5 2항 후단에 따라 예비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예비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40조)

- 법 373조의3 3항에서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 법 373조의2 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 법 373조의3 2항 후단에 따라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허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예비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41조)

- 법 373조의4 3항에서 ‘예비허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의미
  - 법 373조의2 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 법 373조의4 2항 후단에 따라 예비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예비허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IV. 전자금융거래법

### 1. 2013/5/22 개정 · 11/23 시행

#### 가. 개정목적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자금융업자 등의 해킹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스스로 분석·평가
  
-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의 발생 시 금융위원회·금융회사 등의 대응조치를 신설하고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나. 개정내용

-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3조 3항)
  - 실제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회사(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등)에 대해서는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어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되, 대상회사를 금융업권 단위가 아닌 금융회사 규모 및 전자금융거래의 빈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해킹 관련 전자금융사업자 등의 책임 명확화(9조 1항)

- 해킹(정보통신망 등에 침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사업자 등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 및 제출(21조 4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정보기술 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대표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화(21조의3)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보완조치 및 그 이행실태 점검 및 보완조치 미행 시에 대한 제재규정을 도입

□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 대응(21조의4~6)

- 전자금융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인 전자적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금융위원회가 지켜야 하는 조치사항을 정함

- 전자금융업 예비허가 및 예비인가에 대한 근거 마련(33조의2, 45조의2)
  - 전자금융업 허가 또는 인가에 앞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조사 강화(40조 4항~6항)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해당 전자금융보조업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V.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1. 2013/11/22 개정·11/23 시행

#### 가. 개정목적

-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sup>24)</sup>에 따라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기관 및 내용,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의 절차 및 방법,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나. 개정경과<sup>25)</sup>

-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법률이 지난 5월 22일 공포되었으며,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
  - 또한, 금융위 등의 침해사고 대응 전담반 운영, 금융회사의 임·직원 보안교육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2013년 7월11일 발표하였음

---

24) 2013.11.23. 시행

2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3.8.14)

### <전자금융법 주요 개정내용>

- ① 해킹사고로 인한 이용자 손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일차적 책임 명확화
- ② 금융회사 등의 정보기술부문 계획 수립·금융위 제출 의무화 및 계획 관련 CEO책임 강화
- ③ 금융회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화
- ④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 강화
- ⑤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의무 불이행시 제재 근거 신설

□ 이에 따라, 개정법률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종합대책을 이행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3년 8월 14일 금융위에 보고되었고, 2013년 8월 2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될 예정

다. 개정내용

<주요 개정내용>

금융전산 보안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기술부문 계획의 내용 구체화 및 CEO책임 명확화(안 §11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매년 정보기술부문 추진목표 및 전략, 투입 인력·예산 등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수립하고, 대표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금융위에 제출</li> </ul> </li> <li>□ 취약점 분석·평가 대상 분야 확대(안 §11조의4,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 등이 취약점 분석 평가를 실시할 분야*에 외부위탁된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시스템을 추가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금법상 취약점 분석·평가 분야: 정보기술부문의 조직·시설 및 내부통제, 전자적 장치 및 접근매체, 침해사고 대응조치</li> <li>• 비용 부담, 평가전문기관의 부족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 등의 규모에 따라 분석·평가의 내용, 주기 등을 차등화*</li> <li>* 자산규모,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금융회사 등은 일반적인 절차보다 간소화된 “간이 취약점 분석·평가” 실시</li> </ul> </li> </ul> </li> <li>□ 금융위원회의 침해사고 대응 업무 확대(안 §11조의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에서 정한 업무* 이외에 침해사고 대응 전담반 운영 등 침해사고 대응·관리 체계 및 침해사고 정보공유체계 구축,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보안 소프트웨어 보완요청 등의 업무 수행</li> <li>* 침해사고 관련 정보 수집·전파,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li> </ul> </li> <li>□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업무에 IT보안 교육 추가(안 §11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CISO 업무에 임·직원에 대한 정보보안 교육 책무를 명시</li> </ul> </li> <li>□ 중소 금융회사의 CISO 자격요건 완화(안 별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중소 금융회사는 내부인력 중 CISO 자격요건(학력·경력 등)을 충족하는 자가 없어 지정에 애로를 겪고 있고, 결과적으로 CISO가 지정되지 않아 IT보안 업무수행의 책임성 확보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신탁 등 단위조합(2,343개)의 CISO지정률(22.8%)이 낮음(단위조합을 제외한 전체 금융회사(623개) 평균지정률: 79.5%)</li> <li>• 종업원수가 일정 규모(20명) 이하인 농협, 신탁 등의 단위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CISO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li> </ul> </li> </ul> </li> </ul>
--------------	---

<주요 개정내용>(계속)

기존규제 합리화	<p>□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전금법상 주요의무의 적용 배제(안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금법상의 의무가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전제하고 있고,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이러한 의무이행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고려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회사 중 중소기업 회사*에 대해서는 전금법상 주요의무**의 적용을 배제</li> <li>*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기준을 고려하여 “종업원 수 200명 미만 또는 영업수익 200억원 이하인 금융회사(단,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는 제외)”로 규정</li> <li>** ①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 관련 금융위규정 준수 ②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 및 제출 ③ CISO 지정 ④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li> </ul> </li> </ul> <p>□ 해킹사고에 대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범위 조정(안 §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법률에 따라 해킹사고 등 발생시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실시 등 금융회사 등의 전자금융거래 보안성 확보 노력이 강화될 전망</li> <li>*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시 추가적인 본인인증(단말기 지정, SMS 인증 등)을 거치도록 하여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하는 서비스(2013.9.26 전면시행 예정)</li> <li>- 이에 대응하여, (i) 금융회사 등이 보안강화를 위해 요구하는 본인확인절차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ii) 이용자가 본인인증수단 또는 매체를 대여·위임·제공 또는 누설·노출·방치하는 경우도 고의·중과실 범위에 추가*</li> <li>* 종전에는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대여·위임·제공하거나 누설·노출·방치한 경우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에 해당</li> </ul>
-------------	---

□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기관 및 내용 등(11조의2)

-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을 정하고,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내용에 대한 규정 신설

- 법 21조 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란 다음의 자를 의미
    - 법 2조 3호 가목·나목·마목의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
  -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정보기술부문의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 정보기술부문의 직전 사업연도 추진실적 및 해당 사업연도 추진계획
    - 정보기술부문의 조직 등 운영 현황
    - 정보기술부문의 직전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
    - 그 밖에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정보기술부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의 내용(11조의 4)
- 법 21조의 3 1항 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의미
    - 정보기술부문과 연계된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11조의5)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체전담반을 구성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

가하려는 경우에는 자체전담반을 구성하여 실시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이 경우 자체전담반의 구성기준과 의뢰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의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 취약점 분석·평가는 사업연도마다 1회 이상 하도록 하되,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그 피해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하도록 함

□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등(11조의6)

-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로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관리하는 침해사고 대책본부의 운영,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계획의 수립 및 훈련, 침해사고와 관련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한 자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보안취약점 통보 등을 정하고, 금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관련 정보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VI.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1. 2013/8/6 개정·시행

#### 가. 개정목적

- 투자처를 찾고 있는 유동자금을 벤처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투자금 회수의 주요한 통로인 인수합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수합병 이후에도 피인수기업의 우수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

#### 나. 개정내용

- 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15조의9 1항)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 이하인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 신주의 총수가 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로 규정하고 있었음
- 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15조의10 1항)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

식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16조의3 1항 4호)

-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함

## VII. 금융지주회사법

### 1. 2013/8/13 개정·2014/2/14 시행

#### 가. 개정목적

- 2009년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산분리제도를 완화하였으나, 이는 재벌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금산결합에 따른 위험전이로 인해 전체 금융그룹차원의 건전성이 악화되며,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겨날 소지가 있음
  - 이에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개정

#### 나. 주요 개정내용

-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를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하는 기준을 강화(2조 1항 8호 다목~마목)
  - 기존은 비금융주력자를 발행주식총수의 9%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규제하였으나 개정 후는 발행주식총수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회사로 변경
  - 기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가 취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의 합이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36%이상인 경우로 규제하였으나 개정 후는 30%로 변경

- 기존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9%를 초과하여 취득·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를 규제하였으나 개정 후는 주식 또는 지분의 4%로 변경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규정을 삭제(8조의4, 8조의5 1항)
  - 사전적격성 심사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10조)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를 9%에서 4%로 축소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2조)
  - 본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비금융주력자는 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VIII.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1. 2013/8/13 개정·2013/9/14 시행

#### 가. 개정목적

- 금융거래정보의 엄격한 관리 및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거래정보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에 거래정보의 명의인에게 제공사실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를 추가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통보 및 통보유예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기 위함

#### 나. 개정내용

-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4조의3 1항 6호)
  -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에 관한 내용 신설
- 금융위원회의 업무(4조의4)
  - 기존 규정 상 거래정보등의 요구 및 제공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 파악 및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요구 및 제공 현황”을 “요구, 제공,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으로,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를 “매년 정기국회”로 변경



## 제2편: 금융위원회규정

---

- I. 금융투자업규정
- II.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 III.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IV.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 V.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VI.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 VII.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 VIII. 전자금융감독규정
- IX.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기준



## 제2편: 금융위원회규정

### I. 금융투자업규정

#### 1. 2013/2/5 개정·시행

##### 가. 개정목적

- 「CD금리 등 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과 「CP시장 현황 및 대응방안」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단기금융상품(콜, 기업어음)을 대체하려는 도입 취지를 감안한 타 금융상품과의 형평성 제고

##### 나. 개정경과<sup>26)</sup>

###### 1) 추진배경

- 국내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은 콜시장, 환매조건부매매(RP)시장, 양도성예금증서(CD)시장, 기업어음(CP)시장 등으로 구분됨
  - 상기 4개 시장을 합친 단기금융시장 총잔액은 약 72조원, 일평균 거래(발행)액은 약 48조원 수준

---

2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 2013.11.20.

(단위: 조원, 2013년 9월말)

	총계	콜	기관간RP	시장성CD	금융회사CP
잔액	71.9	24.3	20.6	3.9	23.1
거래·발행액(일평균)	47.8	29.9	17.3	0.1	0.5

주: 콜 및 기관간RP는 거래기준, 시장성CD 및 금융회사CP는 발행액 기준

- 그동안 정부는 단기자금시장에서 콜시장 편중을 해소하고 지표금리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음
  - 우선, 콜시장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시스템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① 증권사 콜차입을 규제(2011년 6월)하고, ② 전자단기사채법을 제정하여 시행(2013년) 하였음
  - 또한, 다양한 지표금리를 육성하고 지표금리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① 코픽스 및 단기코픽스를 도입(2010년 1월 및 2012년 12월)하였고, ② 은행에 일정규모 이상의 CD를 발행하도록 지도(2012년 8월) 하였음
  
- 그 결과, 금융회사간 단기자금거래 중 콜시장 편중현상이 다소 완화되었고 대출시장에서 다양한 단기지표금리가 활용되는 성과가 있었음
  - 증권사의 콜차입 규모가 감소하는 등 콜거래 비중이 하락하고 콜시장이 은행간 중심으로 재편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RP시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었음
    - (증권사 콜차입 규모) 2011년 2월 사상최대인 15.3조원 → 2013년 9월 6.8조원까지 축소(△8.5조원 감소)
    - (증권사 기관간RP매도 규모) 2011년 5월 4.3조원 → 2013년 9월 8.1조원까지 확대(3.8조원 증가)

- 은행간 거래비중(월평균 거래량 기준): (2011년 12월) 28.2% → (2012년 12월) 31.6% → (2013년 9월) 35.4%

— 코픽스 도입 이후 변동금리대출 CD연동 대출은 감소한 반면, 코픽스연동 대출은 대폭 증가

- CD연동 대출비중: (2010년말) 41.0% → (2013년6월말) 19.9%로 감소
- 코픽스연동 대출비중: (2010년말) 6.9% → (2013년 6월말) 14.6%로 증가

□ 한편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관계기관간 TF<sup>27)</sup>를 구성·운영하여, 지난 2011년 6월 발표한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의 구조적 개선 방안」 추진 이후 2년여간의 추진성과 및 추가적인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였음

— 이를 토대로 단기자금시장 및 지표금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함

## 2) 문제점

□ 금융회사간 단기자금 공급이 여전히 무담보 콜시장에 편중되어 시장효율성이 저하되고 콜시장 불안이 시스템리스크를 증대시킬 우려 상존

— 여전히 콜시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단기자금시장 구조가 RP시장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다양한 상품과 만기(기일물)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금리체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 내포

---

27) 금융위, 기재부, 한은, 금감원, 연구기관, 협회

- 콜시장에서 단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여 장기영업자금으로 활용하는 증권사의 콜차입 관행이 지속될 경우, 콜시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신용경색 발생시 콜시장 불안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 상존
  - (2008년 금융위기사) 리먼사태 → 자산운용사 펀드환매 → 콜론 공급 규모 축소 → 콜시장에 의존하던 증권사의 차환위기 → 시장경색 → 증금·한은 등의 긴급 유동성공급

□ 대출·자금시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단기지표금리인 CD금리를 대체할 지표금리가 부재

- 2009년 예대율규제 시행 이후 은행권의 자발적인 CD발행 유인이 약화되어, CD금리의 유효성이 행정지도에 의해 확보되고 있는 상황
  - 은행별로 CD금리 연동대출 잔액에 비례하여 총 2.0조원(시장성CD의 월평균잔액 기준)의 원화시장성CD 발행의무 부과
- 특히, IRS 등 파생상품시장에서는 3개월물 지표금리로서 사실상 CD금리만이 활용되는 등 현실적으로 CD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금리가 없는 실정

□ 한편, 현재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관련 규정이 산재되어 있고, 관련사항에 대한 공시와 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문제발생시 일관성 있는 대응에 한계

**<코리보 개선방안 주요내용>**

- 금리제시 방식의 투명성 제고 등 코리보 신뢰성 제고
  - 금리제시은행이 준수해야 할 코리보 제시 기본원칙 마련
  - 금리제시은행 내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만기 단순화를 통한 활용도 제고(10종→6종)
  
- 코리보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대폭 강화
  - 현행 은행연합회내 코리보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내실있게 운영
    - \* 코리보전문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은행연합회 내에 코리보 금리제시은행·금융권·학계·정책당국 등으로 구성되는 코리보 운영 자문기구를 설치, 동기구는 코리보 관련 주요 운영사항에 관한 권고·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
  - 금감원의 금리제시은행 검사 시 규정준수 여부 등을 감독
  
- 금리제시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 검토
  - 금리제시기관의 지정근거 명확화 및 필요시 관련사항 법제화 검토

**다. 개정내용**

- ABCP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3-66조 1항)
  - 기존 증권사가 거래하는 ABCP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감독당국의 시장현황 파악 및 신속대응에 한계
    - 증권사가 취급한 ABCP 거래내역을 금감원에 사후보고 하도록 함
  
- 전자단기사채등을 취급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 완화(4-6조)
  - 2012년 6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정 조건의 기업어음을 취급하는 경우 정보교류 차단(chinese wall)규제의 적용 완화
    - 이에 따라 기업어음과 경제적 실질 및 기능이 동일한 전자단기사채등의 경우에도 정보교류 차단 규제를 완화

□ 전자단기사채등의 장외거래 결제주기 규정(5-4조)

- 채권의 장외거래에 따른 결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단기사채등의 경우 발행기업의 초단기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에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 보고의무 부여(5-8조, 5-9조)

- 「CD금리 등 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지정한 증권사에 대해 CD 호가내역을 협회에 제출할 의무를 부여
  - 기존 금융투자업규정상 협회에는 금리를 관리·공시할 의무가 있으나 증권사에는 의무가 없었음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기업어음 편입한도 축소(7-19조)

- 기존에는 채무증권 전체에 대해 신용평가등급별 운용한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채무증권 운용한도 외에 기업어음에 대한 별도 운용한도를 신설
  - 채무증권의 등급별 운용한도: 최상위등급 5%, 차하위등급 2%
  - 기업어음의 등급별 운용한도: 최상위등급 3%, 차하위등급 1%

## 2. 2013/4/23 개정·10/24 시행(단, 일부 조항 예외)

### 가. 개정목적

- 계열사인 금융회사를 통하여 펀드판매, 변액보험 운용위탁 등을 계열사 간에 집중시키는 관행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

### 나. 개정내용

- 계열사 발행 증권의 인수 관련 규제 정비(4-19조)
  -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의 최대수량 인수를 제한하는 등 불건전 인수행위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
- 투자권유와 관련한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항목 추가(4-20조 1항 5호 자목)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의 사채권,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증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채무증권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항목(4-20조 1항 10호 마목, 4/23 시행)
  - 펀드판매 회사의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이 여전히 높아 투자자에게 우수한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기능이 미흡함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로 계열사 펀드판매 금액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최소한의 비율규제를 도입

- 단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와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금액 산정에서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4-63조3의2호, 4/23시행·6호)

- 매 사업연도별로 계열사인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한 펀드판매 금액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
-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 증권등에 운용하는 행위 금지

□ 계열사에 대한 변액보험 운용 위탁한도 설정(4-63조 7호, 2014/7/1 시행)

- 보험사가 계열사인 자산운용사 등에 변액보험 운용을 집중적으로 위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열사에 대한 변액보험 운용의 위탁 한도를 50%로 설정하는 등 최소한의 분산 요건을 마련

□ 계열 증권회사에 대한 매매위탁 거래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등(4-66조 2항)

- 매매위탁의 경우 서비스의 차별성이 크지 않아 계열사 간에 수익 제고 수단 등으로 활용될 우려 등이 제기됨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계열사인 증권회사를 통한 매매위탁 거래의 상한을 50%로 설정하는 한편, 매매위탁 수수료 지급기준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

□ 투자일임재산의 계열사 증권 편입 제한(4-77조 15호~16호)

-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있어 계열회사 발행 증권 편입에 대한 최소한의 비율규제를 도입
  - 지분증권의 경우: 각 투자일임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금지
  -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의 경우: 전체 투자일임재산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전체가 그 투자일임업자에 대해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금지
  - 투자일임재산을 투자일임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의 금지

□ 신탁재산의 계열사 증권 편입 제한(4-93조 6호, 6의2호)

- 신탁재산 운용에 있어 계열회사 발행 증권 편입에 대한 최소한의 비율규제를 도입
  - 지분증권의 경우: 각 신탁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금지
  -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의 경우: 전체 신탁재산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전체가 그 신탁업자에 대해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금지
  - 신탁재산을 신탁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의 금지
- 단, 신탁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

### 3. 2013/7/9 개정·시행(일부제외)

#### 가. 개정목적

- 장외거래 청산회사의 도입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세부적인 위임사항을 정하고 기존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나. 개정내용

##### 1) 장외거래의 청산의무 도입

- 장외거래의 청산의무(5-50조의2)
  -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청산의무 대상거래로 정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기초자산, 만기 등 세부 요건을 정함
    - 기초자산: 협회가 발표하는 91일 만기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율
    - 거래의 만기: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기간
    - 그 밖에 최소계약금액 등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해외 입법례를 감안하여 외국 청산회사 승인요건 중 상호협력약정 체결의 세부 내용을 정함
    - 금융위원회가 요청하는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교환체계

-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본국 정부 및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토록 하는 고지체계
-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국내 청산대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토록 하는 고지체계
-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본국 감독당국간 현장검사 등을 포함한 감독 및 검사업무 협력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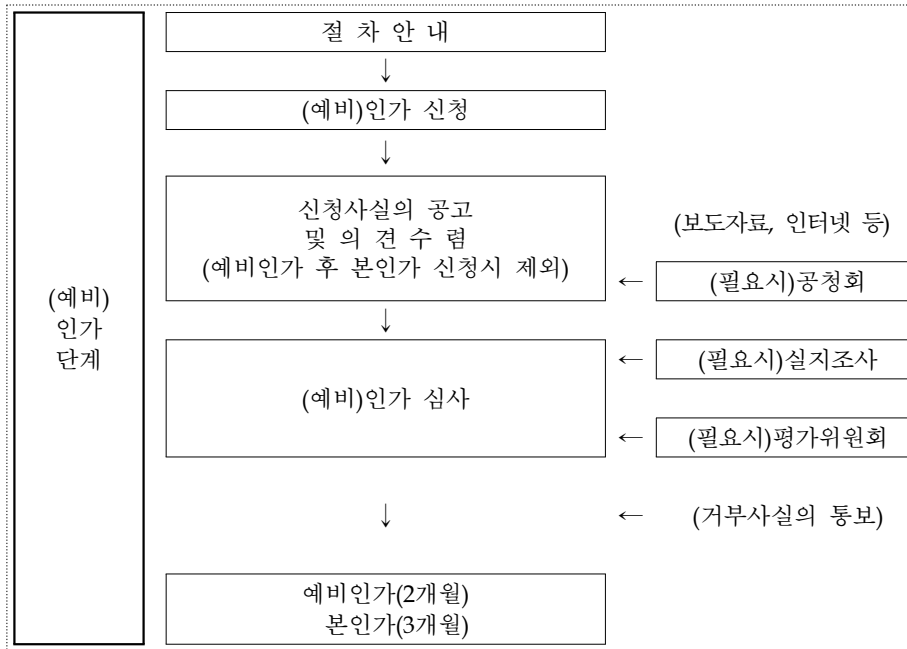
— 금융위원회는 영 186조의3 3항의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승인할 경우 경영의 건전성 및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

### □ 인가절차(8-3조의2)

— 기존 금융투자업의 경우에 준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절차(예비인가, 본인가를 포함)를 마련

<(예비)인가절차 흐름도>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18-2호 및 별지 18-3호의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인가업무의 수행(8-3조의3)

—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 인가 심사기준(8-3조의5)

## — 정관 및 청산업무규정

-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증권위원회기구(IOSCO)가 공동으로 정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을 반영할 것
- 법률, 신용, 유동성, 운영 및 그 밖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반영할 것

## — 사업계획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안정적인 영위
-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 보호
-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준수
- 그 밖에 신청한 인가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업계획을 구비하고 있을 것

## — 인력과 전산설비

- 신청한 인가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 건전성 확보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단,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2)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경영의 건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대상자가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 경제상황 및 국제환경 급변 시에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안정적인 영위를 위하여 조직을 갖출 것

— 그 밖의 물적 설비

-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 보안설비
-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 그 밖에 신청한 인가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구축하고 있을 것

—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 정보교류 차단

— 단,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3) 직불카드 발급 업무 허용

□ 겸영업무(4-1조)

— 증권사의 수익 다변화 지원을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겸영업무로 허용

4)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의 합리적 산정의무 부여

□ 투자자예탁금 이용료(4-46조)

-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예탁금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

4. 2013/9/17 개정·시행

가. 개정목적

-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존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나. 개정내용

- 금융투자업 적용이 배제되는 파생결합증권의 위험회피요건과 파생결합증권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골드뱅킹(금적립계좌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금융투자업자가 골드뱅킹을 취급하는 경우 은행과 동일하게 완화된 규제를 적용(1-4조의3)
  - 영 7조 1항 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의미

- 위험회피대상인 파생결합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동일하고 손익의 변화방향이 반대일 것
- 위험회피대상인 파생결합증권의 액면금액과 장외파생상품의 명목원금이 동일할 것
- 위험회피대상인 파생결합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의 계약기간(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기상환일을 포함)이 동일할 것

— 영 7조 2항 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의미

- 투자자가 금전 등을 지급한 날에 파생결합증권이 발행될 것
- 파생결합증권의 계약기간(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기한) 동안 매 영업일마다 청약 및 발행이 가능할 것
- 파생결합증권의 계약기간 동안 매 영업일마다 투자자가 그 파생결합증권을 매도하여 금전 또는 실물로 회수할 수 있을 것
- 발행인이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지급할 실물의 매입을 위하여 사용할 것

— 영 7조 2항 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투자에 따른 위험과 손익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기초자산이 금인 파생결합증권에 한함)으로서 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의미

□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시장조성을 위해 기관간RP를 매매하는 경우와 신주인수권증서의 유통을 위하여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이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계약금지의 예외를 인정(4-17조의2)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에서 제외되는 상품, 다자간 매매체결회사의 보고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4-48조의2)

— 매매체결대상상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가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증권
- 영 11조 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증권
- 상장 또는 자본감소 등에 따라 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가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그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최초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그 날을 포함하여 1일이 경과하지 않은 증권
-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주식 또는 발행인과 금융투자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특정 증권을 상장한 거래소시장에서 그 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 및 시장조성을 하기로 한 경우 해당 증권
- 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가 법 393조 및 403조에 의한 거래소규정에 따라 단기과열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등 투자자 보호와 거래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증권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함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법 8조의2 5항 1호의 방법에 따른 거래량을 말함)이 영 7조의2 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법 8조의2 5항 2호와 3호의 방법에 따른 거래량을 말한다)이 영 78조 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자간매매채결회사가 영 78조 6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내용
- 다자간매매채결회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거래량 및 거래대금 등 다자간매매채결업무의 현황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함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시 펀드에 편입된 파생상품이 위험평가액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거래상대방위험의 추정방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담보의 가치를 차감할 수 있도록 함(4-54조)
-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일임업자 등이 인가취소의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고유재산, 특수관계인 등의 재산만을 이용하거나 허위·이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함(4-63조, 4-77조)
- 투자자문·운용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공인되고 신뢰성 있는 성과지표를 사용할 것, 성과보수의 지급으로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지 않을 것 등으로 구체화(4-77조의2)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 산출시 포함되지 않는 재담보를 통한 신용공여의 세부요건을 구체화 함(4-102조의4)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유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제삼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전담신용공여를 하는 금액은 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담보물의 반환 또는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제삼자에게 제공한 담보를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 등 적정한 담보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대차거래 시 징구하는 담보의 범위에 금융기관 예치금과 달러 이외의 외국통화를 포함하고, 담보를 징구하는 방법으로 질권설정을 추가함(5-25조, 5-26조)

□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을 대량보유 보고 대상에 포함시키고 보고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정함(6-29조)

□ 펀드 수익자총회에서 간주의결권 행사시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자에 대한 통지 및 공시의무를 부과함(7-8조의2)

— 집합투자업자가 다음의 사항을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후에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함

- 법 190조 6항 각 호에 따른 간주의결권행사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에 관한 사항

**간주의결권행사 제도**

수익자총회 개최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수익자에 대해 총회 결의대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종의 섀도보팅(Shadow Voting)제도다. 단, 금융위는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수익자총회에서 최소 10% 이상의 결권이 행사됐을 경우에만 간주의결권행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주권관련사채권 투자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업무 집행사원에 대한 등록절차 마련,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고부담 완화, 규제회피목적의 이면계약 금지 등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7-46조, 7-47조, 7-47조의2)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
    - 법, 영 또는 이 규정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등록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업자 등의 개요 및 기본정보의 변경
    - 1호부터 3호까지의 사항 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은 법 23조 1항, 272조 6항 2호 및 영 291조 4항 등에 따른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원간에 출자한 지분을 장래에 양수 또는 양도하기로 하거나(양수 또는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를 포함)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이면계약 등에 따라 출자비율, 출자방법 및 손익의 분배 등을 정관과 달리 정해서는 안 됨
  
- 신용평가사 관련 규제체계를 마련(8-19조의2~8-19조의12)
  - 신용평가회사의 인가 심사기준, 인가절차, 인가조건 부과의 범위, 인가업무 수행 시 필요한 사항

-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부수업무의 영위에 관한 사항, 신용평가의 방법 및 신용평가의 결과로 산출·제공·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 신용평가회사가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
- 거래소 허가요건,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정보교류차단 관련 사항, 거래소 허가절차 등 거래소 허가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8-87조~8-90조)
- 거래소 허가요건
    - 별표27(거래소의 인력·물적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간에 해당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것
    - 시장감시업무와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 간의 경우: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에 관한 정보(단,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감시업무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
    - 청산업무와 증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 간의 경우: 다자간 매매체결회사의 매매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내역 확정 등에 관한 정보(단, 증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청산업무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
    - 시장감시업무등과 청산업무등 간의 경우: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에 관한 정보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내역 확정 등에 관

한 정보(단, 청산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감시업무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시장감시업무등을 위하여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내역 확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

## 5. 2013/10/22 개정·시행

### 가. 개정목적

-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단기금융상품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형식적으로 상이하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단기금융상품간의 규제 차이 해소

### 나. 개정내용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4-77조 14호, 4-93조 20호)
  - 수시입출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의 신용등급 요건을 신설함
    - 투자일임재산을 거래일과 결제일이 동일한 자산으로 운용할 것
    - 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sup>28)</sup>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일 것

---

28) 둘 이상의 평가업자에게서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이고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의미

- 투자일임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듀레이션)를 90일 이내로 유지
  -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유동성 자산의 종류별로 각각 의무 보유 비율을 정함
    - 7-16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10%이상
    - 7-16조 4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30%이상
  - 수시입출방식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의 신용등급 요건을 신설함
    - 신탁재산을 거래일과 결제일이 동일한 자산으로 운용할 것
    - 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내일 것
  - 신탁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듀레이션)를 90일 이내로 유지
  - 신탁재산에 속하는 유동성 자산의 종류별로 각각 의무 보유비율을 정함
    - 7-16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10%이상
    - 7-16조 4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30%이상
- 환매조건부매도의 범위 등(7-15조 4항)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가중평균잔존만기(듀레이션) 요건을 현행 90일에서 75일로 하향 조정
- 운용대상자산의 제한 등(7-16조 3항~5항)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보유해야 하는 유동성 자산의 종류와 각각의 운용 비율을 의무화함

- 현금
- 국채증권
- 통화안정증권
-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양도성예금증서·정기예금
  - (2)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법 71조 4호 나목에 따른 증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기업어음증권
  - (3) 영 79조 2항 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
  - (4) 전자단기사채
- 환매조건부매수
- 단기대출
- 수시입출입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 환매대금의 지급으로 유동성 자산의 의무 운용비율이 하회하게 될 경우에 의무 의운용비율의 재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함
  - 일시적인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으로 자산의 운용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회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그 비율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
-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의 30%이상을 다음의 자산에 운용해야 함
  - 3항 1호부터 3호에 해당하는 것
  - 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3항 4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
  - 3항 5호~7호에 해당하는 것

## 6. 2013/12/4 개정·시행

### 가. 개정목적

- 최근 특정금전신탁의 수탁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특정금전신탁이 신탁의 본래 취지인 맞춤형 자산관리기능을 충실히 하고 투자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한편, 사모사채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신탁운용보고서의 통지기준을 변경하여 신탁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나. 개정내용

- 신탁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여 중요사항이 기재·설명될 수 있도록 함(4-93조 29호)
- 사전 설계된 상품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금지(4-93조 10호, 14호)
- 파생상품이 편입된 신탁계약 체결 권유시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사용을 의무화(4-93조 28호)
-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의 거래인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업자의 중개 등을 통한 수익권 양도 등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4-93조 30호)

- 신탁운용보고서 통지에 따른 소요비용 등을 감안하여 통지의무 적용 대상을 집합투자자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4-93조 11호)
  
- 사모로 발행되는 전자단기사채 및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를 증권회사 신탁을 통해 편입하는 것도 허용(4-87조)
  
- 부칙
  -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
    - 단, 4-93조 28호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 사모사채의 매수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 당시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로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개정규정 4-87조 1항 6호 나목에 따른 사채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사모사채의 매수로 보지 아니함

## II.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 1. 2013/10/22 개정·시행

#### 가. 개정목적

-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신용평가회사, 공모 및 사모 집합투자기구 등의 보고서식과 작성방법 등을 신설 또는 개정

#### 나. 개정내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신용평가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총 11개의 보고서식 신설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초과 보고서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초과에 대한 조치 보고서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체결현황 보고서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현황 보고서
  - 신용평가실적서
  - 신용등급변화표
  - 평균누적부도율표
  - 신용평가회사 업무보고서
  -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 사모투자전문회사 정기보고서
- 사모투자전문회사 경영권참여보고서

□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별표31)

-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신용평가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함
  -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중 일부를 개선·보완하여 이관(6-5조 및 <별표31>)

□ 금융투자업자 업무보고서 및 집합투자기구 영업보고서 등의 보고 항목 신설·폐지, 용어 정비

- 금융투자업자 업무보고서 서식
  - '인수증권 보유 현황' 신설
- 집합투자재산 영업보고서 서식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내용 및 그 사유 신설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여부 및 그 내용 폐지
- 장내파생상품 대량보유·변동보고서
  - 자본시장법규 개정에 따른 보고서 서식명칭 등 용어 정비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변경)신청서
  - 기재상의 주의 개정
-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립)보고서
  - 자본시장법규 개정에 따른 보고서 서식명칭 등 용어 정비
-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변동보고서

- 자본시장법규 개정에 따른 보고서 서식명칭 등 용어 정비
-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기보고서
  - 자본시장법규 개정에 따른 보고서 서식명칭 등 용어 정비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변경등록)신청서
  - 본점소재지 신설
  - 차입 및 채무보증내역,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 내역 등 폐지
- 그밖의 용어정비
  - 자본시장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 일괄 정비



### Ⅲ.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1. 2013/2/5 개정·시행

##### 가. 개정목적

- 「CP시장 현황 및 대응방안」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단기금융상품(콜, 기업어음)을 대체하려는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타 금융상품과의 형평성 제고

##### 나. 개정경과<sup>29)</sup>

- 그동안 정부는 기업어음(CP)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2년 12월에 관련 법령 제정을 완료하였음
  - ①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2011.7.14)  
→1년 6개월 경과 후 시행
  - ②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2012.12.4)
- 2013년 1월 15일부터 전자단기사채제도 시행
- 정부는 기업어음(CP)이 전자단기사채로 원활히 대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

---

<sup>29)</sup>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전자단기사채제도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2013.1.14)

- 유통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이내의 전자단기사채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면제
  - 일정기간(예: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 이자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 면제를 추진하고,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면제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
- 신속한 발행이 가능하도록 만기 3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 2013년 4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
- 전자단기사채의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사모발행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편입이 가능하도록 투자제한 완화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 2013년 4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
- 전자단기사채는 자본시장법상 사채권이지만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기업어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신용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기업어음과 동일하게 규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 2013년 4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

#### 다. 개정내용

- 기업어음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여(2-2조 1항 5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여
    - 50매이상으로 발행되는 경우

- 기업어음의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
- 기업어음이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될 경우

□ 특정 조건으로 발행된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전매기준 적용 완화(2-2조 2항)

-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고 발행 후 최초 발행 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 및 만기 3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상법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 서식규정(2-8조의2)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이외의 자산유동화 증권에 대해서도 자산유동화법에 근거한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준용하도록 규정

## 2. 2013/6/25 개정·시행

### 가. 개정목적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발행공시 의무 완화 등을 위해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증권모집 전매기준에서 코넥스시장을 제외하기 위함

### 나. 개정경과<sup>30)</sup>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유지부담 경감, 코넥스시장의 조기 안착 등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과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6월 19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 6.18 국무회의 통과, 6.21 공포·시행

### 다. 개정내용

- 증권모집 전매기준에서 코넥스시장 제외(2-2조)

—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의 경우 증권모집(공모)으로 보는 전매기준 적용을 배제

- 지분증권의 경우 50인 미만에게 청약권유를 하더라도 해당 지분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미적용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완화해 줌

- 코넥스시장에 대해 발행공시 규제 완화(2-2조의3 1항)

— 시행령 11조 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상장예정법인 포함)임을 명시

---

3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및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 개정안 승인(2013.6.19).

- 코넥스시장 참여자를 청약권유 대상자에서 추가적으로 제외(2-2조의3 2항)
  - 개인투자조합, 적격엔젤투자자, 기본예탁금이 3억원 이상인 자 등을 증권의 모집·매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자에서 제외
    - 적격엔젤투자자: 중기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엔젤투자자 중 투자전문성, 손실감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코넥스시장 투자자로서의 적격성을 인정(확인)한 자

### 3. 2013/9/17 개정·시행

#### 가. 개정목적

-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존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나. 개정경과<sup>31)</sup>

- 금융위원회는 9월 11일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관련 5개 하위규정의 일부개정안을 의결

---

3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투자업규정 등의 개정에 따른 개선사항(2013. 9.10).

- 금번 규정개정은 지난 8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자산운용업의 규제체계를 개선하고 실권주 발행 철회의 예외 기준 등 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음

#### 다.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증권 매출신고서 면제요건 구체화<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미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증권의 경우 일정요건 하에서 매출신고서를 면제함<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는 등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없는 경우에는 매출신고서를 면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li></ul></li></ul></li><li>□ 실권주 발행 철회의 예외기준 마련<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신주발행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회사가 임의 배정함에 따라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실권주 저가인수 등 부작용 발생</li><li>— 이에 따라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실권주 발생시 철회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가격요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정하도록 함</li></ul></li><li>□ 신주인수권증서의 유통방법<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개정 자본시장법령에서 신주인수권의 공정한 가격형성 등을 위해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유통을 허용<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신주인수권 증서가 공정하고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주주의 저가 매집을 방지하고 소액주주들의 공정한 재산권 행사 기회를 확대</li></ul></li></ul></li><li>□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가액, 전환사유 등<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개정 자본시장법령에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새롭게 도입됨</li></ul></li></ul> |
|---|

□ 매출신고서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발행인과 매출인의 요건, 신고서 제출 면제가 가능한 수량의 한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2-4조의2)

— 매출신고서 면제요건

- 발행인과 매출인이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대주주, 주요주주 또는 임원의 관계가 아닐 것
- 발행인이 최근 1년간 공시위반으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47조 1항 12호 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매출인이 최근 1년간 공시위반으로 법 42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영 138조 또는 175조에 따른 조치,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47조 1항 12호 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주권으로서 과거 6개월간 매출인이 매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매출한 수량과 이번에 매출하고자 하는 수량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량보다 적을 것

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나. 매매 체결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간 일 평균거래량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수량

□ 합병가액 산정관련 위법행위, 부실평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부평가기관에 대해 평가업무 제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5-14조의3, 별표)

- 실권주 철회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가격의 산정 방식을 정함(5-15조의2)
  - 법 165조의6 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함)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의미
    - 법 165조의6 1항 1호: 40%
    - 법 165조의6 1항 2호: 10%
    - 법 165조의6 1항 3호: 30%
  - 단,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18조 3항을 준용
  
- 조건부자본증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권관련 사채권의 경우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주권으로의 전환가격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준수하는 경우 실권분을 철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5-15조의4)
  
- 신주인수권증서의 유통을 위한 세부방법을 금융투자업자가 회사 내부의 주문·체결시스템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투자자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매매하거나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함(5-19조)

-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사유를 정하고 전환사유의 유형에 따른 전환가액의 결정 방법을 정함(5-25조)

## 4. 2013/12/4 개정·시행

### 가. 개정목적

- 최근 특정금전신탁의 수탁고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여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규제차익 추구행위 방지 및 불완전판매 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의 발행자 및 투자자 요건 등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나. 개정배경<sup>32)</sup>

-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고 신탁회사는 이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
  - 투자자가 직접 자산운용에 간여할 수 있는 1:1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

3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특정금전신탁 운용 현황 및 정책방향(2013.4.11).

- 시중은행의 겸영업무(신탁사업부)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2005년 증권사의 신탁겸영 허용으로 금융권역간 경쟁이 지속되면서 특정금전신탁 수탁고 급증(은행 96.4조원, 증권사 102.1조원)
  - 수탁고(조원): (2003년말) 27.4 → (2009년말) 101.8 → (2012년말) 199.8 (퇴직연금 포함)
  - 또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문투자기관의 맞춤형 투자수요 증가로 수탁고가 전년말보다 25.3%(2012년말) 상승
    - 수탁고 증가율(% , 전년말 대비): 특정금전신탁 25.3 > 투자일임(자산운용사) 14.2 > 펀드 6.4
  
- 그러나, 특정금전신탁은 양적인 성장에 비해 판매 및 자산운용 등의 측면에서 신탁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측면도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실정
  - 작년 하반기 특정금전신탁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 투자권유나 설명서 교부의무 등 투자자 보호 미흡 사례와, 규제회피성 자전거래 등 부적절한 업무운용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신탁이 본래의 맞춤형 자산관리 수단이 아닌 집합투자(펀드) 규제의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도 일부 존재
  
- 아울러 건전성 규제가 미흡한 Shadow Banking에 대해 정부가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특정금전신탁의 개선 필요성 증가
  - ELS·DLS 제도개선 방안 마련(2012.9), CP시장 투명성 제고 및 발행 규제강화 방안 발표(2012.9), 단기 자산운용상품 간 규제차익 해소방안 마련(2012.10) 등등

<shadow banking 관련 자본시장 건전화 추진 경과>

구분	발표 시기	주요 내용	추진 방법 및 시기
ELS/ DLS	20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사별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헤지자산과 고유재산 구분)</li> <li>• 헤지자산의 건전성 확보 등 위험관리 강화</li> </ul>	시스템 구축(2012년말) 모범규준 마련(2012.9)
CP	20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CP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li> <li>• 50인 이상 특금 위탁자에게 CP 편입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li> </ul>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 2013.2, 시행 2013.5) 금투업규정개정(2013.2)
MMF/ MMW/ MMT	201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MF 유동성비율 규제 (예; 1일물 10%, 7일물 30% 이상 편입)</li> <li>• MMF 듀레이션 한도 축소(90 → 60일)</li> <li>• MMF 규제를 MMT·MMW에 적용(편입 자산을 상위 2개 신용등급으로 제한)</li> </ul>	금투업규정 개정 (시행 2013.하)
계열 금융사 거래 집중	201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기등급 CP·회사채의 신탁재산 편입 금지</li> </ul>	금투업규정 (개정 2013.4, 시행 2013.5)
특정 금전 신탁	201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ELS등 편입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li> <li>• 파생상품 편입 금전신탁상품 판매 규제 강화</li> <li>• 규제회피 목적의 자전거래에 대한 검사·제재 강화</li> </ul>	증권발행·공시규정, 금투업규정의 개정, 모범규준 마련 등 추진(2013.상)
PEF	201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전대여 성격의 옵션부투자 금지</li> </ul>	모범규준 개정 추진 (2013.4)

## 다. 개정내용

-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고 그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부여
  
-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의 적격기관투자자, 채권 발행기업 및 투자 대상증권 범위 확대
  - 적격기관투자자 대상 증권(QIB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기관 투자자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 금융자산 100억원 이상 일반기업 및 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
  - 주권상장기업이라도 총자산이 5천억원 미만일 경우 QIB 채권의 발행을 허용
  - 채권, 주식관련 사채(BW, CB) 이외에 기초자산에 QIB 채권이 80%이상 포함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투자 대상으로 함
  
- 부칙
  - 고시한 날부터 시행
    - 단, 2-2조 1항 6호 및 2-2조 2항 6호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IV.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 1. 2013/6/25 제정·시행

#### 가. 제정목적

- 인가·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금융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데 관련된 정보처리 업무 및 관련 전산설비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나. 제정경위<sup>33)</sup>

- IT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다양한 정보처리 및 관련 전산설비의 상당부분이 위탁 운영되는 추세
  -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을 '위탁회사'를 위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수탁자를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제공'과는 구분
  - 국내에서는 여타 위탁과 마찬가지로 일반규정(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이 이루어지면서 외부 전산설비의 이용 필요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

---

3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규정제정 예고 등(2013.4.16).

- 또한 한-EU, 한-미 FTA 체결에 따라 금융회사의 일상적인 자료처리 (data processing)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해외 이전 방안 검토 필요
  - 협정문상 유보조항에 따라 한·EU FTA 발효(2011.7.1) 후 2년내 (2013.6.30), 한·미 FTA도 발효(2012.3.15) 후 2년내(2014.3.14) 정보이전을 허용
    - 단, 협정문상 우리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감독가능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고려하여 정보 이전을 제한할 수 있음
      - \* 일정요건: ① 소비자의 민감정보 보호, ② 민감정보의 무단 재사용 금지, ③ 감독당국의 접근권 ④ 기술설비의 위치에 대한 요건 등
  
-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민간전문가 TF 및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보처리 업무 위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여 왔으며, 기존 법령의 허용범위 안에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적 위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자 함
  - 위탁 허용범위 및 절차, 이에 따른 금융이용자 보호 및 감독권한의 유지 등

#### 다. 주요 제정내용

- 총 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회사가 위 규정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 내용을 '표준계약내용'으로 정하고 있음
  - 정의규정(2조)

- 금융회사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전자금융업자
- 외국계 금융회사: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국내 지점 또는 계열사인 금융회사
- 계열사: 해당 금융회사와 주식보유 등을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상법상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출자관계로 연결된 경우(단, 상장된 회사의 경우 소유지분 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함)
- 전산설비: 금융회사가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관련 시설 및 장비를 포함

- 정보처리: 금융회사가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산설비를 활용하여,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
- 위탁: 금융회사가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함 다만, 금융업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설관리 등 단순한 구매·용역계약은 제외
- 전산사고: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의 장애, 재해, 파업, 테러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업무의 중단 또는 지연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 적용범위(3조)

- 금융회사(외국계 금융회사를 포함)의 정보처리 업무 및 관련 전산설비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업의 인가등을 신청한 자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하나 관련 법령상 인가등의 결정 기한에는 해당 위탁의 적부 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외 본점·지점 또는 계열사 간에 체결하는 용역 또는 전산시설 등의 공급계약은 이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으로 간주(그 밖의 금융회사가 국외 지점과 용역 또는 전산시설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

— 정보처리의 위탁(4조)

- 금융회사는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단, 업무를 위탁하는 자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위탁 금융회사의 본점·지점 및 계열사로 한정
- 정보처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회사는 수탁회사가 이 규정 등 관계법령 및 표준계약내용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정보주체 및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수탁회사와 연대책임을 규정

— 특정정보의 보호(5조)

- 금융회사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해외 이전을 금지
- 금융회사는 위탁 처리되는 정보의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할 의무가 있음
- 또한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금융감독 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별 고지의무 부여

— 전산설비의 국외위탁(6조)

-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보처리의 위탁과 관련한 설비를 국외의 본점·지점 또는 계열사에 위탁할 수 있음
- 단, 금융이용자의 보호 및 금융감독 목적 달성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관련 설비의 국외위탁을 제한할 수 있음

— 보고(7조)

-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 사실을 동 위탁 계약 체결 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의무

1. 위탁계약서(안) 사본

2.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이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할 '업무위탁 운영기준'

3. 업무위탁 계약이 이 규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  
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의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사본
4. 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5. 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6. 정보처리 업무 운영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가능성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감독 및 검사(8조)

- 위탁 금융회사 및 해당 업무의 수탁회사에게 위탁 운영되는  
정보처리 업무 및 위탁 운영되는 전산설비와 관련하여 금융위  
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자료 제출 등 감독 및 검사를 위한  
요구에 응할 의무 부여

— 재검토기한(9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함

**<표준계약내용>**

1.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권리
  - 가. 제3의 수익자로서 본 계약에 명시된 위·수탁회사의 의무에 대응되는 계약상의 권리
  - 나. 본 계약에 따른 위·수탁회사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 및 권리침해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2. 위탁회사의 의무
  - 가. 위탁의 근거가 된 금융위원회규정 등 국내 관련법령의 준수 및 감독기관과의 사전 협의 의무
  - 나. 정보주체에 대한 금융정보 이전 사실, 이전 대상, 목적 등 중요 사항 고지 의무
  - 다. 정보주체의 금융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 및 정보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 요구에 응할 의무
  - 라.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관계법령의 요구사항 및 금융감독당국의 권고사항의 준수를 보장하는 수탁회사를 선정할 의무
  - 마. 수탁회사가 관련법령의 요구사항 및 금융감독당국의 권고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점검하는 등 감독할 의무
  
3. 수탁회사의 의무
  - 가. 위탁의 근거가 된 금융위원회규정 등 (대한민국) 관련법령의 준수 의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대한민국) 관계법령의 요구사항 및 (대한민국) 감독기관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의무
  - 나. 이전받은 정보는 계약의 목적과 범위내에서만 이용하고,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제3자에의 양도·이전은 금지
  - 다. 이 계약 및 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나 산출물에 대해 제3자에의 누설 또는 제공 금지
  - 라. 전산사고, 정보유출사고, 관계 당국으로부터의 금융정보 공개요구시 위탁회사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마.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위탁회사의 지시 및 위탁회사의 감독기관의 자료요구, 감독·검사 요구 등 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성실한 이행
  - 바. 문서·시설·인원 등에 대한 주기적 보안점검 및 임직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보안 교육
  - 사. 계약 종료시 이전받은 금융정보를 반환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폐기·소거할 의무

**<표준계약내용>(계속)**

- 4. 감독기관에 대한 협조의무
  - 가. 계약서 사본의 감독기관 제출 의무
  - 나. 수탁회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자료 요구 및 감독·검사 요구에 대한 위·수탁회사의 협조 및 성실한 수용의무
  - 다. 양 당사자간 계약 변경시, 위탁회사의 감독기관과의 사전 협의 및 변경사실 통보 의무
  
- 5. 의무위반의 효과
  - 가. 정보주체 및 이용자가 위·수탁회사의 의무위반 또는 정보유출, 전산사고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위·수탁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 특히, 수탁회사의 의무위반 또는 정보유출, 전산사고 등으로 정보주체 및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
  - 나. 수탁회사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업무위탁이 위탁의 근거가 되는 금융위원회의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위탁회사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정보이전 중지 및 계약 해지 가능
  
- 6. 해외 위탁시의 적용 특례
  - 가. 계약서의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된 한글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적 효력 가짐
  - 나. 동 계약 관련 정보주체·이용자와 위·수탁회사간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 및 해석으로 처리 금융이용자와 관련한 사항의 경우에는 금융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 감독기관의 조정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음

## V.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1. 2013/6/25 개정·시행

#### 가. 개정목적

- 신규 제정규정인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나. 개정내용

- 목적 제한(1조)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규 제정규정인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동 규정의 적용 범위를 조정
  - 기존 조문 상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변경



## VI.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 1. 2013/9/17 개정·시행

#### 가. 개정목적

-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존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나. 개정내용

-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시 경미한 소유상황 변동에 대해서는 보고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보고 면제대상이 되는 주권 및 주권이 아닌 특정증권 등의 변동수량 및 취득(처분)금액의 산정방법을 정함(9조의2)
-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 상향(1억원→20억원)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 절차 등을 정비
  - 포상금 지급대상에 일반에 공개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함(37조)
  - 기준금액을 5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편차를 조정, 기여율 산정기준을 정비함(39조, 별표)

- 1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은 기존 절차를 유지하되, 1억원이 넘는 포상금 지급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함(40조의2, 41조)

## Ⅶ.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 1. 2013/9/17 개정·시행

#### 가. 개정목적

- 자본시장법상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도입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부과금액 산정방법 등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나. 개정내용

- 대량보유 등 보고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별표2호)
  - 기준금액: 보고기한일(미보고의 경우) 또는 보고일(허위기재의 경우) 다음 영업일의 시가총액으로 산정
  - 부과금액 산정: 기준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위반에 대한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관련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정비(별표3호)
  -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은 '조사적발'과 '자진보고'의 경우로 분류하고, 세부사항으로 고의 및 과실을 구분하여 판단
    - 자진보고: 대량보유보고를 하였으나 지연보고 등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160 제2편: 금융위원회규정

- 위법행위의 결과는 '사회적 물의야기', '중대', '경미' 등 3단계로 구분하여 판단

## VIII. 전자금융감독규정

### 1. 2013/12/3 개정·시행

#### 가. 개정목적

- 전자금융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sup>34)</sup>에 따라 위임된 감독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3년 7월 발표한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 나. 개정경과<sup>35)</sup>

-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킹 등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7월 발표)의 내용을 반영함
  - 동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11월 27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관보게재 후 시행될 예정임

---

34) 전자금융거래법(2013.11.23 시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2013.11.23 시행)

3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2013.11.27.

### 1) 시행령 위임사항규정

#### □ 상시 종업원 수 산정방식 마련

- 상시 종업원 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기준으로 산정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임원으로 하는 대상범위
  - 시행령: 총자산 2조원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 300명이상
  - CISO를 대표 또는 대표가 지정하는 자로 정할 수 있는 신탁 등 조합과 지역금고의 범위
  - 시행령: 상시 종업원 수 20명 이하인 조합 또는 지역금고

#### □ 임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시행

- CISO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관련, 의무교육시간 등 관련 세부절차를 규정
  - 임원: 3시간 이상/年, 직원: 6시간 이상, 정보보호담당직원: 12시간 이상

#### □ 취약점 분석·평가관련 주기 및 간이 취약점 분석 등

- 분석·평가 주기
  - 1년: 총자산 2조원·상시 종업원 수 300명이상
  - 농협중앙회를 제외한 개별법상 중앙회(수협, 신탁 등) 포함
- 간이 취약점 분석 대상기관
  - 대상기관: 위의 요건 이외의 나머지 대상기관
  - 분석·평가 내용의 완화 및 자체전담반 구성의무면제

- 취약점 분석·평가내용은 금융감독원장이 시행세칙에서 정함
- 취약점 분석·평가 자체전담반 구성
  - CISO(반장) 및 내·외부전문가로 전담반 구성
  - 취약점 분석·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자체전담반 구성의무를 면제

□ 취약점 분석·평가 외부전문기관 지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른 정보공유 분석센터
-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 침해사고대응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 침해사고대응기관: 금융결제원, 코스콤
  - 합동조사단: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대응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침해사고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음
- 업무범위: i) 정보수집·전파를 위한 정보공유체계구축, ii) 침해사고 예보·경보 발령내용의 전파, iii) 침해사고에 확산방지를 위한 필요조치

□ 과징금 환급가산금 적용이율 고시

- 국내은행(국민, 신한, 하나, 농협, 우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산정

## 2) 보안강화 종합대책

### □ 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근거 마련

- 금융회사내에 정보기술보안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근거규정 마련
  - CISO 주관하에 준법감시인, 정보보호업무 관련 부서장 등으로 구성

### □ 금융전산 망분리 의무화

- 모든 금융회사의 전산센터는 2014년말까지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본점·영업점의 경우 단계적으로 추진
  - 본점·영업점의 경우 2015년말까지 분리·차단

### □ 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강화

- ID·비밀번호 이외의 추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 3) 그 밖의 사항

### □ 보안규정 위반에 따른 내부 처벌근거 마련 의무화

- 보안관련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이를 제재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수립하도록 의무화

### □ 국외 사이버몰 결제업무에 대한 전자금융업 등록요건 완화

- 국외 사이버몰에서의 상거래에 대한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등록요건 완화

## 다. 개정내용

### □ 상시 종업원 수 산정기준 마련(6조의2)

- 임원으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해야 하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 및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로 CISO를 정할 수 있는 신탁 등 조합과 지역금고의 범위와 관련하여 상시 종업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로 함

### □ 보안규정 위반에 따른 내부 처벌근거 마련(8조)

- 최고경영자(CEO)로 하여금 임직원이 정보보안 관련법규를 위반할 경우 내부적인 제재를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함

### □ 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근거 마련(8조의2)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내부조직 안에 정보기술보안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 □ 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강화(14조)

-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ID, 비밀번호 이외의 추가 인증절차를 의무화하고,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금융전산 망분리(15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해킹 등 전산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전산센터 등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함

□ 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시행(19조의2)

- 금융회사 등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관련, 의무교육 시간 등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

□ 취약점 분석·평가의 세부절차(37조의2~3)

- 취약점 분석·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취약점 분석·평가를 위한 자체전담반의 구성방법 등 세부절차를 정함

□ 침해사고대응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37조의4)

- 침해사고대응기관은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으로 정하고, 동 기관의 업무범위를 정보수집 및 전파를 위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등으로 정함

□ 국외 사이버몰 결제업무에 대한 전자금융업 등록요건 완화(50조)

- 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에서 상거래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함

□ 과징금 환급가산금 적용이율 고시(72조의2)

- 법령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과오납에 대한 환급가산금 적용이율을 명시적으로 고시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부칙

- 고시한 날부터 시행

- 단, 15조 1항 3호의 규정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그 외의 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항 5호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IX.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 1. 2013/5/10 개정·7/1 시행

#### 가. 개정목적

-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 체제를 정비하여 적극적·선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 향상

#### 나. 개정경과<sup>36)</sup>

- 2006년 9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모범규준을 제정
  -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
  -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형성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대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할 필요성 증대

---

3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회사내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2013.5.9)

## 다. 개정내용

### 1)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governance) 강화

####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지정

- 소비자보호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독립적 지위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hief Consumer Officer: CCO)를 지정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의사결정이 전사적 시각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선임임원 중에서 CCO를 지정하고 업무상 독립성 보장
  - 단, 자산규모 등의 이유로 선임임원을 지정하기에 곤란한 경우 준법감시인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직무 수행 가능

#### □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 설치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이슈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협회를 설치
  - CCO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관련 임원 및 부서장 참여

#### □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인력에 대한 성과체계 개편

- 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에 대해 영업부서와 별도의 공정한 업무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장기근무 시 희망부서 우선 배치
- 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에게 교육·연수 등 보상을 강화하고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상 가점 부여
  - 민원발생건수 증가 또는 민원평가의 하락은 해당 민원발생의 책임이 있는 담당자 또는 부서의 보상에 반영

## 2) 금융상품의 단계별 소비자 보호 체계구축

- 개발단계: 제조단계부터 소비자 불만예방 및 권익 제고
  - 신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 시 주관 부서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간 사전협의를 의무화
    - 소비자권익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에 신상품출시 및 마케팅 중단 등 요구 가능
  - 새로운 금융상품의 약관 등의 심사 시에 적용되는 「금융소비자보호 체크리스트」를 마련 →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 사전점검
  
- 판매단계: 충실한 금융상품의 정보 제공 프로세스 구축
  - 판매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금융회사 자체 행위준칙(신의성실의 원칙, 적합성 원칙 등)을 마련
  -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 및 마케팅 부서가 금융상품 판매 전·후에 지켜야 하는 판매프로세스를 구축
    - 상품판매 전: 금융상품 판매자에 대한 교육훈련, 상품별 판매 자격 기준을 마련
    - 상품판매 후: SMS, e-mail 등을 통해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사후관리단계: 효과적인 민원처리와 업무관행 개선
  - 소비자불만 또는 불편사항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민원을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민원 feedback 시스템을 구축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충실여부를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평가도구를 마련하고 실제 평가를 총괄



## 제3편: 한국거래소규정

---

- I. 유가증권시장규정
- II. 코스닥시장규정
- III. 코넥스시장규정
- IV. 파생상품시장규정
- V. 장외파생상품청산업무규정
- VI. 시장감시규정



# 제3편 한국거래소규정

## I. 유가증권시장규정

###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가. 2013/12/11 개정 · 2014/1/2시행

#### 1) 개정목적

- 공매도에 따른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주문수탁 시 사전확인 체계를 강화하며 결제불이행자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ETF 시장 활성화 및 저유동성 종목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유동성공급자 지원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제도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대해 상장법인과 계약을 맺은 증권회사(LP)가 지속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하여 안정적인 주가형성을 유도하는 제도로 상장기업과 유동성공급계약을 맺은 LP는 당해 종목을 호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호가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상장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LP는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상장기업의 주식을 채고로 보유하면서 자기계산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출하여 호가스프레드를 축소함으로써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함

## 2) 개정내용

### □ 공매도 미실행 확약제도 개선(17조 4항)

- 기존은 공매도 거래를 하지 않는 투자자(국내 펀드 등)의 거래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매도 미실행 확약제도를 도입('09.4)해 시행하고 있었음
  - 공매도 미실행 확약을 하고 전산조치한 경우 매도주문수탁시 공매도 여부 등 확인절차를 면제
  - 그러나 미실행 확약 후 위탁자 착오 등으로 보유주식 이상을 매도(무차입공매도)하는 경우 등에도 사전확인 의무를 계속 면제
- 개정 후에는 공매도가 발생하는 등 확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확인 의무를 재부과하고 일정기간(90일간) 확약제도 이용 제한

### □ 결제불이행 시 매도증권 사전납부 조치대상 확대 등(89조 2항)

- 기존은 결제일에 결제불이행한 위탁자에 대해 익일부터 일정기간 주문수탁시 위탁증거금 100% 징수
  - (매도증권 미납부) 90일간, (매수대금 미납부) 30일간
  - 회원이 위탁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배제가 가능하여, 대부분 이를 근거로 위탁증거금 100% 징수 회피
- 개정으로 위탁자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위탁자의 과실 여부 등 판단을 위한 객관적 기준 근거 마련

### □ ETF 유동성공급자(LP) 지원제도 개선(20조의7)

- 기존은 유동성공급자(LP) 자신이 거래소에 납부한 거래수수료 범위 내에서 시장기여도 만큼 돌려받는 구조로 인센티브 효과가 제한적

- 지원금 = 기준금액(해당 LP가 납부한 거래수수료) × 시장기여도
- 시장기여도(유동성공급 노력의 정도) 보다는 위탁매매 규모가 클수록 유리
- 개정 후에는 LP들이 납부한 거래수수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Pool)을 LP의 시장기여도 비중에 따라 지원금 지급
  - 지원금 = 기준금액Pool(LP들이 납부한 총 거래수수료) × 시장기여도 비중

□ 그 밖의 조문정비(39조, 79조, 80조)

- 자기주식 매매 근거조문 개정('13.5.4)사항 반영

##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가. 2013/4/25 개정 · 4/29 시행

#### 1) 개정목적

- 단기과열종목지정제도<sup>37)</sup> 중 투자자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발동 및 해제 요건 등을 일부 개선하고 단기과열종목, 정리매매종목 등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단일가매매를 하는 경우 자기주식매매 가격제한 기준을 명확화

---

37) 2012년 11월 5일 시행

## 2) 개정내용

### □ 자기주식매매 시 가격제한 기준 명확화(제57조)

-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단일가매매를 하는 경우 자기주식매매 가격제한 기준을 명확화
  -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자기주식매매 시 '최우선매수(매도)호가'를 기준으로 호가가격을 제한하나, 단일가매매시 '최우선매수(매도)호가'의 정의가 불명확
- 단일가매매에서는 실제 매매거래가 아닌 가체결 상태의 호가상태를 보여줌
  - 따라서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최우선매수(매도)호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체결된 것을 가정한 상태의 예상최우선매수(매도)호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불명확
- 이에 '최우선매수(매도)호가'를 '예상최우선매수(매도)호가'로 변경

### □ 주가 안정화 시 지정예고 및 지정제한(제133조 1항, 제133조의2 1항)

- 주가가 하락·안정화 추세로 전환된 종목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투자자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지정(지정예고) 여부 판단일의 종가가 전일종가 및 지정예고(최초적출) 판단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지정(지정예고)하도록 개선

### □ 시장경보제도와 지정 중복 최소화(제133조의2의 4항 5호)

- 단기과열 기준 및 시장경보 기준에 의한 적출 중복 최소화를 위해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 종목은 단기과열요건 적출대상에서 제외

- 투자경고(위험)종목으로 지정중인 종목은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요청을 한 경우에만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 지정해제 연기기간 축소(제134조 1항~2항)

- 계속·반복적인 지정해제 연기에 따른 투자자혼란 및 정상적인 주가상승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제연기 기간 축소
  - 기존 1일씩 최대 10일을 1회에 한해 3일로 개선
  - 134조 2항의 개정세칙 적용 시 세칙 시행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세칙 시행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그 지정을 해제함

**나. 2013/12/18 개정 · 2014/1/2시행**

**1) 개정목적**

- 공매도 제도 및 ETF 유동성공급자(LP) 지원금 지급제도 개선과 관련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 개정(2013.12.11)됨에 따라, 시행세칙으로 위임된 미수동결계좌 적용예외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결제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ETF 유동성공급자(LP) 지원금 지급기준을 변경하기 위함
- 회원시스템 장애 판단에 대한 거래소의 재량권한을 신설하여 시장상황별 탄력적 대응 및 투자자 보호 수단을 마련하고 그 밖에 업무규정 등 실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2) 개정내용

### □ 미수동결제좌 적용예외 운영 기준 신설(122조, 28조의2 4항)

- 기존은 위반일수 및 금액 등에 상관없이 회원이 위탁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수동결제좌 지정 적용예외
- 개정 후는 위반일수 및 금액 등을 감안하여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위탁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미수동결제좌 지정 적용
  -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 5일 이상 & 누적 결제부족금액 10억원 초과
- 미수동결제좌 지정으로 90일간 위탁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매도 호가의 사후관리는 미적용

### □ 결제부족 수량 확인방법 등 공매도 사후관리의 편의성 제고(28조의2 2항 후단)

- 기존에는 회원은 위탁자의 보유잔고가 결제수량보다 부족한 경우 차입계약서 등을 징구받아 공매도 여부를 확인·기록할 의무가 있었음
  - 결제일 12시까지 보관기관 등으로부터 결제부족 현황을 통보 받아야 하며, 해당 통보는 거래소가 지정한 별지 서석에 의하여야 함
- 개정 후는 보관기관 등이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정보통신망(SAFE+)을 이용하여 미결제현황을 회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선

□ ETF 유동성공급자 지원금 지급기준 변경(31조의11 1항)

- 기존은 유동성공급자(LP) 자신이 거래소에 납부한 거래수수료 범위 이내에서 평가점수에 상당한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지원
  - 인센티브 효과가 제한적
- 개정 후는 저유동성종목의 유동성 개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LP들이 납부한 거래수수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점수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

□ 회원시스템 장애 적용을 위한 재량권한 신설(8조 2항 1호)

- 기존은 회원시스템 장애 적용을 위한 계량적 기준(75%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관련 시장조치 적용 불가
  - 호가접수정지·매매거래중단(세칙 42조 1항, 4항), 매매거래시간 변경(세칙 8조 3항, 5항), 장애미복구시 매매종료(세칙 42조 2항)
- 개정 후는 회원시스템 장애 적용을 위한 계량적 기준(75%이상)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거래소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시 장애관련 시장조치 적용 가능
  - 코스닥시장에서 회원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회원의 주식거래량의 합계가 코스닥시장 전체의 주식거래량의 75% 이상인 경우 등

□ 주문입력매체 식별정보 추가(12조 1항 27호)

- 기존은 주문입력매체 식별번호로 아이피(IP) 주소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IP 등의 효용성이 저하되어 새로운 주문입력매체 식별정보 필요
  - 유동 IP 및 IP 위·변조 증가에 따라 IP정보의 신뢰성 저하

- 개정 후는 주문입력매체 식별정보로 유용성이 높은 MAC 주소를 호가입력사항으로 추가

###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가. 2013/2/22 개정 · 시행

##### 1) 개정목적

- 기업의 증권시장 진입 관련 부담을 완화하여 자금 조달 기능을 활성화 및 시장별 정체성 강화를 도모
  - 최대주주 변경 제한을 질적심사로 전환하고, 글로벌 우량기업에 대한 특례 등을 마련하여 외국기업 상장제도를 개선
  - 유가증권시장의 진입 재무요건을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 시켜 시장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함
- 상장규정을 상품별 규정체계로 변경하고, 규정 · 세칙 간 범위 조정 및 용어 순화 등으로 투자자의 이해편의성을 제고하고 ETF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상품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진입 · 퇴출기준을 개선하여 시장 건전성을 향상

## 2) 개정내용

## 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 진입 재무요건의 현실화(29조 1항 2호·4호, 42조 1항 1호·3호, 2항 2호, 4항 4호, 68조, 76조)

- 기업규모·경영성과 관련 진입 재무요건을 환경변화에 맞게 현실화 및 시장별 정체성 강화를 위해 조정
  - 그동안의 경제성장(요건이 상향된 2000년 대비 코스피시장 평균 자기자본 3배↑, 매출액 2배↑)을 감안하여 조정하되, 매출액은 코스닥시장과의 기능 분배를 고려하여 3.3배 상향
  - 기업규모의 자기자본 요건을 100억 → 300억(3배), 경영성과의 매출액 요건을 300억 → 1,000억(3.3배, 3년평균 700억)으로 상향
- 또한, 경영성과의 이익액 요건을 25억 → 30억(3년 합계 60억)으로 상향하고, '매출액과 시가총액' 요건은 각각 4배로 상향
  - 다만 분할재상장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현행 수준 유지
- 상장요건 단순화를 위해 기업규모의 '시가총액' 요건과 경영성과의 '매출액 & 시총 & 현금흐름' 요건 삭제

<진입 재무요건 변경 내용>

(기업규모 요건)

현행(택1)		→	개정
① 자기자본	100억	→	300억(3배 ↑)
② 시가총액	200억	→	삭제

(경영성과 요건)

현행(택1)		→	개정(택1)
① 매출액	300억 (3년 평균 200억)	→	1,000억(3.3배 ↑) (평균 700억)
이익(택일)		→	(현행 유지)
i) ROE	5%(3년 합계 10%)	→	30억(3년 합계 60억)
ii) 이익액	25억(3년 합계 50억)	→	
② 매출액	500억	→	2,000억(4배 ↑)
시가총액	1,000억	→	4,000억(4배 ↑)
③ 매출액 700억, 시가총액 500억, 영업현금흐름 20억			삭제

□ 외국기업 상장 활성화(13조 4항, 22조 4항, 53조 2항, 77조 3항, 78조 3항)

— 법제·회계환경 등을 고려 적격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에 대해 탄력적인 진입기준(상장특례) 도입

□ (적격시장) 현행 적격시장(NYSE Euronext, NASDAQ, TSE, LSE, DB, HKEX, SGX) 범위에 ASX(호주)와 TSX(캐나다)\*를 포함  
 \* WFE 시총이 각각 7·9위로 한국(12위) 보다 상위이고 홍콩 적격국가 및 대만 적격시장에 해당, OECD 회원국, 선진국지수 해당, 내부 회계관리제도 도입

— (상장주선인 투자 의무 개선) 적격시장에 상장(3년)된 외국기업 상장주선인의 투자 의무를 면제

- 법제 및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어 회계부실 우려기업에 대한 투자 의무 부과 실효성은 미약한 반면, 상장주선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 보완
- 또한, 일반 외국기업의 경우에도 현행 투자 의무 수준(10%)을 상장에 따른 이익수준인 인수수수료율 수준(5%)으로 완화
- 과도한 규제수준에 따른 부담 논란, 중소형 IB의 진입 제한 등을 고려

— (지배구조요건 합리화) 적격시장에 상장(3년)된 외국기업은 본국 지배구조 기준을 인정하되 최소한의 요건만 규정

-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나 감사위원회 설치(감사위원회 설치시 3인 이상의 이사, 과반수 사외이사, 회계/재무전문가 포함, 사외이사가 대표)

— (글로벌 우량기업 특례) 적격시장에 상장(5년)되어 있는 글로벌 우량기업의 2차 상장에 대한 특례 마련

- 글로벌 우량기업은 상장경력, 기업규모, 경영성과가 매우 우수한 기업
- 글로벌 우량기업은 형식요건만 심사하고 질적심사 및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면제(심사기간 단축)

□ 최대주주 변경제한 요건 질적심사(29조 1항, 30조, 36조, 53조, 76조)

— 최대주주 변경제한 요건을 형식요건에서 질적심사 요건(경영 안정성 심사)으로 변경하여 상장편의성 도모

- 기존에 상장 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 제한

— 지분 지배 당사자 간의 관계, 지분구조의 변동내용 등을 고려하여 경영권의 실질적 변동이 없는 지에 대해 질적심사

- (예시) 공동 최대주주의 증감에도 불구하고 잔여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주주 변경에서 제외 가능
- 심사 건별로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적용함으로써 합리적인 상장요건 적용 가능

□ 주식분산요건 합리화(2조 1항 12호, 29조 1항 3호, 42조 1항, 47조 1항 4호, 48조 1항 4호, 57조, 58조, 71조, 72조)

- 상장기업의 주식분산과 관련한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진입 및 퇴출 시 분산요건을 합리화
- 소액주주를 기준(25% 및 1,000명)으로 설정하고 있는 분산요건을 일반주주 개념으로 확대
  - 일반주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주요주주를 제외한 주주
- 일반주주 주식수 요건(진입은 공모주식수 포함)에 분산비율(진입 25%, 퇴출 10%) 뿐만 아니라 분산주식수도 인정
  - 진입은 500만주, 퇴출은 200만주 이상으로서 기업규모별로 세칙으로 정한 주식수 이상인 경우 비율 미달시에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나) 상장규정 체계개편

□ 상장규정 조문체계 변경(상품별 규정 체계로 변경)

- 투자자 이해 편의를 위해 상품군(주권, 채무증권,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4개)별로 상장 및 퇴출요건, 상장법인 관리 등 각각 규정

□ 규정·세칙 간 규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 규정 중에서 첨부서류 목록 등의 세부적·기술적 사항을 세칙으로 이관하되, 새로운 의무 부과는 규정에 근거 마련

**<규정·세칙 간 조정 개요>**

구분	내용
규정 → 세칙	상장심사서류 목록(\$7, \$26, \$34, \$39, \$52, \$67, \$74, \$124)
	상장요건 적용 방법(주주수 확인서류, 월평균거래량 등) (\$29①iii, \$42, \$47, \$48, \$53, \$57, \$58, \$61, \$68)
세칙 → 규정	우회상장 통보 및 예비심사 신청 의무(\$33)
	ELW 발행조건 변경시 준수사항 부과 근거(\$143)
	상장법인 관리종목지정 등 예고 근거(\$154, \$155)
	보호예수주식 인출 근거(\$159)
	업종분류 근거(\$161)

□ 투자자 및 업계의 상장규정 이해 편의성 제고

- 준용규정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준용시 해당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여 조문내용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함
- 어려운 용어, 일본식 표현 등 규정표현을 순화하고 지나치게 길고 복잡하게 기술된 조문 단순화
  - 복잡한 조문을 하부 호·목·세목 등으로 분리하여 조문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상장규정 용어 정의 정비

<상장규정 용어 정의 정비>

기존	개정
주권 * 국내기업 주권 (스팩, 투자회사주권 등 포함)	보통주권 * 국내기업 일반주권(스팩, 투자회사주권 등 제외)
	주권 * 국내/국외기업이 발행한 주권형태의 증권 통칭
외국주권	외국보통주권
외국주권과 외국주식예탁증권	외국주권등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상장법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펀드(약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펀드증권(약칭)

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의 명칭변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변경(49조)

— 용어에 ‘폐지’가 포함되어 사유 발생시 상장폐지 되는 것으로 오해함에 따라 불필요한 시장충격 유발

-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변경

라) 합성 ETF 도입근거 마련

(1) 진입기준

거래상대방 자격요건(113조 1항 5.가)

— 재무안정성 등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위험을 최소화

- 장외파생상품 매매업 인가, 등급 AA- 이상, NCR 250% 이상, 독립성 등

□ 거래상대방 위험관리(113조 1항 5.나)

— 거래상대방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세부 기준은 세칙 위임

□ 담보 관리(13조 1항 5.다)

—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적절한 담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유동성·시가평가 용이성 등 담보자산 요건 및 담보자산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세칙으로 위임

□ 그 밖의 편입자산(113조 1항 5.라)

— 장외파생상품 외의 편입자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이 유동성, 시가평가 용이성 등 세칙이 정하는 요건 충족할 것

(2) 퇴출 기준

□ 거래상대방 위험과 관련하여 상품 계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상장폐지 사유로 명시(116조 1항 5)

— 장외파생상품 매매업 인가 취소, 등급 미달, NCR 미달, 부도, 그 밖의 장외파생상품 계약종료 사유 발생 등

(3) 공시기준

- 거래상대방의 위험평가액, 등급 변경 등 거래상대방 관련 중요사항 발생 시 적시 공시하도록 하고, 세부기준은 세칙으로 위임(117조 1항 3)

마) ETF 진입·퇴출기준 강화

- 최소 규모요건 강화(113조 1항 1, 119조 1항 1)
  - ETF 신규상장 시 최소 신탁원본액 규모를 50억원 → 70억원으로 증액하여 소규모 ETF의 신규 상장을 제한
- 질적 요건에 대한 상장심사 강화(113조 2항)
  - 상품구조, 기초자산 등과 관련하여 ETF의 적법성 및 계속성, 상장신청인의 투명성 등 질적 요소에 대한 상장심사 근거 마련
- 소규모·저유동성 ETF 관리제도 신설(115조, 121조)
  - 소규모·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일정 규모 및 유동성 요건 해당 여부를 6개월 단위로 확인
    - 신탁원본액 50억원 미만 또는 일평균거래대금 500만원 미만
  - 위 요건에 지속적으로 해당하는 소규모·저유동성 ETF에 대해서는 『① 관리종목 지정 우려 통보 ⇒ ② 관리종목 지정 ⇒ ③ 상장 폐지』 하는 3단계 관리제도 신설

□ 거래소규정으로 상장폐지기준 일원화(116조 1항 1~2)

- 법 시행령<sup>38)</sup>에서 금융투자업규정에 위임했던 상장폐지기준을 거래소규정으로 이관
  - 1) 추적오차율 10% 초과, 2) 기초지수 산정 또는 이용 불가 시 상장폐지
  - 추적오차율(10%) 초과 기준은 국제정합성을 고려하여 ETF 순자산가치와 기초지수 변동률간 상관계수 기준으로 대체
  - ETF 순자산가치 변동률과 기초지수 변동률간 상관계수가 0.9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가. 2013/5/13 개정 · 5/20 시행

###### 1) 개정목적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보호예수 제출시기 개선, 관리종목 지정 등 제도개선사항을 세칙에 반영하고, 세칙 규정체계를 개선

---

38) 영 §250②, 2012.6.29 삭제

## 2) 개정내용

### 가) 제도개선사항

- 주식 수 기준 분산요건<sup>39)</sup>의 세부기준 마련(23조 2항, 42조 1항)
  - 진입 시에는 최소 유동비율 확보를 위해 상장주식수 규모를 기준으로 상향 설정하되, 퇴출 시에는 2백만주 유지
    - 진입시 상장주식수가 5천만주 초과 기업은 퇴출기준인 상장주식 수의 10%(예: 상장주식수 1억주는 1천만주) 해당 수량으로 상향 조정
  
- 보호예수 서류 제출시기 및 제출방법 개선(별표2)
  - 보호예수증명서를 예비심사 승인 통보일부터 3일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매각금지에 대한 확약 서류를 '계속보유 확약서'로 일원화
    - 보호예수증명서를 예비심사 신청 시 제출하여 예비심사 불승인 법인도 보호예수하는 문제 방지
  
- 관리종목 지정 시점 변경(별표7)
  - 자본잠식 및 매출액 미달(50억) 사유에 따른 관리종목지정을 현행 사업보고서 제출시점에서 감사보고서 제출시점으로 변경

---

39) 분산비율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일정 수량(진입 500만주, 퇴출 200만주 이상에서 세척으로 정한 수량) 이상시 충족으로 간주

□ 외국기업의 감사인 확인서 제출부담 완화(별표1)

- 적격 외국기업에 대한 제출면제 근거 마련 및 불가피한 경우 국내 회계법인을 통한 제출 허용
  - 적격시장 소재 국가 중 주요국(미국, 일본, 홍콩, 호주 등)에 설립된 외국기업

구분	기존	개정
적격 외국기업		제출면제
그 외 외국기업	감사인 확인서 제출	감사인 확인서 제출 단, 불가피한 경우 국내 회계법인(제휴 회계법인)제출 허용 및 일부항목 제외

□ 적격해외증권시장 추가(10조)

- 적격해외증권시장에 ASX(호주), TSX(캐나다)를 추가
  - 기존 7개 시장: NYSE Euronext, NASDAQ, TSE, LSE, DB, HKEx, SGX

□ 일반재상장 기준시가총액 산출방법 개선(14조)

- 예비심사 신청 후에 공모하지 않는 일반재상장의 경우 업무규정상 평가가격을 준용하여 산출

□ 종류주권 상장시 보호예수 의무 합리화(57조 2항)

- 분할재상장 또는 합병재상장과 관련한 종류주권의 신규상장 시에는 보호예수 서류 제출 면제

나) 합성 상장지수펀드(합성 ETF) 도입 관련 세부 위임사항

□ 거래상대방 신용등급 기준(92조 1항)

- 상장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복수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받은 최근의 등급으로서 일정 신용등급 이상일 것
  - 국내 평가회사: AA-
  - 외국 평가회사: A-(S&P, Fitch) · A3(Moody's)

□ 거래상대방 위험관리체계 세부기준(92조 2항)

- 위험평가 방법: 금융투자업규정(4-54조)에 따라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을 매일 산출
  - 장외파생상품의 가치평가는 법 제263조에 따른 복수의 채권평가회사를 통할 것
  - 금융위 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전문인력 보유, 가격평가체계 ·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의 요건을 갖춘 회사(현재 국내 4개사 등록)
- 위험관리 방법: 위험평가액이 장외파생상품계약에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순자산총액의 5% 이하로 유지
  - 상장 이후에도 거래상대방 요건 및 위험평가액 등을 상시 파악하고 공표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함
  - 국제스왑파생금융협회(ISDA)에서 정한 장외파생상품계약서 표준을 준수하고 기본계약의 체결이 있을 것

□ 장외파생상품 담보관리체계 세부기준(92조 3항)

- 담보자산 요건: 유동성 및 환금성이 확보되고 매일 평가가 용이하며, 담보권의 적시 행사가 가능할 것 등 요건을 갖출 것

- 담보인정비율: 자산별 담보인정비율 상한을 명시
    - 현금 100%, 국채·지방채증권 등 95%, 그 밖의 상장 사채권 85%, 상장주권 등 80% 등
  - 담보유지비율: 위험평가액이 순자산총액의 5% 이내가 되도록 담보자산가치를 유지할 것
    - 단, 장외파생상품계약이 자금 공여를 수반하는 때에는 담보 상계 전 거래상대방 부도 등에 따른 최대손실추정금액 대비 담보자산가치의 비율을 95% 이상으로 유지
  - 담보자산 관리: 담보의 정산·추가·해지와 담보 제공 불이행시 조치 및 담보권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처리 기준 및 절차를 갖출 것
  - 담보자산 보관·평가기관: 담보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전산설비를 갖추고, 담보자산의 가치평가 기준이 명확하며 자본 규모, 업력, 이용 고객 수 등에 비추어 공신력이 인정될 것
- 장외파생상품 외의 편입자산 세부요건 명시(92조 4항)
- 장외파생상품 외 편입자산도 적정 담보자산 요건을 갖출 것
- 거래상대방 관련 세부 공시사항 명시(96조 1항)
- 일일공시: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및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을 매일 공시하도록 의무화
  - 수시공시: 거래상대방 변경·추가·해지, 신용등급 및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의 변경·미달·해소,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 장외파생상품 평가기관 변경, 담보자산의 보관·평가기관의 변경, 장외파생상품계약상 변경시 공시의무 부과

- 예정일 45일 전 신고, 해당 거래상대방은 규정상 거래상대방 요건 충족 필요

□ 합성 ETF 상장폐지 유예기준 명시(95조 2항)

- 장외파생상품계약의 연장, 거래상대방 변경 등 단기간에 해당 폐지 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경우로 유예 조건을 한정하고, 유예기간은 45일 이내로 명시

다) 상장지수펀드(ETF) 진입·퇴출요건 관련 세부기준 규정

□ 소규모 ETF 관리종목 지정 관련 세부 기준(94조)

- 일평균거래대금 산출기준: 해당 반기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의 거래대금 합계를 해당 증권의 매매일수로 나누어 산출
- 관리종목 해제기준: 지정일이 속한 반기말 기준으로 해당 관리종목 지정사유(50억, 500만원)가 해소된 경우
-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매 반기의 최초 매매거래일

□ ETF 상관계수 산출방법 명시(95조 1항)

- 최근 1년간 주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기초지수의 일간변동률의 공분산을 두 값의 표준편차를 곱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
  - 지수를 음의 배율로 추적하는 경우, 외국환 노출의 경우, ETF 분배금·기초자산 이자 지급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산출

□ ETF 상장심사 관련 제출서류 근거 마련(91조 2항)

- 신규상장 신청 전 상장심사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여 질적심사 등 상장적합성 심사 강화

□ 상장지수펀드(ETF) 자산구성내역 오류시 신고의무 규정(96조 2항)

- ETF 자산구성의 투명성 제고 및 시장에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자산구성내역 오류 발생 시 정정 신고의무를 신설
  - 자산구성내역 오류 발생 시 및 오류 해소 시 지체 없이 신고

□ ETF 상장심사 수수료 도입(별표10)

- ETF 상장심사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신중한 상장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ETF에 대해 상장심사 수수료 신설
  - 상장심사 관련 서류 제출 일까지 종목당 500만원 부과

□ 세칙 규정체계 개선

- 상품별 체계로 개편: 상장규정이 상품별 규정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세칙도 상품별 규정체계로 변경
- 세칙과 실질심사지침 간 규제범위 조정: 모든 실질심사 사유에 대해 대상 판단기준, 폐지여부 결정기간은 세칙으로 일원화하고, 심의기준 및 서류제출 사항은 지침으로 일원화

구분	기존	개정	비고
대상 판단기준	세척 (일부지침)	세척	실질심사 대상 선정 기준으로 세척규정 필요
폐지여부 결정 기간	세척·지침		
상장적격성 심의기준	세척·지침	지침	심의기준, 제출서류는 실무 담당 부서인 공시부가 필요 시 지침 개정을 통해 대응할 필요
심사서류 제출			

- 기술적·열거적 사항 별표 이관: 상품별 및 상장유형(신규, 추가, 우회 등)별로 서류목록과 관리종목지정·해제시기를 별표에서 별도로 규정

구분	별표 신설 내용
별표1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류
별표2	보호예수 관련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별표3	신규상장 신청 서류
별표4	재상장 신청 서류
별표5	추가상장 신청 서류
별표6	변경상장 신청 서류
별표7	관리종목지정·해제 시기

- 서식체계 개편: 상장심사 서식을 세척에서 분리해 내부 상장서식으로 관리
  - 예비심사·상장신청 22개 서식
  - 기존 세척상 서식인 '정관 필수 기재사항'은 별표로 이관

나. 2013/6/18 개정 · 7/1 시행

1) 개정목적

- 주식 워런트 증권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식 워런트 증권 상장 법인의 상장수수료의 부담 완화

2) 개정내용

- 주식 워런트 증권의 상품특성, 시장상황, 유관기관 동향을 고려해 신규 및 추가 상장 시 수수료율을 평균 50% 수준으로 인하(별표10)
  - 주권 등과 달리 만기가 있고, 기간도 단기(통상 6개월 이내)
  - 2012년 3월 LP호가 제한 시행 이후 거래규모 급감에 따른 ELW 매출규모도 감소하는 등 증권회사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2013년 5월 금융위의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 방안”에 포함되어 50% 수준 인하 언급
  - 예탁결제원은 2012년 5월 예탁수수료를 50% 인하하였으며 금감원은 발행분담금 인하 예정
  - 상장수수료 부과기준이 되는 상장금액 구간도 실제 상장 현황에 맞게 조정
    - 현재 발행이 없는 1,000억원이상 구간은 세분화하지 않고 단일 구간으로 설정
    - 종래 8단계에서 6단계로 변경
    - 또한 수수료 산정의 편의성 및 명확성 제고를 위해 주권 등과 동일하게 구간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상장금액에 대한 상장수수료를 종래 정률에서 정액(10억원)으로 부과

**<주식 워런트 증권 상장수수료 부과기준>**

기존		개정	
상장금액 (이상~미만)	수수료율	상장금액 (이상~미만)	수수료율
10억원~20억원	3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025%	10억원 ~20억원	20만원
20억원~50억원	55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0.0183%	20억원~50억원	31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9만원
50억원~100억원	110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0.016%	50억원~100억원	58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8만원
100억원~500억원	190만원 + 100억원 초과금액의 0.015%	100억원~500억원	98만원 + 1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7만원
500억원~1,000억원	790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의 0.004%	500억원~1,000억원	378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3만원
1,000억원~5,000억원	990만원 + 1,000억원 초과금액의 0.003%	1,000억원 이상	528만원 + 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만원
5,000억원~1조원	2,190만원 + 5,000억원 초과금액의 0.002%	-	-
1조원 이상	3,190만원 + 1조원 초과금액의 0.001%	-	-

다. 2013/9/13 개정 · 9/16 시행

1) 개정목적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기업 중 그 훼손 정도가 미미한 기업을 실질심사에서 조기 배제하여 시장충격 최소화 및 실질심사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우회상장 효과가 없는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을 우회상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상장 관련 제도를 개선

2) 개정내용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개선(50조의2)
  -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제외유형 명확화
    - 동일 원인이 복수의 심사 사유를 구성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검토된 사유가 사후적으로 확인된 경우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완료한 사유와 동일한 원인행위로부터 기인된 사유로 재차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유발생 후 회생절차종결, M&A(분할, 영업 양도), 장기간(5년) 경과로 기업실체가 변경된 경우
  - 기존은 실질심사 사유 발생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본심사) 대상 여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
    - 심사의 비효율성을 초래
    - 과거 상장적격성 판단이 완료된 사안, 기업실체 변경으로 해당 사유가 치유된 경우도 장기간 심사여부 판단

□ 우회상장 심사 대상 합리화(28조 1항)

- 완전 모자회사 간 합병은 실질적으로 경영권이 변경되지 않고, 재무내용에 변화가 없으므로 우회상장 대상에서 제외
  - K-IFRS 도입으로 자회사의 재무내용이 모회사에 포함되어 작성
- 기존은 상장법인이 완전자회사를 합병하여 실질적으로 우회상장 효과가 없는 경우에도 우회상장으로 보는 문제 존재
  - 합병 후 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면 우회상장으로 보는데 이를 형식적으로 비교
  - 합병 후 상장법인(A)의 최대주주등(甲)이 소유한 주식과 비상장법인(B)의 최대주주등(A+甲)이 소유한 상장법인(A)의 상장주식수가 동일하게 되면 상장규정상 우회상장에 해당

라. 2013/11/19 개정 · 12/2 시행

1) 개정목적

- ETF가격과 순자산가치(NAV)간 괴리율이 확대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고의무를 도입

2) 개정내용

- ETF가격과 순자산가치(NAV) 간 괴리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자산운용사가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화(96조 2항 9호)
  - 괴리율이 국내지수 ETF는 1%, 해외지수 ETF는 2% 이상인 경우로 신고기준도 명확화

- 해외지수 ETF는 기초자산 헤지거래 비용, 환헤지비용, 시차 등 영향으로 국내지수 ETF에 비해 괴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

- 괴리율: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괴리율  

$$\text{괴리율} = [(\text{종가} - \text{좌수} \text{ 또는 } \text{주수당 순자산가치}) / \text{좌수} \text{ 또는 } \text{주수당 순자산가치}] \times 100$$
- 국내지수 ETF: 국내 기초자산만을 추적하는 ETF
- 해외지수 ETF: 해외 기초자산을 추적하는 ETF

## 5.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가. 2013/2/22 개정 · 3/4 시행

### 1) 개정목적

- 유가증권시장 공시제도 운영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인 사후심사 중심 공시관리, K-IFRS 도입 관련 수시공시 제도개선 및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강화

2) 개정경과<sup>40)</sup>

- 금융위원회는 2012. 11.28(수)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연결재무제표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5개 기준서와 연차유급휴가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 사항을 확정하였음
  - 동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과 증권선물위원회 보고를 거침

<K-IFRS 주요 제·개정 내용>

기준번호	제목	구분	주요 내용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정	현행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연결부분과 제2012호(연결: 특수목적기업)를 하나의 기준서로 통합하고 다양한 지침 및 사례 제시
제1111호	공동약정	제정	조인트 벤처(공동지배 사업·자산·기업)의 명칭을 공동약정(공동기업·공동영업)으로 변경. 공동기업은 지분법만 허용하고 공동영업은 직접 소유한 것과 같이 처리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제정	제1110호 등에 언급된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약정에 관한 공시사항을 일괄하여 규정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	연결부분을 제1110호로 이관하고 별도재무제표에 관한 기준 및 관련 공시사항만 유지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공동기업에 대해 지분법만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관계기업뿐 아니라 공동기업도 대상에 포함
경과규정	제1110호, 제1111호, 제1112호 경과규정	개정	개정기준의 소급적용이 최소화되도록 경과규정 내용을 명시하여 기업의 부담완화

4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연결재무제표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 제·개정, 2012.11.28.

가) 연결재무제표

□ 연결 판단기준 일원화

- 기존은 피투자기업의 형태에 따라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연결기준과 특수목적기업에만 적용되는 추가적인 연결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50% 이하이더라도 법규나 약정에 따라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배력을 보유한 경우 연결
  - 특수목적기업(SPE, Special Purpose Entities)의 경우 설립목적, 의사결정능력, 위험과 효익의 과반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연결여부 판단
- 개정후는 연결기준 이원화에 따른 실무상 혼선이 없도록 모든 기업에 공통 적용되는 지배력 개념의 단일 연결기준을 제시. 또한 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연결토록 하는 등 다양한 실무지침 및 사례 제공
  - (예시) 투자자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48%를 취득하고 잔여 의결권 52%는 수천명의 주주들이 조금씩 보유하고 조직적인 단합움직임이 없는 경우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을 보유

□ 지배력(control)의 정의 변경

- 기존은 경제활동에서 효익(benefits)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
- 개정 후는 현행 지배력의 정의상 효익을 위험과 보상의 의미를 포함하는 변동이익(variable returns)으로 변경하고 지배력의 3가지 요소를 제시

- 지배력의 3요소: ① 피투자자에 대한 능력(power), ②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해 변동이익에 노출(exposure)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rights)를 보유, ③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ability)

나) 공동약정

□ 조인트 벤처 용어 정비 및 범위 조정

- 기존은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s)의 종류를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공동지배기업으로 구분
- 개정 후는 조인트 벤처의 명칭을 공동약정(joint arrangements)으로 변경하고, 그 종류를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의 두 가지로만 구분
  - 공동영업: 약정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부채에 대해 권리·의무를 갖는 경우(일종의 공동으로 영업하는 형태)
  - 공동기업: 약정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해 권리를 갖는 경우

3) 개정내용

가) K-IFRS 도입 관련 수시공시 제도 개선

□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계 마련(7조 1항 등, 2013/5/2 시행)

- 공시의무비율을 개별기준에서 연결기준으로 정비하되 연결 전환시 재무내용 증가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공시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일부 공시 의무비율 조정

- 개별에서 연결로 전환 시 평균 증가율: 매출액 76.1%, 자산총액 25.6%, 자기자본 9.9%
- 매출액/자산총액 기준 공시의무비율: 10%에서 5%
- 자기자본: 기존 유지

□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 공시 신설(8조의2)

-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이 지배회사인 상장법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상장법인의 공시의무를 신설
  - 공시대상: 부도, 파산, 해산, 합병, 영업·자산양수도 등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항목
  - 공시비율: 지배회사 연결 자산총액, 자기자본, 매출액 등에 5%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공시시한: 익일공시. 단, 국내종속회사의 부도 등 존폐관련사항은 당일공시

나) 사후심사 중심 공시관리

□ 공시우수법인 등에 대한 공시 사전 확인절차 면제(6조 2항, 45조의2 등, 2013/5/2 시행)

- 공시우수법인·우량법인을 중심으로 공시 사전확인 절차를 면제하여 상장법인의 공시 자율성 확대 및 책임공시 풍토 조성
  - 공시 직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공시, 중요사항 기재오류·누락 등 해당 시 정정공시 요구 및 불성실공시로 제재

- 풍문·보도관련 조회공시 사후심사 강화(30조 2항, 2013/3/4시행)
  - 공시번복 사후심사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공시번복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사후심사
    - 공시번복 제한기간 1월(M&A는 3월) + 사후 심사기간 15일

다) 투자위험 정보에 관한 공시 확대

- 가장납입 사실공시 신설(7조 1항 2호 라목, 2013/3/4 시행)
  - 일정규모 이상의 가장납입 사실에 대하여 공시의무를 신설하여 장래 발생 가능한 투자위험 요인을 사전에 공시
    - 기존 공시규정 중 유사공시 사례인 횡령·배임 공시와 같이 자기자본의 5%(대규모 법인 2.5%) 이상의 금액에 대해 당일 공시의무 부여

- 대규모 손상차손 발생공시 신설(7조 1항 2호 라목, 2013/3/4 시행)
  -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자기자본의 50%(대규모 법인 25%) 이상 대규모 손상차손<sup>41)</sup>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의무 부과
    - 코스닥시장은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대규모 손상차손 발생 시 공시의무화(2011년 3월)

-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7조 1항 2호 가목, 21조 2항, 82조 등, 2013/3/4 시행)
  - 자본시장법상 이익소각제도 대신 광의의 개념인 개정상법상 주식 소각제도 수용

---

41) 장부가액에서 회수가능금액을 뺀 금액(손실)

- 개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제도의 유예기간 종료를 반영하여 동 제도 폐지
  -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관련 공시시기의 변경을 반영하여 해당 법인의 공시시기 조정
    - 공시시기를 주주총회 개최 전 공시에서 개최 후 공시로 변경
- 불성실공시 지정제도의 개선(29조, 2013/5/2 시행, 33조, 34조 등, 2013/3/4 시행)
- 불성실공시 지정예고시 실제 부과별점과 차이가 발생하는 예정부과별점 공시 폐지
  - 공시의무 위반 이후 장기간(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 지정제외
  - 공시 사전 확인절차 면제 관련 불성실공시 유형 추가
    - 중요사항 기재 누락, 정정요구 불응 등 사전확인 절차 면제에 따라 발생 가능한 불성실공시 유형 신설
- 상장외국법인 공시의무교육 제도 개선(26조, 2013/3/4 시행)
-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책임자·담당자 외에 공시대리인에 대해서도 공시교육 의무화하여 성실공시 여건 조성
    - 해당시 매년 8시간 교육 및 불성실공시교육
- 자산재평가관련 공시의무사항 제외(7조 1항 2호 마목, 2013/3/4 시행)
- K-IFRS 도입으로 자산가치를 공정가치(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관련공시를 공시의무에서 제외하여 상장법인의 공시부담 완화

## 나. 2013/9/11 개정 · 9/17 시행

### 1) 개정목적

-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 시행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공시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공시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 전환사유 발생 등에 대한 공시의무사항을 신설하고, 지주회사와 지배회사의 중복공시 해소를 통한 상장법인의 공시업무 부담을 완화

### 2) 개정내용

#### 가) 조건부자본증권 관련 도입관련 사항

-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결정 등 공시 신설(7조 1항, 57조 1항)
  -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및 전환 · 채무재조정 사유 발생 시 공시 의무를 신설
    - 전환사유 등의 요건: 예컨대, 금융회사 재무건정성 지표, 워크아웃 개시, 일정기간 주가 등
  - 조건부자본증권의 오용 및 발행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주식전환 또는 원리금 감면사유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 설정(금융위 고시)
  
- 채권상장법인의 개념 확대(53조 1항~2항)
  - 조건부자본증권을 상장한 발행법인을 채권상장법인 대상법인에 포함

- 무보증사채권과 주권 관련 사채권 등(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 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교환사채권)을 상장한 발행법인

나) 상장법인의 공시업무 부담 완화

□ 지주회사와 지배회사의 중복공시 완화(8조의2 2항 1호)

- 동일한 공시사항이 상장 자회사를 통해 지주회사 공시로 이미 연계공시된 경우 지주회사에 대해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의무를 면제

다) 그 밖의 사항

□ 법률 인용조항 등 반영(7조 1항, 8조의2 1항, 18조 등)

- 신용평가업의 근거 법률 변경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 그 밖의 조문 변경
  - 법 시행령 '171조 1항'을 '171조 2항' 로 변경

## 6.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가. 2013/2/26개정 · 3/4시행

#### 1) 개정목적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공시내용의 확인절차 면제 법인의 지정·해제 등 세부내용을 반영하고 공시제도 운영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 개선

#### 2) 개정내용

-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법인 지정기준 등 마련(4조의2, 2013/5/2 시행)
  - 공시우수법인 등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법인의 지정·제외, 적용대상 공시사항 등 세부사항을 마련
    - 대상법인: 최근 3개연도 공시우수법인 또는 성실공시요건 구비법인(상장 후 5년 이상, 최근 3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시가총액 5천억원 이상, 최근 감사의견 적정 등을 모두 갖춘 법인) 단, 지정 후 관리종목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시 즉시 제외
    - 적용대상 공시사항: 수시공시사항(시장조치 필요사항<sup>42)</sup> 등은 제외)
    - 지정시기 등: 매년 5월 대상법인을 선정·적용

---

42)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상장폐지기준, 상장폐지실질심사, 우회상장심사 등에 해당하는 공시사항

□ 자율공시사항의 추가(8조)

- 유상증자, 주식관련 사채 등의 청약결과 공시 신설
  - 대부분의 상장법인이 '유상증자 등 발행결과'(증권발행실적보고서와 공시중복)의 공시이전에 '청약결과'(안내공시)를 공시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관리업체의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실적 등 녹색경영정보 공시 강화
- 자산재평가 관련 공시의무사항을 자율공시로 전환하여 상장법인의 공시부담 완화

□ 공시교육 이수시간의 합리적 조정(24조, 신규등록일이 속하는 연도가 2012년인 자부터 적용)

- 신규등록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의 교육의무 이수시간을 '일별기준'에서 '연간(반기)기준'으로 합리적 조정
  - 공시책임자: 등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 공시담당자: 등록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말까지
  - 등록일자별 차이에 따른 개별 관리, 교육일정 문제 등을 해소
-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책임자·담당자 교육은 거래소에서 별도 교육실시

□ 불성실공시 제도 개선(별표2, 2호 가목(8)은 2013/5/2 시행)

- 불성실공시 지정 별점예고 제도의 폐지에 따른 불성실공시 제재심의 기준을 조정

## 나. 2013/3/26 개정 · 4/2 시행

### 1) 개정목적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의 개정<sup>43)</sup>으로 세칙에 위임된 연결재무제표 기준 관련사항의 적용시기 등을 반영하고, 유가증권시장 공시제도 운영과정 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 개선

### 2) 개정내용

- 연결재무제표 기준 관련 규정개정사항 시행시기 확정(부칙 2조)
  - 세칙으로 위임된 연결재무제표 기준 관련 규정개정사항의 시행일은 2013년 4월 2일로 함
  
- 자율공시사항의 추가(8조)
  -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으로서 수시공시 의무비율미만 등에 대한 사항을 자율공시사항으로 추가
  
- 불성실공시 제도 개선(별표2)
  - 불성실공시 제재심의기준표 상의 '중대한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공시사항 확대
    - 공시규정상 매매거래정지 대상의 공시사항 이외 상장규정상 매매거래정지 대상의 공시사항(횡령배임 등)을 추가

---

43) 2013.2.22

다. 2013/7/11 개정 · 7/29 시행

1) 개정목적

- 가족친화 경영 관련 자율공시 도입, 불성실공시 제도 개선 등 유가증권시장 공시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개정내용

-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 자율공시 도입(8조 15호)
  - 상장법인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취득’한 경우 관련사항을 자율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
  
- 불성실공시 제도 개선(별표2)
  - 불성실공시 제재심의기준표상 ‘별점의 가중 및 감경기준’을 개선
    - (가중) 상장·공시위원회에서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결정 후 6월이내 다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된 경우
    - (감경) ‘유가증권시장 공시전문인 인증기준’에 따라 공시전문인 인증교육을 이수한 경우

## 7.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 가. 2013/5/16 개정 · 5/20 시행

#### 1) 개정목적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 2) 개정내용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등의 전부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변경
  - ‘실질심사위원회’를 ‘기업심사위원회’로 변경
  - 그 밖의 인용조문 등 정비
  
- 약식심사 보완
  - 대상추가: 공시의무 위반 및 상장·상장폐지 심사 관련 서류의 거짓기재 등
  - 평가항목 일부조정: ‘위반금액’을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 항목으로 변경

나. 2013/9/13 개정 · 9/16 시행

1) 개정목적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종료 후 단기간 내에 실질심사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기업에 대해 약식심사 절차를 도입하여 실질심사 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

2) 개정내용

- 약식심사 유형 추가(8조의 3)
  - 실질심사 종료후 단기간내 심사사유가 추가확인된 기업에 대한 약식심사 유형 신설(상장적격성 영향 약식심사)

<상장적격성 약식심사>

구 분	요 건	심사내용
경영투명성 약식심사	영업·재무 우량기업	경영투명성 심사
상장적격성 영향 약식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실질심사사유가 직전 실질심사 종료 이전에 발생</li> <li>• 실질심사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이전에 당해 사유가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실질심사사유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사</li> </ul>

- 적용예외: 관련 임직원 재직, 해당 사유 반영 시 상장폐지사유 해당, 거래소가 종합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종합심사 실시

## 8.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지침

### 가. 2013/5/15 개정 · 5/20 시행

#### 1) 개정목적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의 전면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경영의 안정성에 대한 질적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

#### 2) 개정내용

- 경영의 안정성에 대한 질적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 최대주주등 지분변동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가이드라인 신설(별표2 질적심사가이드라인 3.2)
  - 최대주주등의 지분변동시 경영의 안정성 검토에 대한 가이드라인 신설(별표2 질적심사가이드라인 3.3)
  
- 상장규정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 9. 증권상품시장 상장심사지침

### 가. 2013/5/14 개정 · 5/20 시행

#### 1) 개정목적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지수펀드증권 및 주식 워런트 증권의 상장심사 절차·방법, 심사요건의 적용 등을 명확히 하여 상장지수펀드증권 및 주식 워런트 증권의 상장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

#### 2) 개정내용

##### 가) 상장심사 방법

- 기초조사, 서면심사, 대면심사, 현지심사 등 심사의 방법과 외부관계자를 통한 심사자료 등의 검증 실시규정(5조~10조)

##### 나)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장심사 절차

- 상장심사 신청 및 심사절차(11조)
  - 신규상장을 신청하기 전에 상장규정상 질적심사 등 상장요건 심사를 위한 상장심사 절차 명확화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신규상장 신청 전 상장심사신청서 등 상장심사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상장심사 신청, 상장심사, 상장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내부회의를 통한 검토

- 상장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상장심사결과 통보 예정일 통지, 상장심사 신청의 철회 요구시 심사 종료

□ 중요한 현안 심사(12조)

- 상장심사와 관련한 중요 현안에 대해 상장신청인에게 검토의견서를 통지
  - 제출받은 검토의견서 내용을 상장심사결과 보고서에 반영

□ 상장심사결과 통지 및 심사기간(13조)

- 상장심사결과는 상장신청인에게 공문으로 통지하고 조건부 승인과 미승인의 경우 그 사유를 함께 통지
  - 상장심사기간 명확화를 위해 상장심사결과는 신청서 접수 후 45일 이내 통지

□ 신규상장 신청 기한(14조)

- 장기간 상장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ETF의 상장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 상장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상장을 신청하여 상장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
  - 3개월 경과 후 신규상장 신청시 상장심사를 다시 받도록 함

□ 신규상장 승인 통지(15조)

- 신규상장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거래소는 지체 없이 승인 여부를 통지

다) 주식 워런트 증권의 상장심사 절차

□ 상장예비심사 신청 및 결과 통지(16조~17조)

- 상장예비심사를 위한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 서류 검토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절차 명확화
- 상장예비심사기간 명확화를 위해 상장예비심사결과는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공문으로 통지

□ 신규상장 신청 기한 및 신규상장 승인 통지(18조~19조)

- 장기간 상장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식 워런트 증권의 상장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상장을 신청하도록 규정
  - 3개월 경과 후 신규상장 신청시 상장심사를 다시 받도록 함
- 신규상장 승인 통지일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신규상장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규상장 승인 여부를 공문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 추가상장 신청 기한(제20조)

- 추가상장 신청 기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잔존권리행사기간 만료 전 1개월째 되는 날의 3일 전까지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라) 상장심사요건 적용

□ 질적심사요건 등의 적용(21조)

— ETF 질적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질적심사요건을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규정

- 거래소는 질적요건 심사를 위하여 질적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심사직원은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

**<상장지수펀드증권 질적심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① (적법성) 기초자산 가격 등 상품구조의 법규 적합성 고려
- ② (계속성) 기초자산의 상품성, 합리성, 계속성, 유동성, 안정성, 시장상황, 중복상장 등 고려
- ③ (투명성) 상장신청인의 내부통제제도, 운용능력, 거래상대방 관리능력, 회계처리 및 공시투명성 등
- ④ (건전성) 그 밖의 해당 ETF 상품이 투자자보호 및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

— ELW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ELW 상장규정상 심사요건 및 발행증권 표준화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일관되게 적용

**<주식 워런트 증권 상장심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① (상품 적합성) 주식 워런트 증권이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기초자산과 발행요건이 적정하여 상품 적합성이 인정될 것
- ② (발행인 적합성) 발행사의 발행 및 상장, 신고(공시) 등 ELW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격성이 인정될 것
- ③ (LP 적격성) 유동성공급회원의 유동성 공급능력, 내부관리체계 등에 비추어 적격성이 인정될 것
- ④ (건전성)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 ETF LP의 유동성공급 심사요건의 적용(22조)

- LP에 의한 유동성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LP의 위험해지 방법, 기초자산 등의 유동성, 이해상충여부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 받아 심사하도록 명확화
  - 상장신청인(합성 ETF는 거래상대방 포함)과 이해관계 여부 및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대책 심사

□ 재간접형 ETF 심사요건의 적용(23조)

- ETF를 편입하여 기초지수 등을 추적하는 재간접형 ETF<sup>44)</sup>의 경우 상장 실체가 투자대상이 되는 ETF라는 점에서 투자대상 ETF가 규정상의 ETF상장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명확화 하고
- 특히, 투자대상 ETF가 합성 ETF인 경우 거래상대방 및 집합투자업자 관련 합성 ETF 상장요건 충족 여부 확인
  - 단, 필요시 거래소가 투자대상 ETF의 상품구조 등 특성을 감안하여 상장요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44) 자산총액의 100%를 ETF에 투자하는 ETF



## II. 코스닥시장규정

### 1.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가. 2013/2/22개정 · 4/1시행

#### 1) 개정목적

-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초기 중소기업 중심의 코넥스시장을 코스닥시장 내에 개설하고, 상장규정상 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 및 상장지수펀드의 상장진입 요건 폐지에 따른 업무규정상 관련 내용 정비

#### 2) 개정내용

- 코스닥시장 내에 코넥스시장 신설(4조 1항)
  - 코넥스시장: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
- 코넥스시장의 호가 종류(27조의3 3항)
  - 지정가호가 및 시장가호가 2가지만 도입
- 코넥스시장에 유동성공급자제도 도입(27조의8~27조의9)
  - 회원인 지정자문인이 LP 역할 수행

- 지정자문인이 LP요건 미충족시 타 회원이 LP역할 수행
  - LP는 당일 중 거래 미체결시 유동성호가 제출의무 부담
  -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간 스프레드비율은 6% 이내
- 코넥스시장의 가격제한폭(27조의10)
- 기준가격의  $\pm 15\%$
- 코넥스시장의 매매방법(27조의13~27조의15)
- 단일가 경쟁매매를 원칙으로 하되,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의 경우에는 연속 경쟁매매로 전환
  - 구체적인 기준은 세칙으로 정함
- 코넥스시장은 시간외종가·장중대량매매제도만 도입(27조의16~27조의17)
- 시간외매매, 대량매매 중 시간외종가와 장중대량매매만 도입
- 코넥스시장의 경매매제도 도입(27조의18)
- 지분분산 수단 및 M&A시장으로서의 기능제고를 위해 경매매 도입
  - 매도측이 종목, 수량, 가격 등을 정하여 경매매를 신청하면 매수측이 이에 응찰하는 형태로 매매거래를 체결

- 코넥스시장의 기본예탁금제도 도입(42조의2)
  -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코넥스상장주권의 매수주문을 위탁받은 때에는 3억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예탁받아야 함
    - 다만, 전문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기본예탁금 면제
  
- 상장규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2조, 4조, 9조의2~3, 12조의2, 4, 5, 14조, 19조의2~3, 21조의2, 25조, 43조 등)
  - 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ETF 관련 규정 삭제 및 상장지수펀드 관련 규정 정비

#### 나. 2013/9/11 개정 · 9/17 시행

##### 1) 개정목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외에 별도의 증권시장 개설이 가능해지고 증권시장별로 업무규정 운영이 허용됨에 따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서 코넥스시장 관련 규정은 폐지

##### 2) 개정내용

- 위탁증거금에 관한 규정 중 위탁자의 사항에 코넥스시장에서의 위탁자 추가(42조 5항)

- 관련 조항 변경 및 삭제(2조 6항, 2조 15항 16호·20호, 4조 2항~3항, 34조 1항 4호의2, 40조 3항, 44조 2항)

## 다. 2013/12/11 개정 · 2014/1/2시행

### 1) 개정목적

- 공매도로 인한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미실행 확약제도 및 미수동결계좌 지정 예외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 공매도 미실행 확약제도

공매도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계좌에 대해서는 매도 시 공매도·차입 여부 등의 사전확인절차를 면제하는 제도

#### 미수동결계좌(Frozen Account)

주식시장의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주식투자를 위해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할 때 고객은 주문일에 매수금액의 약 40% 정도인 위탁증거금만 증권회사에 납입한 후 잔금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고객이 결제일을 넘겨 남아있는 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을 미수거래라고 하는데 이런 미수거래를 발생시킨 고객은 미수동결(매도증권 사전납부) 조치대상이 된다.

### 2) 개정내용

- 공매도 미실행 확약 위반자의 확약제도 이용 제한(9조의2 4항)
  -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을 한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90일 간 공매도 미실행 확약제도 이용 제한

- 미수동결계좌 지정예외 범위 축소 및 판단기준 객관화(42조 6항)
  - 미수동결계좌 지정예외 범위를 위탁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서 '과실'이 없는 경우로 개선
  - 미수동결계좌 지정예외 판단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경우 미수동결계좌 지정 예외 미적용 근거 마련
    - 세부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함
  
- 그 밖의 조문정비(10조 1항, 36조 1항)
  -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매매 근거 조문 개정에 따라 규정상 인용 조문 정비
    - 상법개정<sup>45)</sup>사항을 반영하여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 특례 조항 정비<sup>46)</sup>
    - (개정전) 법 165조의2~3 → (개정후) 법 165조의3

---

45) 2012.4.15 시행

46) 2013.4.5 시행

## 2.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가. 2013/3/25 개정 · 4/1 시행

#### 1) 개정목적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서 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 및 상장지수펀드 규정의 삭제에 따른 관련 세칙 정비

#### 2) 개정내용

- 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 관련 규정 삭제(12조의2, 17조, 27조)
  -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제한 주권, 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 주권의 기준가격, 시가기준가종목 유형 중 관련 사항 삭제
  
- 상장지수펀드 관련 규정 정비(7조, 7조의3, 9조의2, 12조의5~12조의8, 17조, 18조, 27조, 36조의9, 36조의11, 36조의13, 36조의15, 40조, 47조, 별표1)
  - 유동성공급호가 제출방법, 상장지수펀드의 기준가격, 매매수량단위, 호가가격단위, 매입인도 예외 및 대응증권 기준시세·사정비율 등 관련 사항 삭제
  - 결제 및 수탁기재사항 등과 관련된 ETF의 용어정비
    - '상장지수펀드'를 법률상 용어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으로 정비

- 관련규정 삭제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8조의3, 20조, 24조, 47조의4)

**나. 2013/4/25 개정 · 4/29 시행**

**1) 개정목적**

- 단기과열완화장치 도입 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투자자 불편사항을 해소할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자기주식매매 호가수량 산정방식을 시장시스템 반영 기준으로 변경

**2) 개정내용**

- 자기주식매매 호가수량 산정방식 개선(제10조 1항 2호)
  - 자기주식매매 호가수량 산정 시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경우 처리방식을 시장시스템 반영 기준에 따라 개선
    - 시장시스템이 ‘절사’를 기본으로 설계되어 있어, ‘절상’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체크절차를 거쳐 시스템에 입력
    - 기존 ‘절상’하여 처리하던 것을 ‘절사’로 처리
  
- 단기과열종목 지정 및 지정예고 제외사유 확대(제28조의2 1항, 제28조의3 1항, 4항 5호)
  - 주가가 판단일 전일에 비해 높지 않을 경우에는 단기과열종목 최초적출, 지정예고, 지정을 유예
  -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의 경우 단기과열요건 판단 대상에서 제외

□ 단기과열종목 지정해제 연장방식 개선(제28조의4 1항~2항)

- 지정해제가 1일씩 최대 10회까지 연장 가능함에 따른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정해제를 1회에 한하여 3일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 '매매거래일' 의미 관련 주의규정 삭제(28조의2 1항)

- '매매거래일'은 일반적으로 '시장의 매매거래일'을 의미하나, 28조의2 1항괄호에서 규정하는 주의규정으로 인하여 다른 조문상 '매매거래일'에 대한 반대해석의 우려가 있어 해당 괄호부분의 주의규정 삭제

**다. 2013/6/12 개정 · 7/1 시행**

**1) 개정목적**

- 코넥스시장의 개설과 관련한 업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세칙으로 위임한 코넥스시장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코넥스시장의 개설시기를 확정하기 위함

**2) 개정내용**

□ 유동성공급자제도(35조의12~14)

- 호가제출의무: 최종의 단위체결시점(14:30)까지 거래 미체결시 LP는 10분 이내(14:40까지) LP호가 제출
- LP 수량: 매매수량단위 이상으로서 LP가 신고한 수량

- LP의 양방향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면제
  - 유동성공급호가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상장주식수 대비 비중이 1%(또는 1억원)를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그 비중이 0.5%(또는 5천만원) 미만으로 될 때까지 매수의 유동성공급호가
  - 최근 3거래일간 주가 상승률(하락률)이 40% 이상인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의 매도호가(매수호가)
- LP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금지
  - 자본시장법 71조 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회원이 소유 중인 수량이 매매수량단위 미만인 경우 매도호가
  - 회원이 소유한 수량이 상장주식총수의 10% 이상인 경우 매수호가
  - 자본시장법 시행령 199조에 따라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 매매수량 및 호가가격의 단위(35조의17)

- 코스닥시장 종목의 매매수량단위는 100주로 함
- 호가가격단위
  - 1주의 가격이 1,000원 미만인 종목: 1원
  - 1주의 가격이 1,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인 종목: 5원
  - 1주의 가격이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인 종목: 10원
  - 1주의 가격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인 종목: 50원
  - 1주의 가격이 50,000원 이상인 종목: 100원

□ 코넥스시장 매매방법(35조의18~22)

- 원칙: 30분 주기 단일가매매
- 예외: 거래가 활발한 종목은 연속 경쟁매매로 전환
- 동시호가 수량 배분(4단계)
  - 1차 배분 - 매매수량단위의 10배: 1,000주
  - 2차 배분 - 매매수량단위의 50배: 5,000주
  - 3차 배분 - 잔량의 1/2
  - 4차 배분 - 잔량

□ 장중대량매매(35조의23)

- 대량매매수량: 1억원(코스닥과 동일)
  - 대량매매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협상내용을 회원 시스템 및 코스닥시스템에 통보하고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에 따름

□ 시간외종가매매(35조의24)

- 매매수량단위: 1주
- 시간외종가매매호가의 순위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

□ 경매매제도 도입(35조의25)

- 요건: 발행주식 총수의 2%이상 매도로서 1억원이상

- 신청방법: 경매매 전일 16:00까지 회원사를 통해 신청
  - 신청은 종목별로 1일 1건
  - 경매매의 매매수량단위는 100주

□ 신규상장시 시초가 결정방법(35조의26)

- 공모 또는 50인 이상 사모 시: 공모(사모)가격의 90~200% 호가접수하여 시초가 결정
- 기관 투자: 최근 3년내 2인 이상의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경우 그 발행가격의 90~200% 호가접수하여 시초가 결정
- 그 외: 주당순자산가치의 90~400% 호가접수하여 시초가 결정
  - 다만, 주당순자산가치가 (-)인 경우 등에는 지정자문인이 제시하는 가격 및 산정방법 등을 참고하여 거래소가 평가가격을 정함

□ 기본예탁금 면제대상(43조의2)

- 자본시장법시행령 6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창업투자조합 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벤처기업특별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인정한 적격엔젤투자자

□ 대용증권(47조 2항 2호의2)

-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종목의 사정비율: 기준시세의 60%

**라. 2013/9/13 개정 · 9/17 시행**

**1) 개정목적**

- 기존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내 코넥스시장 관련 규정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으로 이관

**2) 개정내용**

- 규정의 이관 및 삭제(40조, 47조, 47조의 3, 48조, 52조)

**마. 2013/12/18 개정 · 2014/1/2시행**

**1) 개정목적**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서 미수동결계좌 지정 예외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세칙에 반영
  -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주문식별정보를 도입하고, 전산장애 발생에 대비한 시장관리차원에서 호가 효력 불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회원시스템 장애 판단기준을 개선

**2) 개정내용**

- 위탁증거금 징수 예외적용 배제 규모 등(43조의2, 9조의5 4항)
  - 위탁증거금 징수 예외적용이 배제되는 결제불이행 규모를 공매도 위반자 사후관리 적용기준 중 규제수준이 가장 중한 위반행위로 함

- 6개월간 위반일수 5일 이상 및 위반금액 10억원 초과
- 미수동결계좌 지정으로 90일간 위탁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는 경우 공매도 위반자 사후관리 적용 배제
  
- 보관기관 등의 미결제현황 통보방식 개선(9조의5 2항)
  - 보관기관 등이 예탁결제정보통신망(SAFE+)을 이용하여 회원에게 미결제현황을 통보하는 경우 [업무서식 1]에 따른 통보로 인정
  
- 주문입력매체 식별정보 추가(7조 1항, 41조 4항)
  - 주문입력매체 식별정보 중 IP 주소의 효용성 저하, 이동형 주문 매체의 확산 등을 감안하여, MAC 주소를 식별정보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호가 효력 불인정 근거 마련(13조 1항)
  - 시장관리 차원에서 호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호가의 효력을 불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회원시스템의 장애 판단기준 개선(4조 3항)
  - 장애가 발생한 회원의 거래량이 전체의 75%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시장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회원시스템의 장애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그 밖의 규정 인용조문 정비(8조의4 2항, 8조의5 1항~2항)

### 3.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가. 2013/2/22개정 · 4/1시행

##### 1) 개정목적

- 코스닥시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제고하고, 혁신형 초기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신설되는 코넥스의 시장 신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2) 개정내용

###### 가) 상장심사 관련 행위규제 합리화

- 유·무상증자 제한 요건 폐지(6조 1항 8호)
  - 상장 전·후 일정기간 이내의 유·무상증자 제한 요건 폐지 및 관련 보호예수 규정 삭제
    - 상장 전 1년간 유·무상증자 금액을 자본금의 100% 내로 제한하고, 상장 후 1년간은 일정수준 이상의 무상증자 제한
    - 상장 전 유무상증자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물량을 일정기간 보호예수하는 경우 요건 충족 인정
  
- 최대주주 변경 제한 요건 폐지(6조 1항 15호)
  - 상장 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을 제한하는 상장 외형요건 폐지
    - 최대주주변경은 경영안정성 등 질적심사를 통해 상장적격성 판단

나) 성장성 높은 중소기업의 진입 활성화

□ 기술평가 상장특례 대상 확대(2조 31항, 7조1항 2호)

- 기존 신성장동력기업에 한하여 인정되는 기술평가 상장특례 대상 업종을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하며 명칭도 기술성장기업으로 변경
  - 중소기업 지원대상 제외업종(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썬블링 및 그 밖의 개인 서비스업 등) 배제

□ 성장성을 고려한 진입요건 도입(6조 1항 6호)

- 이익규모 등 선택요건에 매출액증가율 요건 신설
  -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20이상 증가하였을 것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상장심사기준 다양화 근거 마련 등(7조 10항, 별표2)

- 업종특성, 고용창출 효과 및 국민경제적 기여도 등을 고려한 산업별 다양한 질적심사 기준 근거 마련
  - 서비스산업에 대한 우선 심사항목 우선순위 신설

기업별 심사항목 우선순위	
벤처기업	① 기술성, ② 시장성, ③ 수익성, ④ 경영성, ⑤ 재무상태
일반기업	① 수익성, ② 시장성, ③ 재무상태, ④ 경영성, ⑤ 기술성
서비스기업 <sup>47)</sup>	① 시장성, ② 경영성, ③ 수익성, ④ 기술성, ⑤ 재무상태

47)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식서비스 산업 해당기업

다) 우량외국기업에 대한 상장제도 개선

□ 글로벌 우량기업에 대한 상장특례 도입(7조의2 6항, 8조 1항)

- 일정기준이상의 글로벌 우량기업 2차 상장 시 질적심사 및 상장위원회 심의 면제
  - 분산, 감사의견 등 최소한의 형식요건만 심사
- 적격시장 상장경력, 기업규모, 경영성과가 매우 우수한 글로벌 500대 기업 수준
  - 해외 상장외국기업으로 해당 증권시장에 상장한 후 상장기간 5년 이상 경과
  - 해당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주권등의 기준시가총액 2조원 이상
  - 매출액이 최근 사업년도에 2조원 이상, 최근 3사업연도 평균 1조원 이상
  - 이익액이 최근 사업연도에 3,000억원 이상이며 3년합계 7000억원 이상
  - 최근 3년 이내 상장된 해외증권시장이나 본국의 감독기관, 거래소 등으로부터 제재사실 없을 것

□ 우량외국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요건 합리화 및 상장주선인 투자 의무 면제(7조의2 1항, 26조 7항)

- 적격해외증권시장에 3년 이상 상장된 외국기업(우량외국기업)에 대하여 본국 지배구조 인정 및 최소한의 요건만 요구
  - NYSE, NASDAQ, TSE, LSE, DB, HKEx, SGX 등
  - 사외이사 선임 의무,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만 요구
- 우량외국기업 상장주선인의 최소투자 의무 면제
  - 기존 외국기업 상장주선인의 최소투자 의무 기준도 10%, 50억

원 한도에서 5%, 25억원 한도로 완화하여 외국기업의 상장활성화 유도

라) 대형기술기업의 진입 활성화 지원

□ 대형법인에 대한 정의 신설(2조 38항)

— 자기자본 1,000억원 또는 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인 상장예정 국내기업

-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국내SPC) 제외

□ 대형법인에 대한 상장특례 도입(7조 8항)

— 대형법인에 대해서는 상장요건 중 자본상태 및 경영성과요건 적용 배제

□ 대형법인에 대한 매각제한 개선 및 상장주선인 투자 의무 면제(21조 1항, 26조 7항)

— 대형법인이 신규상장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매각제한 기간을 1년에서 6월로 단축 및 대상 축소

- 최대주주등 보유분, 상장 전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 또는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분
- 2년 이내의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투자분에 대한 매각제한 미적용

— 대형법인의 상장주선인의 경우에는 국내기업에 대한 최소투자 의무(공모물량의 3%, 10억원 한도) 적용 면제

마) 리츠, ETF, 투자회사 등 주식관련 이외의 상품 폐지

□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 관련 규정 삭제(2조 4항~5항, 11항, 28항, 4조 1항 3호, 11조 3항, 14조~15조, 18조 3항~4항, 27조 1항, 28조의2 1항, 31조, 33조, 39조, 43조~44조, 53조)

—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투자신탁)의 정의, 신규상장 및 상장폐지 요건, 신고사항, 적용특례 등 관련 규정 삭제

□ 투자회사 관련 규정 삭제(2조 11항, 27항, 3조 6항, 4조 1항 2호, 6조의2 2항 1호, 13조, 27조 1항, 28조의2 1항, 29조 1항, 42조, 52조)

— 투자회사의 신규상장 및 상장폐지 요건, 매매거래정지, 적용특례 등 관련 규정 삭제

□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규정 삭제(2조 11항, 29항, 4조의4, 8조 1항, 9조 1항~2항, 16조, 27조 1항, 28조 1항, 13항, 28조의2 1항, 32조, 38조 7항, 54조)

— 부동산투자회사 정의, 상장예비심사 및 신규상장 요건, 신고사항,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특례 등 관련 규정 삭제

바) 상장주선인 책임강화를 위한 의무인수제도 도입

□ 국내기업 상장주선인에 대한 최소투자자의무 등 신설(26조 6항)

— 상장주선인 최소투자자의무를 외국기업에서 국내기업으로 확대

• 공모물량의 3%, 10억원 한도

• 단, 대형법인은 유가증권시장과의 규제 형평성을 감안하여 미적용

— 최소투자자의무 주식에 대하여 3월간 매각제한 적용

사) 코넥스시장 상장관리 및 지정자문인 제도 도입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정의(2조 3항)

-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으로 정의

□ 지정자문인의 선임 등(47조의3)

-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신청기업 및 상장기업에게 지정자문인 선임 의무를 부과
  - 코넥스시장의 상장요건 및 상장유지 요건으로 작용
- 기업과 거래소간 통지, 서류제출, 신고 및 공시 등의 연락기관으로 지정자문인을 명정
- 지정자문인과 그 선임계약의 변경 시 거래소에 신고 의무를 부과
- 지정자문인의 상장이전 및 상장이후 업무를 규정
  - 기업실사, 상장적격성 심사 및 신규상장 사무처리 등의 상장예정기업 지원
  - 금융관련 법규 및 거래소 규정준수에 대한 조언, 공시·신고대리, 유동성 공급호가 의무이행, 기업현황보고서 작성·게시 및 기업설명회 개최 지원 등

□ 지정자문인 선정(47조의4)

- 지정자문인 지정신청, 지정자문인 지정신청자에 자격심사, 지정자문인 선정위원회의 심의, 지정자문인 선정 및 선정결과 통보 등의 절차를 마련
- 지정자문인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

□ 지정자문인 자격(47조의5)

- 지정자문인 지정신청자를 선정하기 위한 지정자문인 자격 및 지정자문인 자격유지 요건을 규정
- 지정자문인 자격유지 여부에 대한 정기·수시심사와 자격취소 등 조치근거를 마련

□ 지정자문인 의무(47조의6)

- 지정자문인의 윤리 및 책임 강화를 위해 지정자문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
  - 선관의무, 독립성 유지, 이해상충방지, 도덕성, 비밀유지, 거래소 보고의무

□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신청(47조의10)

- 코넥스시장에 신규상장 신청 시기(상장희망일 15 영업일 전)의 규정 및 신규상장신청서류에 지정자문인의 상장적격성보고서를 포함

□ 코넥스시장 상장요건(47조의11)

- 혁신형 초기기업의 실정과 코넥스시장 특성을 감안한 재무요건, 비재무요건 및 질적심사 기준 등을 규정

□ 코넥스시장 상장승인(47조의12)

- 신규상장 신청승인·결과통지 등에 필요한 절차(결과통지 연기 사유 및 절차 포함 등) 및 결과통지 시기와 신규상장 신청기각 사유 등을 규정

□ 코넥스시장 매매거래정지(47조의20)

- 상장기업의 상장폐지사유 해당 시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사유해소 시 종목의 매매거래재개 근거를 마련

□ 코넥스시장 상장폐지요건(47조의21)

- 기업존폐 및 상장기업 의무위반 등 기존 퇴출요건과 지정자문인 미보유(30영업일) 및 기업설명회 미개최(2반기 연속, 3년내 4회이상) 등 코넥스시장 고유의 퇴출요건을 규정
  - 코넥스시장에 부적합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관련 퇴출요건은 배제

□ 그 밖의 사항(47조의30)

- 지정자문인에 거래소의 전자공시매체 및 지정자문인의 홈페이지 등에 상장적격성보고서와 기업현황보고서 등의 공시의무를 부과

아)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코스닥시장 상장특례 마련

□ 코넥스시장의 공모분 분산요건 산정 시 반영(6조 2항)

- 코넥스시장에서의 모집 또는 매출분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의무공모물량 산정 시 포함

□ 코넥스시장 상장기간 및 시가총액별 특례요건 마련(7조 9항)

- 코넥스시장 상장기간 1년 이상 및 시가총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법인에 대하여는 기업규모 및 재무요건 대체 적용

-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기업: 벤처수준 요건 적용
-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기업: 기업규모 및 재무요건 미적용

□ 코넥스시장 취득분에 대한 매각제한 규제 합리화(21조 1항, 22조1항, 22조의2 1항)

- 최대주주등 보유 주식 등을 코넥스시장을 통하여 취득한 물량에 대하여는 매각제한 예외 적용
  - 상장 전 1년 이내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1년의 매각제한

□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 및 동 위원회 명칭 변경(38조 2항, 38조의2)

- 기존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 및 '실질심사위원회' 명칭을 각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 및 '기업심사위원회'로 변경
  - 상장폐지라는 용어로 인한 심사대상기업의 부정적 이미지 및 낙인효과 우려 등

□ 수수료 관련 규정 정비(50조)

- 수수료(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의 부과·면제 등에 관한 근거만을 규정에 명시하고, 부과기준 등 세부적인 금액·방법·절차 등은 세칙에 위임
  - 유가증권시장과의 수수료 규정 정합성 제고

- 그 밖의 조문정비 등(2조 2항·16항·25항·38항, 6조 3항·6항, 7조 2항·5항·7항, 7조의2 1항·3항·5항, 19조의4, 22조, 22조의2, 26조의2, 28조 1항·11항 등)

— 관련규정 삭제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자구수정 등

## 나. 2013/6/19 개정·6/25 시행

### 1) 개정목적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K-IFRS 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회계기준도 허용해 최근 사업연도(2012년)에 외부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인정하여 코넥스시장의 원활한 상장 지원

### 2) 개정내용

- K-IFRS 면제(47조의2 3항 및 4항)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도 상장규정상 감사보고서로 인정
    - 코넥스시장의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은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반영한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

□ K-IFRS 미도입회사의 K-IFRS로 전환된 상장서류 제출 면제(47조의10 2항 2호)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고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 K-IFRS로 전환 없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도 허용

□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법인의 상장신청 허용(부칙 제정)

- 금년 코넥스 상장예정법인중 최근 사업연도(2012년)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 상장신청이 불가능
- 이에 최근 사업연도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인정하는 상장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코넥스시장 상장을 허용
  - 해당(2013년)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까지 적용
- 다른 규정개정을 통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법인의 상장후 적용되는 재무제표에도 동일한 특례를 인정

## 4.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가. 2013/2/27개정 · 2/28시행

#### 1) 개정목적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자문인 선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세칙에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2) 개정내용

-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의 필수기재 사항(36조의2 1항)
  - 코스닥시장 상장예정기업 및 상장기업과 지정자문인 간의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기재 사항을 마련
    - 거래소 규정준수 서약, 업무 책임자·담당자·범위 및 연락절차·수단, 정보의 비밀 유지 및 부적절한 이용금지, 권리·의무, 업무 및 조직변경 통지, 수수료, 계약해지 등
- 지정자문인 지정신청 서류(36조의3 2항)
  - 지정자문인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마련
- 지정자문인 자격요건(36조의6 1항~3항)
  - 자본총계 1조원 이상 증권사는 지정자문인 자격요건 중 신규상장 실적(최근 3년간) 및 업무담당자는 각각 5사 및 4인으로 함

- 자본총계 1조원 미만 증권사는 지정자문인 자격요건 중 신규상장 실적(최근 3년간) 및 업무담당자는 각각 1사 및 2인으로 함

□ 지정자문인 선정기준(36조의6 4항)

- 지정자문인 자격에 질적심사 기준을 마련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기업가치제고	기업실사, 상장적격성 심사 및 기업공시·신고 대리 등 지정자문인 업무수행 능력보유 창업투자회사와의 협업체계 구축 및 협업체계의 안정성
적합성	지정자문인 지정신청 이유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장기여도	자기자본투자, 투자자 유치 및 유동성공급자로서 의무이행 계획 등의 타당성
이해상충방지 및 독립성 유지	이해상충방지 및 독립성 유지를 위한 체계 구축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훼손할 우려가 없을 것

□ 지정자문인 의무이행(36조의8)

- 지정자문인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기준 및 절차 마련

□ 그 밖의 사항(36조의4, 36조의7, 36조의10)

- 그 밖에 지정자문인 선정공고 기재내용 등, 지정자문인 자격유지 여부에 대한 정기심사 서류 및 지정자문인 자격취소 서류를 규정

나. 2013/3/20 개정 · 4/1 시행

1) 개정목적

- 지난 2월 코스닥시장의 자금조달 기능 제고 등을 위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 개정에 따른 관련 세부내용 등의 정비

2) 개정내용

가) 코스닥시장 자금조달 기능 제고 관련

- 기술평가 상장특례 제도 확대에 따른 세부사항 정비(2조 5항~6항, 9조 5항, 10조 2항, 19조의4 1항, 24조 4항 · 6항, 25조 7항, 26조 1항, 33조 11항)
  - 특례대상 업종 및 소속부 관련 자구수정 등
    - 신성장동력기업(부)를 기술성장기업(부)로 변경
- 상장외형요건(유무상증자제한 및 최대주주변경제한) 폐지에 따른 관련 세부사항 정비(7조 2항~4항, 19조 4항, 19조의2 4항, 20조 5항~7항)
  - 규정 6조 1항 8호 및 15호 폐지에 따른 인용조문 삭제 등
- 외국기업 상장 관련 적격해외증권시장 대상 확대(7조 1항)
  - 적격해외증권시장 범위에 호주증권거래소 및 토론토거래소 추가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금융투자업 규정’ 상 적격해외시장에 포함되고 OECD 국가이면서 시가총액 순위가 KRX(12위)보다 상위 수준<sup>48)</sup>

□ 상장주선인 투자의무관련 보호예수서류 신설(12조 1항)

- 국내기업 상장주선인에 대한 보호예수확약서 및 보호예수증명서 제출의무 근거 마련

나) 투자회사, 리츠, ETF 폐지 관련 세부규정 삭제

□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세부사항 삭제(3조의4, 17조, 26조 1항, 27조1항, 29조 1항, 31조, 33조 11항)

- 상장예비심사 및 신규상장 신청서류, 관리종목 지정·해제 시기, 매매거래정지, 신고사항 등 관련 세부 규정 삭제

□ 투자회사 관련 세부사항 삭제(14조, 29조 1항)

- 신규상장 신청서류, 매매거래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 삭제

□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 관련 세부사항 삭제(15조, 16조, 29조 1항, 30조, 32조, 33조의3)

- 신규상장 신청서류, 매매거래정지, 신고사항, 관리서류 제출 등 관련 세부 규정 삭제

다) 그 밖의 사항

□ 신규상장 시 보호예수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3조 6항)

- 상장예비심사청구 시 '보호예수증명서' 제출기한을 상장예비심사 승인일 이후 3일내 제출하도록 개선

---

48) 호주증권거래소 9위, 토론토거래소 7위

- 감사원은 심사청구 시 보호예수증명서 정구가 철회나 미승인 시에 당해 청구기업에게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

□ 상장폐지실질심사 및 동 위원회 명칭변경 관련 자구수정 등(19조3항, 24조 1항, 33조의2)

-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실질심사위원회’는 ‘기업심사위원회’로 변경

□ 수수료 관련 세부규정 체제 정비(38조)

-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부과에 관한 부과기준 및 면제사항, 납부시기, 절차 등 관련 세부사항 전체를 별표로 이관
  - 규정체계 및 유가증권시장과의 일관성 고려
  - 신규상장 시 상장수수료에서 상장심사수수료 공제 규정 폐지

□ 그 밖의 세부 정비사항(3조 1항, 3조의2 2항, 8조 4항, 13조 1항~2항, 19조 6항, 23조 4항, 25조 4항, 29조 1항, 33조 11항, 33조의4 11항~13항, 33조의6, 39조)

- 대형법인에 대한 거래소 상장예비교육 이수 의무 면제
- 외국기업 정관필수 기재사항 포함근거를 심사지침에서 세칙으로 이관
- 종류주식 관리종목 지정 시 매매거래정지기간 명확화(1일)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관련 세부사항 명확화
  - 가장납입 관련 협의사항 공시 포함

- 주된 영업정지 대상 관련 물적분할(분할합병) 명시
- 주요외국자회사의 중요한 영업 양도를 주된 영업정지대상에 포함
- 환율변동손실 상장폐지 관련 일몰 조항<sup>49)</sup> 삭제
- 그 밖의 자구수정 등

□ 관련 서식 등의 정비

- ETF, 리츠 관련 세부서식 등 폐지(9개 서식)
  -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관련 서식: [상장서식 5, 6, 14]
  -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서식: [상장서식 7, 30-6]
  - 그 밖의 서식: [별표2], [상장서식 1, 34, 35] 등
- 그 밖의 서식 개정(상장외형요건, 인용조문, 자구수정 등 반영 26개)
  - [상장서식 8-3, 9, 12-2, 16, 21, 21-2, 25, 26, 27, 27-2, 28, 28-2, 29, 29-2, 30, 30-2, 30-3, 30-4, 30-5, 30-7, 30-8, 32, 33, 33-2, 33-3, 36]
- 일부서식 체계 정비
  - 상장서식 중 내용상 별표에 해당하는 서식에 대하여 형식 변경
  - [상장서식 3]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은 [별표4]
  - [상장서식 8-3] 기업인수목적회사 정관필수 기재사항은 [별표5]
  - 외국기업 정관필수 기재사항 서식을 상장심사지침에서 세칙으로 이관·신설(심사지침[별표3]에서 시행세칙[별표6]으로 이관)

---

49) 2011.4.30

다. 2013/5/13 개정 · 5/20 시행

1) 개정목적

-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및 지정자문인 선정·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 개정(2013.2.22)됨에 따라, 상장할 증권의 심사를 위하여 시행세칙에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신청 서류 등(36조의11)
  -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신청서 [상장서식 43] 및 상장적격성보고서 [상장서식 44] 서식을 마련하고 코넥스시장 신규상장 시 첨부서류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시 첨부서류를 준용
  - 코넥스시장 실정에 부합하도록 일부서류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
    - 코스닥 상장계약서를 코넥스 상장계약서로 변경
    -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추가
    - 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 각서 삭제
  - 신규상장신청 후 공모 또는 사모 등을 하는 법인은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신청서류 외 공모 또는 사모 등 증권발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토록 함
  
- 신규상장심사 결과의 취소(36조의14)
  - 상장규정에서 정한 사유 외 신규상장승인 취소사유로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의 해지' 등을 추가

□ 그 밖의 사항(36조의12~13, 36조의15~16)

- 주식의 액면가액, 신규상장신청 결과통지의 연기, 신규상장심사결과에 이의신청절차 등 및 상장기업의 업종분류 등은 코스닥시장의 관련 규정을 준용

□ 부칙(2조)

- 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 및 상장법인에 대해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을 시장개설 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
  - 2015년 6월30일까지

**라. 2013/6/26 개정 · 6/27 시행**

**1) 개정목적**

- 전문평가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세칙과 전문평가제도 운영기준에서 중복되는 사항을 전문평가제도 운영기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시장참가자의 규정이용 편의성을 제고

**2) 개정내용**

□ 세칙과 전문평가제도 운영기준 내용의 중복해소(9조)

- 전문평가 세부절차, 평가등급 산정방법 등 전문평가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전문평가제도 운영기준으로 일원화
  - 단, 전문평가 대상, 전문평가 수수료 부담주체, 전문평가결과의 효력기간에 관한 사항은 세칙에 존치

**<기존 세칙과 운영기준 중복 사항>**

구분	세칙	운영기준
전문평가기관 선정요건	§9①	§5
전문평가 신청절차	§9④	§6③
전문평가기관 지정절차	§9⑤	§6⑤
회피·기피 신청절차	§9⑥	§6⑥
비밀유지서약 의무	§9⑦	§6⑦
기술평가서 제출기한	§9⑧	§6⑧
평가등급 산정방법	§9⑨	§9③

**5.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가. 2013/2/22개정 · 3/4시행**

**1) 개정목적**

- 코스닥시장 공시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보완 필요 사항을 개선하고 코넥스시장 신설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공시사항을 규정

**2) 개정내용**

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로드맵에 따른 공시제도 정비

-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계 마련(2조 27항~28항, 3조 1항·6항)
  -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여부 판단 시 K-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조의3 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의 연결재무제표 적용

□ 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 공시 신설(6조의2, 10조 1항, 12조 1항 4호)

-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이 연결실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상장법인의 공시의무를 신설
  - 공시대상: 부도, 파산, 해산, 합병, 영업·자산양수도 등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항목
  - 공시비율: 지배회사 연결 자산총액, 자기자본, 매출액 등에 5%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공시시한: 익일공시(다만, 국내 종속회사의 부도 등 존폐관련사항은 당일)
  - 공시시한 미준수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

나) 사후심사 중심 공시관리

□ 공시내용의 확인절차 면제 근거 마련(5조 4항, 40조 1항 3호)

- 수시공시 사항에 대한 거래소의 사전 확인절차 근거를 명시하고 동 확인절차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의 개념 신설
  - 성실공시 이행 여부 등 세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확인절차 면제 대상이 되는 수시공시 항목의 범위를 설정
  - 모든 수시공시 항목에 대하여 확인절차를 면제하되,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조치를 수반하는 중대한 공시사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세칙에 위임)

□ 확인절차 면제 공시 내용의 정정요구 등 사후 관리(27조 4호,30조의2, 40조 1항 5호)

- 확인절차 면제 공시의 오류사항이 기존 거래소의 공시유보사항에 준하는 중대한 경우에 대하여 공시내용의 정정을 요구
- 정정요구 사실 및 정정시한을 시장안내로 투자자에게 공시하고 정정시한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 공시번복 사후심사기간 확대(28조 2항 4호)

- 풍문·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과 관련하여 공시번복 사후심사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공시번복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사후심사
  - 공시번복제한기간 1월 + 사후심사기간 15일
  - 종전 15일의 사후심사기간 중에는 집중 사후심사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공시내용의 중요성 및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별 심사를 실시

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공시사항 등 특례 마련

□ 주요경영사항 공시(50조의3)

- 주요사항보고서 수준의 중요사항,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 관련 사항, 경영권 변동 관련사항 및 횡령·배임 등 건전성 저해행위로 의무공시 항목 제한
  - 기존시장(유가·코스닥) 대비 공시사항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및 지정자문인의 부담을 완화

□ 자율공시(50조의4)

- 상장기업이 투자판단을 위해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사항이므로 코스닥시장 자율공시사항과 동일하게 운영

□ 조회공시(50조의5~6)

- 의무공시 및 자율공시사항과 관련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해 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

□ 불성실공시제도(50조의9~50조의13)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유로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만을 규정하고 공시변경은 제도의 간소화를 위해 지정사유에서 제외
  - 그 밖에 조회공시번복 심사, 별점누적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개선계획서 및 공시위반제재금 제도를 제외

□ 매매거래정지제도(50조의14)

- 조회공시 요구시, 조회공시 미답변시, 수시공시 중 주가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

라) 그 밖의 공시제도 개선

□ 가장납입 혐의 발생사실 등 공시의무 부과(6조 1항 2호 라목(9))

- 임원 등의 가장납입혐의 등을 확인한 경우 공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상태 관련 주요 위험요인을 투자자에게 공시

- 자산재평가 관련 공시의무의 자율공시 이관(6조 1항 2호 마목(7))
  - IFRS 도입으로 자산의 공정가치(시가) 평가가 가능함에 따라 자산재평가 공시의무를 자율공시로 이관하여 상장법인의 공시부담 경감
  
- 자본시장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내용 반영
  - 주식소각 공시 적용 범위 확대(6조 1항 2호 가목(2))
    - 자본시장법상 이익소각제도 및 개정 상법상 주식소각제도를 모두 반영(상법 §343)
  -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제출 폐지(19조 2항)
    -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제도의 유예기간 종료 반영
  -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관련 공시시한 조정(68조~71조)
    - 주주총회일 5일전을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로 변경
  
- 투자회사 등의 폐지 관련 사항 반영(2조 21항, 8항, 9항, 44조 4항, 48조)
  - 2013.2월중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 상장 관련 제도 폐지 예정(2013.4.1)으로 관련 공시규정 삭제

## 나. 2013/6/19 개정 · 7/1 시행

### 1) 개정목적

- 2013년 2월 22일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sup>50)</sup>의 개정 이유와 동일

## 2) 개정내용

-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닌 법인에 관한 특례 신설(부칙 5조)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2011사업연도에 외감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적용하는 2012사업연도의 재무사항은 해당 법인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한 회계법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에 따름

## 다. 2013/9/11 개정 · 9/17 시행

### 1) 개정목적

-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 시행됨에 따라 코스닥시장 공시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공시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 전환사유 발생 등에 대한 공시의무사항을 신설하고, 지주회사와 지배회사의 중복공시 해소를 통한 상장법인의 공시업무 부담을 완화

### 2) 개정내용

- 조건부자본증권 도입 관련 사항(6조 1항)
  -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및 전환 · 채무제조정 사유 발생 시 공시 의무를 신설
    - 사전에 정한 사유 발생 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이 감면되는 신종사채로서 일정 조건 충족 시 ① 주식으로 전환되

---

50) 앞의 5.가.의 내용을 참조

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과 ② 사채의 상환과 이차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구분

— 조건부자본증권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유와 동일하게 운영

□ 지주회사와 지배회사의 중복공시 해소(6조의2 2항)

— 지주회사와 지배회사에 중복되는 동일사항은 현행과 같이 지배회사 공시로 같음하되, 상장자회사를 통해 지주회사 공시로 이미 연계공시된 경우에는 지배회사 공시를 면제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공시사항 등 특례 삭제(2조29항~30항, 1편 6장 삭제)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신설에 따른 코넥스상장법인 공시사항 특례 삭제

□ 그 밖의 법률 인용조항 등 반영(6조 1항, 6조의2 1항, 15조)

— 신용평가업자 근거 법률 변경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 신용평가업자(공시규정 내 공정공시의무 적용예외 대상) 근거 조항 개정 필요

— 그 밖의 조문 변경

- 법 시행령 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사유 등) 1항 → 2항으로 이관 등
- 공시규정 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 인용 조항 개정

## 6.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가. 2013/2/27개정 · 3/4시행

#### 1) 개정목적

- 상장법인의 공시자율성 제고 등을 위한 공시사항의 사전 확인절차 면제 제도 도입 등을 위하여 공시규정을 개정에 따라 확인절차 면제 법인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면제대상 공시사항 명확화 등 관련 세부사항 정비

#### 2) 개정내용

-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 도입 관련 세부사항 정비(4조의2 1항~2항)
  - 수시공시사항에 대한 사전 확인절차 면제법인의 지정 요건 마련
    - 개인투자자 매매비중, 상장법인의 공시부담 등을 고려하여 우량·성실법인을 대상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대하여 확인절차 면제를 우선 시행

구분	요건	
대상법인(or)	최근 3년 공시우수법인	우량기업부 법인이며 시총 1천억 이상(최근 6개월 이상)
요건(and)	① 상장후 5년 경과 ② 공시의무 이수(2년) ③ 감사의견 적정 ④ 관리·환기종목·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3년)	

- 확인절차 면제법인의 지정시기 및 해제 관련 사항 명확화
  - 매년 5월 최초 매매거래일에 지정(코스닥시장 소속부 정기심사 시기 감안)하며, 불성실공시법인·관리·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우량기업의 소속부가 변경되는 경우 면제법인에서 즉시 제외

□ 확인절차 면제 대상 공시사항(4조의2 4항)

- 모든 수시공시 항목에 대하여 확인절차를 면제하되 매매거래정지(실질심사, 우회상장심사 및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 등) 및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관련 공시사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

□ 그 밖의 제도 개선사항(8조, 13조 등)

-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 제도 폐지<sup>51)</sup>에 따른 관련 공시사항 삭제
- 유상증자, 주식관련 사채 등의 청약결과 자율공시 신설
  - 대부분의 상장법인이 기존 ‘유상증자 등 발행결과’(증권발행실적보고서와 공시중복) 공시 이전에 ‘청약결과’를 공시
- 기업부담 및 공시의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자산재평가 관련 공시를 자율공시로 전환
  - IFRS 도입으로 자산의 공정가치(시가) 평가가 가능함에 따라 자산재평가 공시의무를 자율공시로 이관하여 상장법인의 공시 부담 경감

---

51) 2013.2.22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 비주식상품 폐지

## 나. 2013/3/26 개정 · 4/2 시행

### 1) 개정목적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의 개정<sup>52)</sup>으로 세척에 위임된 연결재무제표 기준 관련사항의 시행시기를 확정하고, 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 공시관련 자율공시사항을 정비

### 2) 개정내용

- 연결재무제표 기준관련 규정개정사항 시행시기 확정(부칙 2조)
  - 세척으로 위임된 연결재무제표 기준 관련 규정개정사항의 시행일을 2013년 4월 2일로 함
- 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자율공시 정비(13조)
  - 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으로서 의무공시비율 5%미만 등에 대한 사항을 자율공시사항으로 추가

## 다. 2013/6/12 개정 · 7/1 시행

### 1) 개정목적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의 개정으로 세척으로 위임된 코넥스시장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

52) 2013.2.22

2) 개정내용

- 공시사항 신고시기 의제(21의2)
  - 부득이한 사유로 익일 정규시장 개장 30분전까지 신고하는 경우 당일공시로 의제
    - 경매매가 있는 경우 1시간 전까지
  
- 코넥스시장 자율공시사항(21조의6)
  - 단일판매·공급 계약 체결, 신규시설투자 등 코스닥 의무공시사항 중 코넥스시장에서 제외된 항목들과 단기차입금 감소, 신물질·신기술에 관한 특허권 취득 등 코스닥 자율공시사항을 코넥스시장 자율공시사항으로 함
    - 그 외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코넥스시장 공시번복 사항(21조의8)
  - 코넥스에서는 불성실공시에서 공시변경을 제외함에 따라, 코스닥 공시변경사항 중 일부를 비율기준 50%로 하여 공시번복으로 규제
    - 그 외 거래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 코넥스시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절차(21조의9)
  - 위반의 동기, 위반사실의 중요성, 위반사실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미친 영향 등을 감안하여 별점을 결정
  - 이의신청시 제출서류

- 공시서식1이 정하는 이의신청서
- 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서류

□ 공시책임자 및 공시대리인(21의13)

-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가 원칙이나 지정자문인계약 해지, 상장법인과 지정자문인간 분쟁 발생, 그 밖의 상장법인이 직접 공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장법인이 직접 공시
- 코넥스공시교육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전문과정 또는 거래소가 인정하는 외부기관 교육과정으로 함
  - 공시책임자와 공시대리인은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거래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
  - 단, 교육담당기관이 거래소에 직접 교육이수상황을 통보하는 경우는 제외

**라. 2013/7/16 개정 · 7/29 시행**

**1) 개정목적**

- 가족친화 경영정보 관련 자율공시 도입 및 실적예측공시 관리 강화 등 코스닥시장 공시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보완 필요 사항을 개선

**2) 개정내용**

-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 자율공시 도입(13조)

-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생산성 제고 및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상장법인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취득'한 경우 관련사항을 자율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

□ 실적예측공시 관리 강화(19조의2)

- 최근 실적예측공시 관련 예측과다여부 심사 결과 동일 기업의 반복적 공시 위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상장법인의 성실한 실적예측공시 풍토 조성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적예측공시 관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시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실적예측공시 제한
  - 결과치가 예측치와 현저히 다른 경우 면책조항적용여부 등 심사
  - 합리적 근거·가정에 기초한 예측정보 공시 등)을 따르지 않고 실적예측공시를 하는 경우 공시유보 근거 마련

**마. 2013/9/13 개정 · 9/17 시행**

**1) 개정목적**

- 기존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내 코넥스시장 관련 규정을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으로 이관 및 삭제

**2) 개정내용**

- 규정의 삭제(21조의2~13, 별표2, 공시서식 9, 공시서식 10)

## 7.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지침

### 가. 2013/3/28 개정 · 4/1 시행

#### 1) 개정목적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sup>53)</sup>에 따른 상장심사 관련사항 정비

#### 2) 개정내용

- 일부 상장요건 폐지에 따른 「(별표2) 질적심사 가이드라인」 정비
  - 최대주주변경제한 및 유무상증자제한 폐지에 따라 경영안정성 및 경영투명성 관련 질적심사 항목에 이를 반영
    - 청구 전 1년간 최대주주변경 및 유무상증자를 제한하는 상장 외형요건 폐지
- 「(별표3) 외국기업 정관필수 기재사항」 삭제(세척이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별표서식)으로 이관에 따른 삭제
    - 유가증권시장도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서식에 반영
- 2013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전면 적용에 따른 일부 조문 수정 및 「(별표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심사 가이드라인」 삭제
  - 별도 적용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심사 가이드라인 삭제

---

53) 2013.2.22

## 8. 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가. 2013/3/26 개정 · 4/2 시행

### 1) 개정목적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등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관련사항 시행이 확정됨에 따른 종속회사 공정공시 사항 정비

### 2) 개정내용

- 종속회사 공정공시 사항 정비(3조 4항, 10조 1항~2항)
  -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으로서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않은 사항을 공정공시에 반영<sup>54)</sup>

## 9. 전문평가제도 운영기준

가. 2013/3/28 개정 · 4/1 시행

### 1) 개정목적

-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상장규정 개정<sup>55)</sup>에 따라 기술평가대상 확대, 전문평가 절차 및 관련서식 등을 정비

---

54) 2013.2.22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

## 2) 개정내용

- 전문평가 대상기업 업종 제한 폐지(3조 2항~4항)
  - 전문평가 대상업종을 신성장동력업종에서 전업종으로 확대
  
- 서식 개정 및 자구 정비([별지 2, 5], [서식 1~3])
  - 업종별 전문평가 대상 기업, 업종별 전문평가대상 판단기준, 기술 평가신청서, 기술·사업성 검토신청서 등 서식 정비
  - 전문평가대상이 신성장동력업종에서 전업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성장동력기업을 기술성장기업으로 자구 정비
  
- 동 운영기준 명칭의 합리적 개선
  - 전문평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기준이라는 규정 취지에 맞게 명칭을 「전문평가제도 운영기준」으로 명료하게 변경

### Ⅲ. 코넥스시장규정

#### 1.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가. 2013/9/11 제정 · 9/17 시행

##### 1) 제정목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외에 별도의 증권시장 개설이 가능해지고 증권시장별로 업무규정 운영이 허용됨에 따라 코넥스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 제정내용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의 목적(1조)
  - 코넥스시장의 매매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코넥스시장의 호가종류(2조 5항)
  - 코넥스시장은 '지정가호가'와 '시장가호가'만 도입
- 코넥스시장에 유동성공급자제도 도입(17조~18조)
  - 회원인 지정자문인이 LP 역할 수행
    - 지정자문인이 LP요건 미충족 시 타 회원이 LP역할 수행

- LP는 당일 중 거래 미체결 시 유동성호가 제출의무 부담
-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간 스프레드비율은 6% 이내

□ 코넥스시장의 가격제한폭(19조)

- 기준가격의  $\pm 15\%$

□ 코넥스시장의 매매방법(22조~24조)

- 단일가 경쟁매매를 원칙으로 하되,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의 경우에는 연속 경쟁매매로 전환
  - 구체적인 기준은 세칙으로 위임

□ 시간외종가·장중대량매매제도 도입(25조~26조)

- 시간외매매/대량매매 중 시간외종가와 장중대량매매만 도입

□ 코넥스시장에 경매매제도 도입(27조)

- 지분분산 수단 및 M&A시장으로서 기능제고를 위해 경매매 도입
  - 매도측이 종목, 수량, 가격 등을 정하여 경매매를 신청하면 매수측이 이에 응찰하는 형태로 매매거래를 체결

□ 코넥스시장에 기본예탁금제도 도입(62조)

-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코넥스상장주권의 매수주문을 위탁받은 때에는 3억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예탁받아야 함
  - 단, 전문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기본예탁금 면제

나. 2013/12/11 개정 · 2014/1/2시행

1) 개정목적

- 공매도로 인한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미실행 확약제도 및 미수동결계좌 지정 예외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개정내용

- 공매도 미실행 확약 위반자의 확약제도 이용 제한(11조 4항)
  -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을 한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90일 간 공매도 미실행 확약제도 이용 제한
  
- 미수동결계좌 지정예외 범위 축소 및 판단기준 객관화(61조 6항)
  - 미수동결계좌 지정예외 범위를 위탁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서 '과실'이 없는 경우로 개선
  - 미수동결계좌 지정예외 판단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경우 미수동결계좌 지정 예외 미적용 근거 마련
    - 세부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함

## 2.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가. 2013/9/13 제정 · 9/17 시행

#### 1) 개정목적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의 제정에 따라 업무규정에서 세칙으로 위임한 코넥스시장의 매매거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 2) 개정내용

- 코넥스시장 업무관련 규정을 시행세칙으로 이관
  - 기존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내 코넥스시장 관련 규정(코넥스시장의 매매거래방법 등)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으로 이관
  
- 추가사항
  - LP호가 제출의무 강화

구분	기존	개정 후
호가수량	100주	100주 및 100만원 이상
제출시점	14:40	14:10

— 사모발행 원활화를 위해 신규상장시 평가가격 결정방법 개선

기존	개정 후
신규상장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기관투자자의 투자가 있는 경우 평가가격으로 인정	신규상장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또는 신규상장 신청일 이후 기관투자자의 투자가 있는 경우 평가가격으로 인정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사모한 실적이 있는 경우	청약권유를 받은 자를 기준으로 50인을 산정하되 총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발행인 경우만 평가가격으로 인정

나. 2013/12/18 개정 · 2014/1/2시행

1) 개정목적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서 미수동결계좌 지정 예외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세칙에 반영

—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주문식별정보를 도입하고, 전산장애 발생에 대비한 시장관리차원에서 호가 효력 불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회원시스템 장애 판단기준을 개선

2) 개정내용

- 위탁증거금 징수 예외적용 배제 규모 등(73조 2항, 18조 4항)

— 위탁증거금 징수 예외적용이 배제되는 결제불이행 규모를 공매도 위반자 사후관리 적용기준 중 규제수준이 가장 중한 위반행위로 함

- 6개월간 위반일수 5일 이상 & 위반금액 10억원 초과

- 미수동결제좌 지정으로 90일간 위탁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는 경우 공매도 위반자 사후관리 적용 배제

□ 보관기관 등의 미결제현황 통보방식 개선(18조 2항)

- 보관기관 등이 예탁결제정보통신망(SAFE+)을 이용하여 회원에게 미결제현황을 통보하는 경우 [업무서식 1]에 따른 통보로 인정

□ 주문입력매체 식별정보 추가(7조 1항, 68조 3항)

- 주문입력매체 식별정보 중 IP 주소의 효용성 저하, 이동형 주문 매체의 확산 등을 감안하여, MAC 주소를 식별정보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호가 효력 불인정 근거 마련(11조 1항)

- 시장관리 차원에서 호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호가의 효력을 불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회원시스템의 장애 판단기준 개선(3조 3항)

- 장애가 발생한 회원의 거래량이 전체의 75%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시장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회원시스템의 장애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3.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 가. 2013/9/11 제정·시행

##### 1) 제정목적

-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에서 분리된 별도의 증권시장으로 규정되고, 증권시장별로 별도의 상장규정 운영이 허용됨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을 제정하기 위함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코넥스시장 관련 규정은 폐지

##### 2) 주요 제정내용

###### 목적(1조)

—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정의(2조)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으로 명정하는 등 상장규정 중 주요 용어에 대해 정의

###### 적용기준(3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외에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제출을 허용

□ 지정자문인 선임 등(4조)

-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신청기업 및 상장기업에게 지정자문인 선임 의무를 부과

□ 지정자문인 자격(6조)

- 지정자문인을 선정하기 위한 지정자문인 자격요건 및 지정자문인 자격유지 요건을 규정

□ 지정자문인 자격의 심사(7조)

- 지정자문인 자격유지 여부에 대한 정기·수시심사와 자격취소 등 조치근거를 마련

□ 지정자문인의 의무(8조)

- 지정자문인의 윤리 및 책임 강화를 위해 지정자문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

□ 신규상장신청(12조)

- 신규상장 신청시기(상장희망일 15일 전) 및 신규상장신청서류(상장적격성보고서 포함)를 규정

□ 신규상장심사요건(13조)

- 신규상장신청기업의 상장요건(재무요건, 비재무요건 및 질적심사요건)을 규정

- 신규상장승인(15조)
  - 신규상장 신청승인·결과통지 등에 필요한 절차(결과통지 연기 사유 및 절차 포함 등) 및 결과통지 시기와 신규상장 신청기각 사유 등을 규정
  
- 기업설명회 개최의무(22조)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설명회 개최의무(반기 1회)를 명정
  
- 기업현황보고서 및 공시(25조)
  - 지정자문인에 거래소의 전자공시매체 및 지정자문인의 홈페이지 등에 상장적격성보고서와 기업현황보고서 등의 공시의무를 부과
  
- 매매거래정지 및 재개(27조)
  - 상장기업의 상장폐지사유 해당시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정지 및 그 사유해소시 종목의 매매거래재개 근거를 마련
  
- 상장폐지(28조)
  - 기업존폐 및 상장기업 의무위반 등과 지정자문인 미보유(30명영업일) 및 기업설명회 미개최(2반기 연속, 3년내 4회이상) 등을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
    -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에서 분리된 별도의 시장으로 규정됨에 따라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이전상장을 상장폐지 사유에 추가

□ 기간의 계산(34조)

- 기간의 계산을 위한 기준을 마련
  -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세칙에 위임

□ 코넥스시장 심의위원회 구성(36조)

- 코넥스시장 주요 업무를 전담 심의하는 위원회(코넥스시장 상장 공시위원회)를 설치

**나. 2013/11/13 개정 · 11/14 시행**

**1) 개정목적**

- 자본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sup>56)</sup>에 따라 신규상장요건 및 상장폐지기준 등에 규정되어 있는 반기·분기보고서 제출 및 사외이사·상근감사 선임의무 요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정의 삭제(2조 8항~9항)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정의를 삭제
  
-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 요건 삭제(13조 1항 6호~7호)
  - 신규상장요건으로서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 요건을 삭제

---

56) 2013.11.14.

- 사외이사 등의 신고 삭제(23조)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선임·해임·퇴임 등의 경우 거래소 신고의무를 면제
  
- 상장폐지기준 중 분·반기보고서 미제출, 사외이사수 미달 및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상장폐지 기준 삭제(28조 1항 1호, 3호~4호)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분반기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외이사수 미달(이사의 25% 이상)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의 경우 상장폐지하는 기준을 삭제
  
- 개선기간 부여법인의 상장폐지사유 변경(28조 1항 7호)
  - 개선기간이 부여된 법인의 상장폐지 사유를 '반기 감사의견 비적정'에서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변경
    - 개선기간이 부여된 법인: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기준에는 해당되나 감사인의 해당사유 해소 확인서를 받아 개선기간이 부여된 법인

## 4.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가. 2013/9/13 제정 · 9/17 시행

#### 1) 제정목적

-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 등을 위한 상장규정의 제정됨에 따라 시행세칙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2) 주요 제정내용

##### 목적(1조)

- 시행세칙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등(3조)

-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기재 사항을 규정

##### 지정자문인 자격요건(7조)

- 지정자문인 자격요건 중 신규상장실적 및 인적 요건을 규정
  - 자본총계 1조원 이상(미만): 신규상장실적 5사(1사), 업무담당자 4인(2인)
- 지정자문인 자격의 질적심사 기준을 규정
  - 질적심사 기준은 [별표1] 에 위임

- 신규상장신청 서류 등(12조)
  - 신규상장신청서 및 상장적격성 보고서 등 서식을 규정
  
- 신규상장심사결과의 취소(15조)
  - 상장승인 취소사유로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의 해지’ 등을 추가
  
- 기업현황보고서의 기재사항 등(21조)
  - 기업현황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시한(해당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 이내)을 규정
    - 기업현황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을 해당 사업연도의 반기 당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으로 한정
  
- 매매거래정지 및 재개(23조)
  - 상장폐지요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요건 또는 그 밖의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하고, 매매거래정지 사유 해소시 매매거래를 재개
  
- 상장폐지기준의 적용(24조)
  - 횡령·배임, 기업회계기준 위반, 주된 영업정지 및 그 밖의 상장폐지 사유에 준하는 사유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

□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사기준 등(25조)

- 불성실공시, 회생절차개시 신청, 상장서류의 허위 기재나 누락 또는 그 밖의 상장폐지 사유에 준하는 사유 등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규정

□ 기간의 계산(29조)

- 기간의 계산시 기간 초일 불산입, 일은 영업일, 월 또는 연은 역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규정의 적용시역(반기감사보고서 제출일 등) 또는 매매일(정리매매기간 등) 기준으로 산정

**나. 2013/11/13 개정 · 11/14 시행**

**1) 개정목적**

- 분기 및 반기보고서 제출의무 및 사외이사·상근감사 선임의무 면제에 따른 상장규정 개정에 맞추어 상장규정에서 세칙에 위임된 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개선기간부여 기간의 연장(27조 4항 1호)

-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나 감사인의 해당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법인에 부여하는 개선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

- 반기보고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다음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기준 해소 여부를 확인

□ 개선계획 이행 점검서류에서 분반기보고서 제외(27조 5항)

-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등 개선계획 이행 여부 점검서류에서 분반기보고서를 제외

□ 신규상장 시 중소기업 증빙서류 변경(12조 2항 11호)

- 신규상장 시 중소기업 증빙서류를 법인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중소기업검토표에서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증빙서류로 변경

□ 그 외 사항(상장서식 4, 상장적격성보고서)

- 상장적격성보고서의 지정자문인의 상장적격성에 대한 종합의견 중 외형요건 충족여부에서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항목을 삭제

## 5.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 가. 2013/9/11 제정 · 9/17 시행

#### 1) 제정목적

- 자본시장법 391조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 · 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2) 주요 제정내용

### □ 제1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신고 등

#### —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적용기준, 공시의무의 성실히행과 책임, 신고 및 서류제출방법(1조~5조)

#### — 제2장 공시의무

- 공시신고 사항, 자율공시, 조회공시, 미확정공시,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 사업보고서등 신고서 제출(6조~11조)

#### — 제3장 불성실공시

-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불성실공시의 적용 예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절차 등,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등(12조~16조)

#### — 제4장 상장법인 관리

- 매매거래의 정지, 시장신고 사항, 거래소의 공시, 시장안내사항, 공시유보, 기업설명회 관련자료의 신고, 공시책임자 및 공시대리인의 지정, 내부정보관리, 공시세부사항(17조~25조)

### □ 제2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등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등

#### —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적용대상 전자문서, 전자공시시스템의 운영(26조~29조)

#### — 제2장 전자문서의 작성 및 제출

- 전자문서 제출인의 등록, 전자문서의 제출 등, 전자문서의 접수 및 통지, 정정문서의 제출, 제출인 외의 자가 작성하는 문서, 전자문서의 제출 부수, 전자서명의 효력등, 전자공시시스템의 장애(30조~37조)

- 제3편 집합투자업자등의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
  -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공시의무의 성실히행 등, 신고 및 서류제출방법, 공시책임자의 지정(38조~42조)
  - 제2장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내용의 공시
    -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내용의 공시(43조)
  - 제3장 불성실공시
    - 불성실공시 유형, 불성실공시 사실의 공표(44조~45조)
  
- 제4편 보칙
  - 공시기간의 계산, 공시문안의 정정, 시행세칙(46조~48조)

**나. 2013/11/13 개정 · 11/14 시행**

**1) 개정목적**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해 반기 및 분기보고서 제출의무의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이 예정<sup>57)</sup>됨에 따라 이를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수시공시의무 중 반기검토(감사)보고서상 의견 부적정 등 사유 삭제 (6조 5호 나목)

---

57) 2013.11.14.

- 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고 이에 대한 검토(감사)보고서상 의견도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사항이 아니므로 공시의무 면제

제출의무 있는 신고서 중 반기 및 분기보고서 삭제(11조)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반기 및 분기보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사항(165조) 및 동 시행령 개정사항(176조)의 내용을 반영

매매거래정지 사유 중 반기검토(감사)보고서상 의견 부적정 등 사유 삭제(17조 2항)

- 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고 이에 대한 검토(감사)보고서상 의견도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사항이 아니므로 매매거래정지사유에서 삭제

## 6.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가. 2013/9/13 제정 · 9/17 시행

#### 1) 제정목적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에서 시행세칙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 제정내용

-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정의, 전문투자자의 범위, 공시 매체를 규정하고 있음
  - 1조~4조
  
- 제2장은 공시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공시사항 신고시기 의제, 상대방에 대한 정보, 시가배당률, 변경후 최대주주 정보 등 신고, 자율공시, 조회공시 요구방법 등을 규정
  - 5조~10조
  
- 제3장은 불성실공시에 관한 내용으로 공시번복,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 절차 등을 규정
  - 11조~12조
  
- 제4장은 상장법인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시장안내사항 공시, 기업설명회 개최와 관련한 내용의 신고, 공시책임자 및 공시대리인 신고·교육 등의 규정
  - 13조~16조
  
- 제5장은 보칙으로 전자문서 제출인의 등록, 공시기간의 계산 등을 규정
  - 17조~18조

## 나. 2013/11/13 개정 · 11/14 시행

### 1) 개정목적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해 반기 및 분기보고서 제출의무의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이 예정<sup>58)</sup>됨에 따라 이를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2) 개정내용

- 자원개발 진행사항 신고시기 중 반기보고서 제출 시 제외(9조 12호)
  - 자원개발투자 자율공시를 한 경우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후 7일 이내에 그 진행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므로 반기보고서 제출 시는 제외

## 7.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지침

### 가. 2013/11/13 제정 · 11/14 시행

#### 1) 제정목적

- 코넥스시장에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한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13조의 요건을 심사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58) 2013.11.14.

2) 주요 제정내용

- 총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 제1장 총칙
    - 목적
    - 정의
    - 복무수칙
  - 제2장 상장심사 방법
    - 상장심사의 방법
    - 상장심사 기초자료
    - 상장심사자료의 요청
    - 면담
    - 현장답사
  - 제3장 상장심사 절차
    - 상장심사 기간
    - 심사요건의 적용
    - 심사결과 회의
    - 심사결과 통지
    - 신규상장신청의 철회
  - 부칙
    - 이 지침은 시행전 신규상장신청을 한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
    - 종전의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지침에 따른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행위로 간주하고 종전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지침은 폐지

## 8.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 가. 2013/11/13 제정 · 11/14 시행

#### 1) 제정목적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28조 2항, 29조, 30조, 같은 규정 시행세칙 24조 부터 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수행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 제정내용

- 총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 제1장 총칙
    - 목적
    - 정의
    - 심사방법
    - 심사시기
    - 심사일정 등 통지
  - 제2장 실질심사방법
    - 심사자료의 요청
    - 현지조사
    - 심사요건의 적용
  -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

- 위원회의 소집
- 위원회의 심의
- 의견진술
- 상장폐지의 통보
- 이의신청
- 이의신청 심의
- 개선계획 이행성과 심의
- 개선계획 중간 점검

## 9.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운영세칙

### 가. 2013/11/4 제정 · 시행

#### 1) 제정목적

- 코넥스시장 상장 및 공시업무 등의 주요사안을 심의하는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 제정내용

-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전 지정자문인 선정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행위는 본 세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하며 종전의 지정자문인 선정위원회 운영세칙은 폐지

□ 위원회 소관사항(3조)

- 지정자문인 선정 및 자격취소, 상장폐지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부과벌점 등에 대한 심의를 소관사항으로 규정

□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자격(4조~5조)

- 위원 위촉절차 및 결격사유를 명시하여 절차적 투명성 확보
- 외부전문가 6인 및 코넥스시장 업무담당 임원 등 7인으로 구성
  - 학계, 법률, 회계, 중소기업, 벤처금융, 전문투자자 등
- 결격사유
  - 자본시장법 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 이상의 조치를 받은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최근 2년 이내에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일부업무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법인 등에 소속된 자
  - 최근 2년 이내에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 등을 받은 자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징계 등을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변호사
  - 금융위원회로부터 징계 등을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
  -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위원의 해촉사유(6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함

-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에 결격사유를 알게 되었거나 해당하게 된 경우
-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위원 위촉시 제출한 학력·자격·경력과 관련된 내용이 허위인 경우
-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에 비밀유지의무, 청렴유지의무,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 연임제한(4조 3항)

-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을 1년 단위, 2회 이내로 제한하여 이해관계자와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 윤리서약서 제출 의무화(4조 4항)

- 위원의 청렴유지의무 준수를 위하여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윤리의식을 제고

□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장치 마련(9조)

- 위원과 이해관계 가능성이 있는 심의사항에 대한 제척 및 회피 근거를 명시하여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
  - 위원,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이 소속된 회사가 심의대상법인 또는 심의대상법인의 관계회사의 주주(소액주주는 제외), 채권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심의대상법인 또는 심의대상법인의 관계회사의 현직 임직원이거나 또는 전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위원이 심의대상법인의 임직원,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 친족관계인 경우
- 4조 1항 1호 가목에 따른 위원의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이 관장하는 조직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법인에 대해 컨설팅, 경영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 경우
- 4조 1항 1호 나목에 따른 위원의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이 관장하는 조직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법인에 대해 소송을 수임했거나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경우
- 4조 1항 1호 다목에 따른 위원의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이 관장하는 조직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법인에 대해 회계감사에 참여하거나 회계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된 회사가 심의대상법인과 상당한 경쟁관계 혹은 제휴관계에 있는 경우
- 그 밖의 심의에 있어서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 IV. 파생상품시장규정

### 1.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가. 2013/7/3 개정 · 9/30시행

#### 1) 개정목적

- 알고리즘거래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알고리즘거래자의 대량착오거래로 인한 부정적 시장충격을 방지하고 시장의 안전성을 제고
-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험노출액 관리를 강화하여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고, 유지위탁증거금제도의 적용대상을 일원화하여 회원과 위탁자의 혼란을 최소화
- 미국달러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방법 등을 개선하여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시장참가자에게 환위험관리 수단을 제공
- 외부충격 등에 의한 시황급변시 장중추가증거금을 부과하여 결제위험을 적시에 관리하고, 청산결제제도의 국제정합성을 제고

## 2) 개정내용

### 가)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 회원의 알고리즘거래계좌에 대한 신고 및 거래소의 계좌단위호가처리 기능 신설(156조의3)

— 알고리즘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착오거래, 과다호가 등 부정적 영향을 관리하기 위하여 알고리즘거래를 행하는 파생상품계좌를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 알고리즘 오류, 시스템 장애 등의 발생시 회원의 신청으로 해당 계좌에서 제출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 접수를 차단하는 '계좌단위호가처리' 기능 도입

#### 알고리즘거래

사전에 정한 일정한 규칙(알고리즘)에 따라 투자 판단, 주문·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거래

### 나) 누적호가수량한도 신설

□ 계좌별로 제출할 수 있는 미체결 호가수량 누계의 최대치를 설정하여 개별적으로 적합한 호가를 착오로 반복 제출할 경우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 마련(71조 2항)

— 호가수량한도

- 호가 당 지정할 수 있는 수량의 최대치

— 누적호가수량한도

- 파생상품계좌당 제출할 수 있는 미체결 호가수량 누계의 최대치

## 다) 과다호가부담금 부과

□ 체결률이 낮은 호가건수를 과다 제출한 회원에게 부담금 부과(111조, 156조의2)

— 거래소시스템의 속도지연, 장애발생 등을 초래하는 호가 제출을 억제해 전체 시장참가자의 편익 증대

- 거래소는 호가폭주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의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음
- 회원은 거래의 실적 대비 과다한 호가건수를 제출한 파생상품 계좌에 대한 과다호가부담금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해당 위탁자로부터 과다호가부담금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함
- 과다호가의 접수제한, 과다호가부담금의 부과 대상·액수·방법 및 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 위임

## 라) 사후위탁증거금계좌 위험관리 강화(111조, 133조, 137조)

□ 위험노출액한도를 예탁총액의 10배에서 5배로 축소하고, 한도 초과시 회원의 수탁거부의무를 정하여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

— 회원은 위험노출액 한도를 초과한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을 거부하여야 함

- 단,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사후위탁증거금계좌에 대하여 거래유무 및 형태에 관계없이 사후위탁증거금만 부과하여 회원 및 기관투자자의 혼란을 최소화

마) 미국달러옵션거래 권리행사결제방법 변경

□ 권리행사결제방법 변경(55조)

— 기존 '실물인수도결제방식'에 의할 경우 실물인수도 부담과 장외 거래와의 결제방식 차이 등이 거래부진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시장참여자에게 익숙한 '현금결제방식'으로 변경

□ 현금결제방식에 따른 제도 변경(4조, 54조, 55조, 100조, 103~105조, 111조, 147조~149조)

— 현금결제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라 최종거래일의 거래종료시간,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권리행사결제일을 변경

바) 장중추가증거금 부과

□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93조의2, 107조, 108조)

— 결제회원에 대하여 정규거래시간 중 거래증거금을 추가적으로 산출·부과하여 결제위험을 적시에 관리함으로써 결제안정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

- 장중추가증거금을 부과 받은 경우 결제회원은 장중추가증거금 이상의 금액을 세척이 정하는 시한까지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함
- 매매전면회원은 장중추가증거금 이상에서 지정결제회원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매매전면회원 장중추가증거금으로 세척이 정하는 시한까지 해당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여야 함
- 회원은 장중추가증거금 및 매매전면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을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음
- 장중추가증거금 산출·부과 및 예탁방법, 그 밖에 장중추가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함

□ 장중추가증거금 부과해제(93조의3)

- 거래소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의 변동 등으로 장중 추가증거금의 예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중추가 증거금의 부과를 해제할 수 있음
- 거래소가 결제회원에 대한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를 해제하는 경우 지정결제회원은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를 해제 하여야 함

사) 그 외의 사항

□ 파생상품시장의 기세는 시장가격과 괴리된 경우가 많아 기준가격 또는 정산가격으로 사용이 곤란하여 이를 삭제(2조)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의 대응증권 관련 내용의 불필요한 재열거 삭제(128조)

□ 그 외 조문 정비(22조, 27조, 71조, 73조, 82조의7, 94조, 94조의2)

**나. 2013/9/11 개정 · 9/17 시행**

**1) 개정목적**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의 제정에 따른 대응증권의 종류 추가 및 위임 내용 추가

## 2) 개정내용

- 대용증권의 종류 추가(128조 1항 2의2, 2항)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증권을 추가
  - 2항 중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및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으로 변경

## 2.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가. 2013/3/19 개정 · 4/1 시행

#### 1) 개정목적

- 돈육선물 및 미니금선물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본예탁금제도를 일부 개선하고 코스닥시장 내 상장지수펀드시장 관련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업무규정 시행세칙 상 관련내용을 정비

#### 2) 개정내용

- 돈육선물 및 미니금선물거래의 기본예탁금 인하(122조)
  - 돈육선물거래 또는 미니금선물거래만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위탁자에게 적용되는 최소기본예탁금액을 기존 500만원의 1/10 수준인 50만원으로 인하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등(124조 3호, 127조 3항)
  -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조항 변경 및 단서 삭제

**나. 2013/5/9 개정 · 5/27 시행**

**1) 개정목적**

- 통화선물 이론가격 산출에 이용되는 LIBOR금리 중 일부 금리의 발표 중단이 예정되어 통화선물 이론가격 산출방식의 일부를 변경하고 통화선물시장 협의대량거래 신청을 위한 최소수량을 조정하여 중소수출기업 등 시장참여자 편의를 도모

**2) 개정내용**

- 통화선물 이론가격 산출방식 일부 금리 변경(별표12)

기존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th>f^f</math> - 미국달러선물: 영국은행협회(BBA)에서 발표하는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간 매도금리(LIBOR)를 선행보간하여 산출된 금리</li> <li>• 엔선물: 일본은행협회(JBA)에서 전일 11시 기준으로 발표하는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만기 동경은행간 매도금리(TIBOR)를 선행보간하여 산출된 금리</li> <li>• 유로선물: 유럽은행협회(EBF)에서 중앙유럽시간 11시 기준으로 발표하는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만기 유럽은행간 매도금리(EURIBOR)를 선행보간하여 산출된 금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th>f^f</math> - 미국달러선물 및 미국달러플렉스선물: 영국은행협회(BBA)에서 발표하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만기 런던은행간 매도금리(LIBOR)를 선행보간하여 산출된 금리</li> <li>• 엔선물: 일본은행협회(JBA)에서 전일 11시 기준으로 발표하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만기 동경은행간 매도금리(TIBOR)를 선행보간하여 산출된 금리</li> <li>• 유로선물: 유럽은행협회(EBF)에서 중앙유럽시간 11시 기준으로 발표하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만기 유럽은행간 매도금리(EURIBOR)를 선행보간하여 산출된 금리</li> </ul>

통화선물 협의대량거래 최소신청수량 조정(70조)

- 통화선물 협의대량거래 최소신청수량을 1,000계약에서 미국달러 선물은 500계약, 엔선물 및 유로선물은 200계약으로 조정

그 밖의 조문 정비(74조)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다. 2013/6/24 개정 · 7/1 시행**

**1) 개정목적**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에서 코넥스시장 상장주권에 대한 대응 증권 사정비율 등이 확정됨에 따라 동 주권에 대한 사정비율 등을 정하기 위함

**2) 개정내용**

- 코넥스시장 상장주권의 사정비율을 기준시세의 60%로 정함(127조)

**라. 2013/7/8 개정 · 7/9 시행**

**1) 개정목적**

-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회원과생상품시스템에 자동호가취소기능을 탑재하도록 하여 시장안정성 강화

- 통화옵션거래의 최종결제방식, 최종거래일의 거래시간 등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실물인수도 등 관련 조문 정비
-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험노출액 관리 및 유지위탁증거금제도의 적용대상 일원화 등 제도가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확정

## 2) 개정내용

### 가)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

- 알고리즘거래계좌 신고(164조의4, 별지14<sup>59)</sup>)
  - 알고리즘거래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해당 계좌번호, 회원업무담당자연락처 등을 신고
    - 시행세칙 시행일(2013.7.9)부터 시스템 개발일(2013.9.30)전까지는 별지 14의 서식으로 문서 접수
  - 알고리즘거래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계좌의 당일 호가건수가 2만건 이상<sup>60)</sup>인 경우 회원에게 소명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여 신고 도모
    - 해당 회원은 통지받은 날의 다음 거래일 장종료 시까지 해당 파생상품계좌가 알고리즘거래를 행하는 계좌가 아님을 밝히는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

---

59) 알고리즘거래계좌 신고서

60) 글로벌거래와 협의거래는 제외

□ 알고리즘거래계좌 유형코드 신설 및 유형코드의 착오입력 시 정정(77조, 별표6)

행 사 가 격  등	코스피200옵션거래	행사가격의 정수
	주식옵션거래	행사가격의 설정일이 빠른 순서(행사가격의 설정일이 동일한 날인 때에는 행사가격이 낮은 순서)로 001부터 오름차순으로 부여한 숫자
	통화옵션거래	행사가격의 1원 단위 자리수 이외의 정수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방법에 대하여 거래소가 부여하는 번호
국적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가코드(ISO3166-1)	
계좌유형	위탁계좌: 31 자기계좌: 41 시장조성계좌: 42 차익·헤지전용계좌: 51 알고리즘거래계좌: 61	

□ 누적호가수량한도 설정(61조, 별표17의2)

- 누적호가수량한도를 알고리즘거래계좌 여부에 따라 달리 정하고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명시
  - 회원 자기거래계좌와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 포함), 코스피200옵션거래로 적용대상을 한정
- 회원은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대량거래(알고리즘거래 제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원 위험관리부서가 심사하여 일시적으로 누적호가수량한도를 상향 조정 가능
  - 이 경우 회원은 위험관리부서의 심사에 관련된 서류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함

## □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자동호가취소기능 탑재 의무(117조의3)

- 위탁자의 요구 시 회원이 자동으로 취소호가를 거래소에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자동호가취소기능 설치를 의무화

## □ 과다호가부담금의 부과 기준 및 산정 방법 등(164조의3)

- 과다호가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 산정 및 납부 방법을 정하고, 상품별로 최대 월 2회의 면제 기준을 마련
- 과다호가부담금은 파생상품계좌별로 당일 정규거래시간 동안의 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 또는 코스피200옵션거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
  - 총호가건수가 2만건 이상 10만건 미만인 경우: 총호가건수를 총약정수량으로 나눈 값이 20이상일 것
  - 총호가건수가 10만건 이상인 경우: 총호가건수를 총약정수량으로 나눈 값이 10이상일 것
- 과다호가부담금의 액수는 파생상품계좌별로 산출하되, 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 또는 코스피200옵션거래당 100만원
- 거래소는 과다호가부담금을 파생상품계좌별로 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 또는 코스피200옵션거래 당 각각 월 2회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음
  - 단, 총호가건수가 2만건 이상 10만건 미만인 경우의 값이 100 이상이거나 총호가건수가 10만건 이상인 경우의 값이 50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거래소는 당일 장종료 후 과다호가부담금을 해당 회원에게 통지

- 이 경우 회원은 전단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거래일 이내에 과다호가부담금을 사전에 통지한 거래소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나) 통화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방법 변경

□ 통화옵션거래의 최종거래일 변경 신설(29조의2)

- 규정에서 정한 최종거래일이 장외시장인 외환시장(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비영업일인 경우 최종거래일의 직전 거래일로 변경
  - 단, 해당 종목의 거래개시일 이후에 최종거래일이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비영업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거래일로 함

□ 통화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신설(29조의3)

- 규정에서 정한 매매기준율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행사일 다음 영업일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에서 최초로 공표하는 매매기준율을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으로 정하도록 함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가 그때마다 정하는 가격으로 함

□ 통화옵션거래의 최종약정가격 결정을 위한 거래방식 변경(50조, 63조)

- 외환시장의 매매기준율을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으로 사용함에 따라 최종약정가격 결정을 '단일가거래방식'에서 '접속거래방식'으로 변경하고, 조건부지정가호가 입력을 제한함

- 회원 및 위탁자의 권리행사 신고시한 조정(106조, 157조, 별지 9호 서식)
  - 최종거래일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거래시간과 관련된 기존 세칙상 단서를 삭제
  
- 통화옵션거래의 기본예탁금 조정(122조)
  - 기존 돈육선물거래 또는 미니금선물거래에 대한 기본예탁금 인하 거래에 통화옵션거래 추가
  
- 통화옵션거래의 기초자산 기준가격을 현물환거래에서 형성된 최종환율에서 매매기준율로 변경(별표1)
  
- 통화옵션거래 행사가격 코드 변경(별표6)
  
- 미국달러옵션이론가격에 적용되는 금리 변경(별표17)
  
- 실물인수도 관련 조항에서 통화옵션거래를 제외(27조, 28조, 109조, 112조의3, 138조, 144조, 145조, 154조, 158조)
  
- 다) 적격기관투자자 유형요건 추가
  - 기관투자자 중심의 시장 육성과 해외 기관투자자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적격기관투자자의 유형요건을 추가(132조)

- 알고리즘거래계좌를 보유한 국내·외 법인 중 회원의 위험관리부서가 심사하여 선정한 법인

라)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험관리 강화 등

□ 위험노출액한도 초과시 수탁거부 예외 및 해제(132조의2)

- 위험노출액을 감소시키는 반대거래의 수탁을 허용하고, 위험노출액이 감소되거나 위탁자의 예탁 총액의 증가로 위험노출액한도가 증가된 경우에는 수탁 거부를 해제
  -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한 위탁자가 위험노출액을 위험노출액한도 미만으로 감소시킨 경우 또는 예탁총액을 증가시켜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해당 위탁자는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유지위탁증거금 체계 정비(146조, 150조~151조)

- 사후위탁증거금계좌는 사후위탁증거금제도만 적용

마) 그 밖의 사항

□ 저유동성 상품 관리 강화를 위한 상장폐지예고상품 지정기준 변경(161조)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상장폐지예고상품으로 지정
  - 유동성관리상품 지정일로부터 4년(시장관리상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이 경과한 경우

- [별표21]에 따른 평가점수 합계가 6점 미만인 경우

- 그 외 조문 정비(8조~9조, 11조, 49조의2, 72조의12, 79조, 79조의7, 81조, 105조, 124조, 171조, 별표14, 별표17의2, 별표18, 별표19, 별표20, 별표24)

#### 마. 2013/9/17 개정 · 9/17 시행

##### 1) 개정목적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의 제정에 따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의 조문을 정비

##### 2) 개정내용

- 대용증권 기준시세 산출관련 조문정비 등(124조, 별지 8호 서식)
  - 코넥스시장상장주권의 대용가격 공표 전 대용증권 기준시세 산출 기준 추가 및 거래증거금 대용증권 예탁신고서 수정

#### 바. 2013/12/30 개정 ·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 시행

##### 1) 개정목적

- 정부의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시장감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맥(MAC)주소를 추가 수집하기 위함

## 2) 개정내용

### 맥(MAC)주소 호가입력사항 추가(48조 1항 15호)

- 기존은 주문입력매체 식별번호로 아이피(IP) 주소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IP 등의 효용성이 저하되어 새로운 주문입력매체 식별정보 필요
  - 유동 IP 및 IP 위조·변조 증가에 따라 IP정보의 신뢰성 저하
- 개정 후는 주문입력매체 식별정보로 유용성이 높은 맥(MAC)주소를 호가입력사항에 추가

## 3.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 가. 2013/5/16 개정 · 5/20 시행

#### 1) 개정목적

- 석유사업자의 참가자격에 관한 미비점 보완과 매매당사자의 변경 및 결제정보 등의 입력대행에 관한 사항 변경

#### 2) 개정내용

##### 참가자의 자격(3조 2항)

- 참가자가 참가자 자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하여 기존 참가자 자격에서 임의 탈퇴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과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 거래보증금의 예탁(30조)

- 참가자는 호가를 제출할 때마다 또는 미리 호가수량단위당 150만원의 거래보증금을 거래소 명의의 보증금계좌에 현금으로 예탁하여야 함
  - 단, 석유제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참가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때까지 거래보증금을 예탁하지 아니함

## □ 매매당사자의 변경(47조의2)

- 착오매매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참가자는 거래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하여 전자상거래 참가자 중 하나를 선정하여 매매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음
- 위에 따라 매매당사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거래당일에 거래소에 매매당사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 매매당사자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등은 변경신청참가자와 변경참가자간에 직접 수수하는 방법으로 변경신청참가자가 부담

## □ 결제정보 등의 입력대행(48조의2)

- 매수자는 통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호가입력프로그램 접속이 곤란한 경우, 전화 등을 통하여 거래소에 참가자단말기 입력을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거래소는 결제정보 등의 입력대행을 요청받은 경우에 해당 요청사항과 접수시간을 기록하고 해당 요청사항을 호가입력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음

-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 거래소가 결제정보 등의 입력을 대행하는 경우 참가자의 요청사항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입력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맞게 정정할 수 있음

□ 결제지연 등에 따른 조치(51조)

- 매도자와 매수자가 매매체결일부터 기산하여 세 번째 매매거래일의 18시까지 결제를 이행하는 사항을 거래소에 통지
  - 매수자가 석유제품의 인도완료를 거래소에 통지한 때에는 매수자가 납부한 결제대금은 매도자에게 지급하며 매도자가 예탁한 거래보증금을 매수자에게 지급
- 거래소는 매수자가 매매당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보증금을 거래상대방인 매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거래보증금을 예탁한 매수자에게 환급
- 매도자가 매매당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보증금을 거래상대방인 매수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거래보증금을 예탁한 매도자에게 환급

#### 4.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의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 가. 2013/1/10 개정 · 1/1 시행

###### 1) 개정목적

- 석유전자상거래에 공급되는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이 연장<sup>61)</sup>되고 한국거래소가 할당관세 적용 추천기관으로 재지정<sup>62)</sup>됨에 따라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을 개정

###### 2) 개정내용

- 추천대상품목 및 한계수량(2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전자상거래 공급용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용 휘발유 70만 배럴, 자동차용 경유 300만 배럴에 한하여 할당관세 적용물량으로 추천
    -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별 추천수량은 휘발유 11.6만배럴, 경유 50만배럴을 넘을 수 없도록 할 수 있음
    - 알뜰주유소 공급수량은 전량 우선추천하며 총 신청수량이 추천차수별 추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각 신청자의 신청수량에 비례하여 추천

6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288호)

62) 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제2012-556호)

**할당관세(quota tariff)**

할당관세란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며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 안정이나 물자수급 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 신청자별 추천수량 제한(5조)

- 지식경제부장관이 유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일정기간 내의 신청자별 추천수량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할 수 있음

## V. 장외파생상품청산업무규정

### 1.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 가. 2013/9/11 제정

##### 1) 제정목적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2) 제정내용

-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은 전체 10장 134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정의, 휴업일, 청산업무의 중단 및 재개 규정을 규정
    - 1조~4조
  - 제2장은 청산대상거래의 내용과 적격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요건을 규정
    - 5조~6조
  - 제3장은 청산회원에 관한 내용으로 청산회원의 종류 및 자격, 가입요건, 심사 및 승인, 탈퇴, 변경 등을 규정
    - 7조~44조
  - 제4장은 채무부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 45조~53조

- 제5장은 청산의 수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
  - 54조~63조
- 제6장은 청산약정거래의 결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
  - 64조~79조
- 제7장은 증거금과 대응증권, 외화 및 외화증권의 종류 및 평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
  - 80조~97조
- 제8장은 청산약정거래의 조기종료, 당사자변경 및 이관 등을 규정
  - 98조~100조
- 제9장은 결제불이행의 처리에 관한 규정
  - 101조~117조
- 제10장은 청산업무의 관리에 관한 규정
  - 118조~134조

□ 부칙

- 이 규정은 거래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장외파생상품거래청산회사로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
  - 단, 제12조, 제24조 및 제115조의 규정은 201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119조의 규정은 청산약정거래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 VI. 시장감시규정

### 1. 시장감시규정

가. 2013/9/13 개정 · 9/17 시행

#### 1) 개정목적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의 제정<sup>63)</sup>에 따라 시장감시규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함

#### 2) 개정내용

- 회원의 코넥스시장 수탁거부 정보에 대한 타 회원 공유 근거 정비(6조 5항)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 코스닥시장 업무규정과 구분되어 제정됨에 따라,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의 수탁 거부 사항을 인용
    - 59조 1항, 3항: 법상 불공정거래 의심 주문, 공매도 호가 규제 관련 위반 주문

---

63) 2013.9.17 시행

## 2.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 가. 2013/6/17 개정 · 7/1 시행

#### 1) 개정목적

- 코넥스시장이 개설됨에 따라 코넥스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증권시장에서 운영 중인 시장경보제도 중 일부 기준에 대한 적용 제외 또는 유예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감시를 위한 풍문수집 범위에 코넥스시장의 공시의무 사항 및 자율공시사항 포함
  
- 회원제재금 부과기준의 개선을 통하여 회원제재의 합리성 및 수용성을 제고하고 퇴직자에 대한 조치수단 확보를 통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동일·유사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 2) 개정내용

- 코넥스시장에 대한 투자주의종목 지정기준(3조)
  - 타 시장과 동일한 기준의 투자주의종목 지정 제도를 운영하되 「소수지점·계좌 거래집중 기준」 및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코넥스시장에 대한 투자경고종목 지정 기준(3조의3)
  - 타 시장과 동일한 기준의 투자경고종목 지정·지정예고 제도를 운영하되, 「장·단기 불건전 기준」 및 「신규상장 후 20일이 미경과한 종목」은 적용하지 않기로 함

- 투자경고종목 지정 기준 중 「주가지수 대비 변동률 기준」의 경우 코스닥시장 종합주가지수의 변동률을 적용
  
- 코넥스시장에 대한 투자위험종목 지정 기준(3조의4)
  - 타 시장과 동일한 기준의 투자위험종목 지정·지정예고 제도를 운영하되 「장·단기 불공정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코넥스시장에 대한 품문수집 근거 마련(7조)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및 자율공시사항에 대한 품문수집 근거를 마련
  
- 코넥스시장에 대한 투자주의종목 지정 적용 유예 근거 마련(부칙 2조)
  - 코넥스시장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코넥스시장 상장종목에 대한 투자주의종목 지정 근거는 두되 시장감시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때부터 적용
  
- 가중사유 존재 시 내부통제 평가에 의한 감경 허용(18조 5항)
  - 1년 내 재발 및 다수위규행위로 동조에 의한 조치가중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내부통제 적정성 평가 결과 감경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도록 허용
  
- 퇴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내용의 통보 및 이행 확인 근거 신설(19조 2항)

— 시감위 징계요구 전에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징계요구의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

- 통보를 받은 회원에게 퇴임·퇴직 임직원에 대한 통지 및 통지결과 등에 대한 결과통보 의무 부과

□ 회원제재금 부과기준 개선(별표1)

— 회원제재금 부과 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증액·감액 요소를 정비

**나. 2013/12/30 개정 · 2014/1/2시행**

**1) 개정목적**

□ 회원주의 사유 중 동일사유로 반복적으로 약식제재금을 부과받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경미한 위규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도입한 약식제재금 제도의 취지를 보장하고, 징계 등의 가중 또는 감경 사유 별로 상이한 규정 형식을 통일하여 가중·감경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회원주의 기준 조정삭제(14조 1항 5호 다목)

— 회원주의 부과 기준에서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동일 사유로 약식제재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를 삭제

- 회원징계 가중·감경 관련규정 정비(18조 1항 3호, 4, 6항)
  - 반복된 약식제재금 부과를 사유로 회원주의 조치한 경우 가중판단에서 0.5회로 계산하도록 한 규정 삭제
  - 사유별로 상이한 가중 또는 감경 범위를 한 단계 이내로 통일

#### 다. 2013/8/26 개정 · 9/30시행

##### 1) 개정목적

- 시장경보제도의 불건전요건과 관련하여 인위적 시세조종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한 조기 시장경고 기능을 강화하고 유효성이 낮은 일부 요건을 삭제하여 시장경보제도의 실효성 강화
- 단기과열종목에 대한 투자경고·위험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적용배제 및 투자위험종목 재지정 등과 관련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2) 개정내용

- 인위적 시세조종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한 투자주의종목 지정기준 마련(3조 4항 6호)
  - 3일간 ① 주가상승률이 15% 이상이고, ② 연계계좌군의 시세영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sup>64)</sup>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이며, ③ 일평균거래량이 3만주 이상인 경우 지정

64) 별도의 기준으로 정함(투자경고·위험종목의 경우에도 상동)

□ 투자경고·위험종목의 지정기준 중 일부 불건전양태 관련 요건(3조의 3 2항 4호 나목, 5호 나목, 3조의4 2항 3호 나목, 4호 나목)

— 기존의 「최고가 호가잔량」 요건을 「연계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요건으로 변경

- 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단기의 경우 2일, 장기의 경우 4일 이상

□ 투자경고·위험종목의 지정해제 기준을 추가(3조의3 5항, 3조의4 4항)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해제 기준>**

기존	개정 후
다음 모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최근 5일간의 주가상승률이 60%(45%) 이상 • 최근 15일간의 주가상승률이 100%(75%) 이상	다음 모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최근 5일간의 주가상승률이 60%(45%) 이상 • 최근 15일간의 주가상승률이 100%(75%) 이상
<추 가>	당일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 단기과열종목에 이미 지정된 투자경고·위험종목의 매매거래정지 관련 기준을 명확화(3조의5~6)

— 단기과열종목에 이미 지정되어 투자경고종목의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정지한 경우와 동일하게 지정해제 전까지 투자경고종목의 매매거래정지 기준을 적용 배제함

— 단기과열종목에 이미 지정되어 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만약 거래정지했을 때의 예상 재개일을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일 및 지정해제일의 기산일로 간주함

## 라. 2013/9/13 개정 · 9/23 시행

## 1) 개정목적

- 정부의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의 한도를 상향하고 포상금 한도 상향으로 포상금 과다지급이 우려됨에 따라 포상금의 중복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타 기관의 포상금 지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
- 코스닥시장 상장·공시·업무규정과 구분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업무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시장감시규정의 관련 조문을 정비

## 2) 개정내용

- 불공정거래 신고 방법에 대해 규정상 명확화(6조의2 1항)
  - 신고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하고 신고내용이 구체적일 것을 요구
- 포상금 한도 상향(6조의3 1~3항)
  - (일반)포상금 한도를 최대 3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소액포상금 한도를 최대 13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특별포상금의 경우 최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
  - (일반)포상금 지급시 소액포상금의 차감지급을 규정상 명확화

-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를 명확화(6조의3 4항)
  - 동일 내용의 신고에 대해 타 기관(금융감독원등)과 포상금이 중복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 코넥스시장에 대한 풍문 수집(7조 2항)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및 자율공시사항과 관련하여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의 해당 조문을 인용
  
- 코넥스시장의 공매도 호가 관련 심리자료 징구(8조)
  - 코넥스시장 공매도와 관련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의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의 인용 조문을 정비
  
- 코넥스시장 관련 약식제재금 부과(23조 1항)
  - 코넥스시장의 자기주식매매, 주문·호가 및 수탁 등에 대한 약식제재금 부과와 관련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및 동규정세칙 인용

### 3.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 가. 2013/5/14 개정 · 5/20 시행

##### 1) 개정목적

- 전문가의 개념을 명확히 마련하고 자문 방법을 구체화하여 분쟁조정을 위한 사실조사 단계에서 사문화 되어 있는 전문가의 자문기능을 활성화

##### 2) 개정내용

- 전문가의 개념 명확화(7조 4항)
  - 분쟁조정심의위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로 전문가의 개념을 명시
  
- 자문 방법의 구체화(7조 5항)
  - 실질적이고 적시적인 자문이 가능하도록 회의, 서면, 전화 등 자문방법을 다양화



## 제4편: 금융투자협회규정

---

- I. 협회규정
- II. 모범규준
- III. 설명서 및 위험고지
- IV. 표준약관



## 제4편 금융투자협회규정

### I. 협회규정

#### 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가. 2013/2/13 개정 · 시행

##### 1) 개정목적

- 기업어음증권 대체목적으로 도입된 전자단기사채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규정 적용사항을 개정

##### 2) 개정내용

- 전자단기사채 거래내역 보고시간 및 보고항목을 기업어음증권과 동일하게 적용(7-2조, 7-5조, 7-12조, 7-14조, 7-15조)
  - 할인·중개를 포함한 전체 거래내역을 거래당일 17시 30분까지 보고

나. 2013/3/29 개정 · 4/1 시행

1) 개정목적

- 금융투자회사의 재산상이익 제공한도 설정과 금융투자분석사 윤리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정비 및 각종 등록신청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 개선

2) 개정내용

- 재산상이익 제공한도 설정(2-65조 3항)
  -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으로 한도(20만원/100만원) 이상의 과도한 재산상이익 제공이 가능한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함<sup>65)</sup>
    - 기존에는 재산상이익 제공 한도(1인기준, 회당 20만원 · 연간 100만원)를 정하고 있었으나, 준법감시인 승인 시 초과 가능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한도 설정
  - 준법감시인 승인으로도 초과할 수 없는 연간한도 설정
    - 투자자에 대해서는 수익기여도에 따른 전략적 마케팅이 필요하나, 그 외의 거래상대방(특히 자산관리자)에 대한 과도한 재산상이익 제공은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발 소지가 있음

거래상대방 (투자자 이외)	500만원(2012년 금융투자회사의 연간 재산상 이익 제공현황 조사결과 반영)
투자자	회사가 연간 당해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 합계액의 10%와 500만원 중 큰 금액(기존 「증권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한 증권사의 재산상이익 제공 한도)

65) 2011년 금감원 검사 지적사항

- 다음의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한도산정 시 제외 가능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회사에 제공하는 경우(감독규정 4-61조 1항 반영)
  -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투자자를 상대로 한 기업설명회와 관련하여 투자대상기업 임직원(IR 담당자 등)에게 제공하는 교통비 및 숙박비

□ 연간 교육시간 축소 및 사이버 윤리교육과정 신설(2-81조 2항)

- 자체 윤리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향후 시간 단축하여 실속 있게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소기의 교육목적을 달성
  - 기존에 금융투자회사는 연간 4시간 이상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
  - 윤리교육 특성상 매년 자체 실시하는 4시간용 윤리교육 콘텐츠 개발의 한계로 인해, 교육시간 축소 등 개선방안 마련 요청 (특히 중소형 증권사)
- 연간 4시간 교육시간을 2시간으로 축소하고 회원사 자체교육 이외에 협회 개설 사이버 교육과정 신설
  - 회원사의 교육과정 선택권 확대를 통한 편의성 도모
  - 애널리스트를 등록한 64사중 62사가 사이버과정 개설희망

□ 보수교육 및 등록교육 이수자의 당해 연도 윤리교육 면제(2-81조 3항)

-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당해 연도는 윤리교육을 면제하고 일정 경력요건으로 최초 등록하는 자는 당해 연도 윤리교육을 면제

- 기존에 금융투자분석사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일정경력<sup>66)</sup>요건으로 협회에 최초 등록하는 금융투자분석사는 '소속회사에서 윤리교육을 10시간'이상 이수해야 했음
- 보수교육 이수과정 총 10시간 중 준법·윤리교육이 2시간 포함되어 있고, 일정경력 요건으로 등록 시 자체 준법·윤리교육을 10시간 받아야하기 때문에 교육 중복 부담이 있었음

□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 서류 정비(2-19조)

- 신분증에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포함하고, 사진 제출 폐지
  - 주민등록증 외에 공적 신분증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사진 징구를 폐지함으로써 신청자의 편의 도모
  - 기존에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사진 등의 신청서류<sup>67)</sup> 제출

□ 전문투자자 지정신청 서류 정비(2-12조)

- 신청서류에 사업자등록증 포함
  - 전문투자자 지정 시 발급되는 확인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는 바, 사업자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징구

---

66) 연구개발·산업동향분석 업무, 채권평가분석업무·펀드평가 업무 등 경력자  
67) 등록 시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증, 위탁계약서, 경력증명서, 사진 등

## 다. 2013/5/31 개정 · 6/3 시행

### 1) 개정목적

- 지정자문인 작성 기업현황보고서의 조사·분석 자료 공표 제한 적용 배제, 투자광고 관련 규정 위반시 '주의촉구'부과 신설, 징계내역 보고대상 확대

### 2) 개정내용

- 지정자문인 작성 기업현황보고서의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 적용 배제(2-29조 1~2항)
  - 기존은 금융투자회사의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큰 경우, 해당법인 주식등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공표(제공 포함)를 금지하거나 공표시 이해관계 명시토록 했음
    - 금융투자회사가 발행주식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 M&A 주선 등의 관련 법인 등
    - 금융투자회사가 발행주식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 계열법인 등
  - 증권사가 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 대해 지정자문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업현황보고서를 작성 및 게시하여야 함<sup>68)</sup>
    - 지정자문인은 동 보고서를 거래소 전자공시매체 및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
    - '기업현황보고서'는 영업·재무상황 및 예측 등을 분석한 자료로써 본회 규정상 '조사·분석자료'에 해당

68)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47조의30

- 따라서 지정자문인이 상장(예정)법인주식을 보유(LP업무, PI 투자)하는 경우 기업현황보고서 공표 금지
  - 지정자문인 역할 수행을 위해 기업현황보고서 공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지정자문 대상법인에 대한 기업현황보고서의 공표 제한 규제적용을 배제하되, 조사·분석자료(기업현황보고서 포함)에 이해관계를 명시(지정자문인임을 명시)

□ 투자광고 관련 규정 위반 시 '주의 촉구' 부과 신설(2-50조)

- 기존은 금융투자회사가 「영업 및 업무규정」 제3장(투자광고) 위반 시 협회는 해당 광고의 시정 또는 사용중단 요구 가능
  - 위규행위에 대한 자율규제위원회 제재(주의, 경고, 제재금 부과 등) 가능
- 협회심사면제광고나 실태점검 등에서 경미한 위반이 적발된 경우 주의환기를 위한 사전적 수단 마련
  - ex) 협회심사 광고안의 무단변경 사용, 협회심사면제 광고물이 투자광고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만들어진 경우(보수, 수수료 미기재) 등
- 광고규정 위반 관련 '주의 촉구' 신설
- 단, 주의 촉구가 누적된 경우 자율규제위원회에 제재를 부의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함
  - 벌점 부과 방식(ex. 주의 촉구 1회당 0.2점 → 1점 이상 시 '주의' 조치)

□ 징계내역 보고대상 확대(2-74조)

- 금융투자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의적 경고(임원) 또는 견책(직원) 이상을 징계한 경우, 협회보고 의무화
  - 징계보고 활용: (회사) 징계보고 → (협회) 전문인력 관련 제재조치(전문인력-등록효력정지, 비전문인력-등록거부) → (회사) 채용 전 사전조회(등록효력정지 여부 등)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 임직원에게 대해 직접 제제한 경우도 협회 보고대상에 추가하여 징계내역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감독기관이 임직원을 직접 제제한 경우에도 해당 회사의 협회 징계내역 보고 의무화

라. 2013/5/31 개정 · 7/1 시행

1) 개정목적

- 투자자 보호 강화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확대와 광고규제 의 현실정합성을 제고하고 투자광고 심사업무 효율화에 기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가) 투자자 보호강화

- 경고문구 가독성 제고
  - 기존 상품별 경고문구 추가 형태로 조문이 축소돼 경고문구가 복잡하고 투자자 가독성은 오히려 저하

- 투자위험을 유형화하여 공통위험 위주로 간소화하되 표시기준을 강화(A4기준 8pt → 9pt)하여 가독성 제고
  - 위험유형: ① 원금손실위험, ② 원금초과손실위험, ③ 강제청산 임의처분위험, ④ 자산가치변동위험 + 상급기관(금융위·금감원) 지침 등

□ 의무표시사항 및 금지행위 체계 개선

- 의무표시사항·금지행위 관련 근거가 각종 공문 및 심사지침 등에 산재, 예측가능성 저하 및 위반시 제재 곤란
  - ELS·채권·월지급식상품 경고문 및 협회심사 면제시 규제공백
- 협회규정으로 일원화 및 공정위의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반영
  - 투자자의 투자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실의 기재 의무화

	기존	개선
경고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량이 많고 복잡</li> <li>• A4기준 8포인트 크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위험 위주로 대폭 간소화</li> <li>• A4기준 9포인트 크기</li> </ul>
의무표시 및 금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정 외 지침 등에 산재되어 있어 위반 시 제재 곤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회규정으로 일원화하여 제재 근거 마련 및 예측가능성 제고</li> </ul>
금지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개항(제2-38조) 및 별표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 인터넷광고 심사지침, 투자자 오인가능 행위(별표10)</li> </ul>

나) 투자자 정보제공 확대

□ 펀드 운용실적 표시방식 개선

- 기존은 보수차감 전의 수익률 기재로 투자자의 실현수익률과 차이 발생(장기로 갈수록 편차확대)
  - 특정펀드 기준 최근 5년 수익률이 보수차감 전(115%)과 보수차감 후(90%)간 25% 괴리(2012.7.7, 머니투데이, “펀드수익률 뺑뺑이 논란” 중)
- 원칙적으로 보수차감 후 수익률을 기재하고 종류형 펀드의 경우에는 보수차감 전 수익률의 병기 허용

□ 다양한 펀드수익률 제공

- 기존 순자산총액 200억원 이상, 설정 1년 이상 펀드에 한해 최근 3개월 이상 수익률 기재 가능
  - 판매사 및 운용사 홈페이지는 관행적으로 1개월 수익률 표시
- 정책지원펀드(퇴직연금·재형펀드 등)는 납입한도 제한으로 규모가 작아 전체 366개 펀드 중 92.3%가 수익률광고 곤란
- 정책지원펀드에 한해 규모요건을 200억원 →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1개월 단위 수익률 표시 허용
  - 단, 1개월 수익률 기재시 유효기간이 3월 → 1월로 단축

	기존	개선
수익률 표시기준	보수차감전 수익률	보수차감후 수익률
수익률 표시요건	운용기간 1년이상, 순자산총액(NAV) 200억원 이상 (예외없음)	정책상품의 NAV요건 우대 (200억 → 100억원)
표시가능 수익률	3개월 미만 수익률 표시 불가 6개월·1년 수익률 의무기재	1개월 단위 수익률 표시 가능 3년·설정이후 수익률 표시한 장기펀드의 유효기간 우대

다) 광고규제 현실정합성 제고

□ 의무고지사항의 탄력적용

- 기존은 지면광고 위주 표시기준(A4기준 8p이상 크기)으로 인터넷 배너, 판촉물 등은 표시 곤란하여 사실상 광고 불가
- 표시공간의 제약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의무고지사항의 탄력기재 허용
  - 전체화면의 10분의1 크기 미만의 인터넷배너·팝업광고의 경우 해당 매체공간(1차화면)이 아닌 연결화면(2차화면)에 의무고지사항 기재허용
  - 한정된 공간에 다수의 펀드를 광고하는 경우 펀드별 세부보수(판매·운용·그 밖의) 생략허용 등

□ 유효기간 개선

- 기존에는 수익률 포함여부 및 매체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하는 등 체계가 복잡하고 유효기간이 최장 1년에 불과
  - 장기간 사용되는 옥외 설치물 광고(이미지광고)의 경우 변경사항이 없어도 연단위 갱신에 따른 제작비용 부담 발생
- 유효기간을 단순화하고 이미지광고 유효기간 폐지

항목		기존	개선
펀드수익률 광고	대중매체, MMF	1개월	3개월
	그 밖의 광고	3개월	
그 밖의 투자광고 (3년이상 장기펀드 수익률광고 포함)		1년 (3개월)	1년
이미지광고		1년	무기한 (사실상 폐지효과)

- 적절한 사후관리를 위해 신용등급, 펀드평가등급(2등급이상) 변동 등 광고 중단사유 추가 및 심사기준일 표기 강조

라) 투자광고 심사업무 효율화

□ 투자광고 범위의 명확화

- 기존의 투자광고 정의가 포괄적이어서 해석에 따라 광고 범위를 달리 하는 등 투자광고 범위가 불명확
  - 투자광고: 금융투자상품이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위업무를 널리 알리는 행위
- 투자광고 범위에서 배제되는 행위를 구체화하여 투자광고 범위의 명확성 제고
  - 배제되는 행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반복적인 통계정보 제공, 투자설명서·자산 운용보고서 등 법령관련 자료제공, 명칭·로고만을 나열하는 행위 등

□ 협회심사면제 광고 확대

- 기존은 대다수 금융투자광고물을 협회가 최종심사함으로써 심사량가중에 따른 면밀한 검토 곤란으로 협회 리스크 증가
  - 연간 광고심사 실적: (2010) 7,267건, (2011) 7,940건, (2012) 7,198건
- 투자자보호 관련성 및 규제실익이 적은 투자광고의 최종심사권한을 금융투자회사(준법감시인)에 부여
  - 내용의 변경 없이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자사 모바일홈페이지 및 자사 정기간행물을 이용한 광고 등
  - 협회심사면제 광고에 대한 사후적정성 점검 및 제재강화 등 적법성 담보장치를 마련하여 부당광고 예방기능 제고 추진

마. 2013/6/11 개정 · 10/28 시행

1) 개정목적

-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 중인 채권 등의 수익률 중 중복되거나 근거가 미비한 사항의 조정 및 정비

2) 개정내용

- 잔존만기별수익률을 시가평가기준수익률로 대체하고, CP시가기준수익률 보고자를 채권평가사로 일원화(7-2조)
  - 보고 및 공시 근거가 미비한 CP 및 CD 시가기준수익률의 근거 마련
    - 시가기준수익률 명칭을 시가평가기준수익률로 통일

기존			개정		
협회 공시 수익률	대상	보고 회사	협회 공시 수익률	대상	보고 회사
최종 호가 수익률	특정 잔존 기간 수익률	채권	최종호가 수익률	채권	금융투자회사
		CP		CP	
		CD		CD	
	잔존 만기별 수익률	채권		채권	
시가평가기준 수익률	채권	채권평가 회사	시가평가 기준수익률	CP	채권평가회사
CP시가기준 수익률	CP	금융투자 회사		CD	
		채권평가 회사			
CD시가기준 수익률	CD	채권평가 회사			

바. 2013/7/24 개정 · 시행

1) 개정목적

- 연금저축 비교공시<sup>69)</sup>와 관련하여 근거법령의 변경<sup>70)</sup>을 협회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 근거법령 변경(4-72조의2)
  - 기존은 연금저축펀드를 「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집합투자증권이 과거에 판매되었거나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집합투자기구로 정의
  - 연금저축펀드를 「소득세법」 2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투자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연금저축계좌 전용 클래스 및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2에 따라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며, 과거에 판매되었거나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집합투자기구로 정의
    - 2013년도 2분기(2013년 6월말 기준) 공시부터 적용

---

69)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 수수료율 및 유지율 등을 매 분기말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공시(2012년 9월말부터 시행)

70)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 소득세법 제20조의3

## 사. 2013/8/29 개정 · 시행

### 1) 개정목적

- 자산운용업 규제 선진화 및 용어 정비 등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을 반영

### 2) 개정내용

- 펀드 판매 시 간이투자설명서 교부 허용 관련(2-5조, 별표9)
  -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를 원칙으로 함<sup>71)</sup>
    - 설명의무: 설명서 교부시 투자설명서 외 펀드 투자권유에 한해 간이투자설명서 사용 허용
    - 투자광고: 투자광고시 펀드 경고문구에 간이투자설명서 관련 사항을 추가<sup>72)</sup>
  
- 원금보장형 공모 ELS의 비상장채권 분류에 따른 문제점 정비(3-10조)
  - 원금보장형 ELS가 채무증권으로 변경됨에 따라<sup>73)</sup> 기존에 허용되고 있던 원금보장형 공모 ELS에 대한 예탁증권 담보유자가 금지됨
    - 예탁증권 담보유자 금지 증권: 비상장채권, 사모 ELS 등
  - 예탁증권 담보유자시 담보징구가 금지되는 비상장채권에 원금보장형 공모 ELS를 제외

---

71) 자본시장법 124조 1항

72) 자본시장법 57조 3항 1호

73) 자본시장법 4조 7항

- 용어 정비(2-1조 등)
  - “관리신탁계약”을 “관리형신탁계약”으로 변경

#### 아. 2013/9/16 개정 · 시행

##### 1) 개정목적

-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의 반영

##### 2) 개정내용

- 새로운 형태의 집합투자기구(투자합자조합, 투자유한책임회사) 반영 (4-58조, 4-63조)
  - ‘투자신탁 등’의 용어 정의 변경
  - 결산보고서 작성 · 제출 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용어 변경

#### 자. 2013/9/26 개정 · 9/30 시행, 일부 11/1 시행

##### 1) 개정목적

- 신용평가회사의 투명성 · 책임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최근 관련 규제가 자본시장법으로 이관<sup>74)</sup>되었고 또한 신용평가회사가 협회 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에 적용되는 일부 영업행위규제를 신용평가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

---

74) 2013.8.29 시행

2) 개정내용

가)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 기준 관련

- 금융투자회사에 공통 적용되는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관련 규제를 신용평가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2-63조~68조)

**<금융투자회사 공통 적용 사항>**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지않는 경우 (2-63조)	3만원 이하 물품·식사, 자체 작성 분석자료, 20만원 이하 경조비·조화·화환 등	
제공 한도 (2-65조)	동일 거래상대방 제공한도	회당 20만원, 연간 100만원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또는 사후 보고 시 500만원)
	신용평가사의 연간 제공 가능 총한도	영업수익 연계 산정: Max(영업수익의 100분의3, 10억원)
수령 한도 (2-66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으로 회사가 정함	
그 밖의 사항	제공·수령 절차 (2-67조)	준법감시인 사전보고, 제공·수령내역 5년 이상 기록·보관
	부당한 제공·수령 금지(2-68조)	통상적 수준 초과,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등

- 신용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회사(임직원 포함)의 금전, 상품권, 금융투자상품 제공·수령 금지(2-68의2)

— 기존 타인재산 운용자, 법인 등 고유재산관리자, 판매사 임직원 (운용사가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전 등 제공 금지

- 내부통제기준을 통한 규제에서 시행령·감독규정 등을 통한 규제로 해당 규제를 대폭 강화

**<신용평가회사의 재산상 이익관련 신·구 규제체계 비교>**

구분	기존 (신용정보의 이용·보호관련 법령 등)	개정 (자본시장법령 등)
규제 체계	<input type="checkbox"/> 감독규정을 통해 규제 도입 <input type="checkbox"/> 세부내용 금감원 위임 - 금감원 표준내부통제기준으로 규정	<input type="checkbox"/> 시행령을 통해 규제 도입 <input type="checkbox"/> 세부 기준·한도 등 협회 위임 - 협회가 정하는 한도 초과 금지
규제 내용	<input type="checkbox"/> 업무 관련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 금지 - 구체적 한도 없음 <input type="checkbox"/>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은 경우 규정	<input type="checkbox"/> 업무 관련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 금지 - 회당 20만원, 연간 100만원 등 <input type="checkbox"/> 기록 유지 및 준법감시인 사전보고 의무 규정

나) 신용평가전문인력 징계내역 보고 관련(11/1시행)

- 신용평가회사가 소속 신용평가전문인력에 대해 징계처분 부과 시 협회에 징계내역 보고 의무화(2-69조 2항, 별지17호)
  - 전문인력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징계 내역에 연동하여 전문인력 자격 제재

**차. 2013/11/29 개정 · 2014/1/1 시행**

**1) 개정목적**

- 기존의 「집합투자증권 잔고 통지제도」는 판매회사가 자율적으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 투자성과 등 핵심정보에 대한 회사별 통지내

역의 편차가 큼에 따라 금감원은 모든 투자자가 매월 1회 이상 핵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준 펀드잔고 통지방안」을 마련해 시행<sup>75)</sup>하면서 금융투자협회의 업무규정에 반영을 요청

## 2) 개정내용

### □ 집합투자증권 잔고 등의 통보(2-11조)

- 통지대상 명시: 판매회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통지(opt-out 방식)
  - 예외: 서면에 의한 통지거부 투자자, 평가금액 10만원 이하 펀드의 투자자, 상장지수펀드·사모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투자일임계좌의 투자자, 전문투자자 등은 통보대상에서 제외 가능
- 통지주기 명시: 매월 1회 이상 통지
- 통지방법 명시: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 등 신속·간편한 통지수단 마련
  - SMS를 이용한 통지는 투자수익률·평가금액 등 핵심내용만 제공 가능
  - 모든 투자자는 판매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잔고통지내역 열람 가능
- 필수 통지항목 명시: 투자수익률, 평가금액, 총보수율, 환매예상금액 등 필수 통지항목을 명시
- 통지근거 구비 의무화: 통지주기·시기·수단 및 항목 등에 관한 근거를 회사 내부규정 또는 지침 등으로 구비

---

75) 2013년 4분기

카. 2013/12/13 개정 · 시행

1) 개정목적

- 투자권유대행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을 영업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28.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2) 개정내용

- 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 범위에서 파생상품이 편입된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의 권유를 제외(2-4조 3항, 2-17조 1호~2호)
  - 파생상품등의 정의 적용범위 확대
  - 투자권유대행인 업무범위 개정
    - 기존 '신탁계약'을 '신탁계약(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 변경

##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가. 2013/2/13 개정 · 시행

#### 1) 개정목적

- 전자단기사채 거래내역 보고시간 및 보고항목을 기업어음증권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 협회규정 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함

#### 2) 개정내용

- 할인·중개 등을 포함한 거래내역을 거래당일 17시 30분까지 전산매체 등을 통해 협회에 보고(52조)
- 전자단기사채 대표수익률, 거래내역 등 공시항목을 명시(53조)
- 월간 장외거래내역 보고 서식 개정(별지 32호)

### 나. 2013/2/28 개정 · 2/28 시행

#### 1) 개정목적

- 연금저축 비교공시<sup>76)</sup>와 관련하여 공시정보의 적시성 제고를 위하여 비교공시 세부사항 중 일부 개선

---

76) 2012년 10월말 개시

## 2) 개정내용

- 상품별 수익률 중 직전 3개년 연간수익률 자료를 변경(별지 14-1호)
  - 매년 4/4분기 공시(공시기준일 12.31)에는 공시기준일이 속한 연도(Y)를 기준으로 Y, Y-1, Y-2에 해당하는 연도의 연간수익률 공시
    - 단, 1/4분기~3/4분기까지는 기존과 동일
  - 기존은 공시기준일이 속한 연도(Y)를 기준으로 Y-1, Y-2, Y-3에 해당하는 연도의 연간수익률 공시
    - 예를 들면 2013년 3월 31일 기준 공시의 경우에는 2012년, 2011년, 2010년의 연간수익률 공시
  - 단, 2012년 12월 31일 기준 공시부터 변경 적용

## 다. 2013/3/20 개정 · 시행

### 1) 개정목적

- 세금우대펀드에 대해 예외적으로 이동제외 대상 펀드로 지정하고 있던 기존의 펀드판매회사이동제도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sup>77)</sup>에 따라 관련 사항의 변경 필요

### 2) 개정내용

- 재형펀드 및 연금저축계좌 제도 도입 관련 변경대상 제외펀드 추가 및 자구 수정(40-1조 9호, 10호~11호)

<sup>77)</sup> 조세특례제한법 91조의14(2013.1.1 시행) 및 동법 시행령 92조의13(2013.2.25 시행), 소득세법시행령 40조의2(2013.2.15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이를 대신하여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문 수정 필요
- 재형저축제도 신규 도입에 따른 제외대상 펀드 추가

## 라. 2013/6/11 개정 · 10/28 시행

### 1) 개정목적

- 장외채권시장에서 공시수익률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채권의 수익률 단위를 변경하고 시가평가제도상 세분화 되어 있는 특수채 등급을 통합하며 개별 공사·공단채 수익률의 공시 추가

### 2) 개정내용

- 채권<sup>78)</sup>수익률 공시 자릿수를 소수점 3자리로 확대(51조)
  - 기존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채권수익률을 소수점 2자리까지 공시하고 있는데 이 체계로는 장외채권시장에서 보편화된 0.5bp단위 거래를 반영하지 못하는 바, 자릿수를 3자리로 확대하여 공시수익률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
    - 단기물인 CD, CP는 현행과 같이 2자리로 유지
- 3단계로 세분화된 특수채 AAA를 AAA 하나로 통합하고 개별 공사·공단채 수익률을 추가로 신규 공시(50조)

---

78) 국고채권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의 수익률 체계를 소수점 3자리로 일원화

- 기존은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중 특수채(공사·공단채) AAA등급의 경우 ① 한전채, ② 도로·수자원, ③ AAA 등 3단계로 세분화하여 공시
  - 시가평가제도 도입 초기 시장상황(발행량,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3단계로 세분화
- 한국전력·도로·수자원공사 외의 공사·공단들의 채권발행 및 유통이 증가하는 등 시장상황 변화로 AAA등급 내 세분화의 필요성이 감소
- 예금보험기금채권이 정부보증채인 점을 감안하여 특수채 내에 정부보증채 신설

**마. 2013/8/12 개정·시행**

**1) 개정목적**

- 계열사 펀드판매 규제(50% rule) 공시를 위한 「국내집합투자증권판매현황」 서식 변경 및 자본시장법 상 항목적용을 위한 「집합투자기  
구 상시정보」 서식 변경

**2) 개정내용**

- 국내집합투자증권판매현황 중 32번~37번 항목 신설(별지 17호)
  - 전체펀드, 전문투자자 사모펀드 등의 월판매액 부분 추가

□ 집합투자기구 상시정보(별지 18호)

- 투자신탁(AU001), 투자회사정보(AU002), 펀드현황(AU005) 서식 중 일부 변경

**바. 2013/8/29 개정 · 시행**

**1) 개정목적**

- 중복공시항목의 최소화 및 관련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 서식 변경 및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분류」 변경 등 관련 시행세칙 개정

**2) 개정내용**

□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 서식 개정(별지 8호)

- 중복 공시되는 항목 삭제
  - 6호 서식: 집합투자기구의 명칭변경
  - 7호 서식: 집합투자기구의 합병(통합) 및 분리
  - 위의 내용은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사유의 일부로 포함되는 사항으로 삭제
  - 9호 서식: 수익자총회 또는 투자회사 주주총회 안내는 법 시행령 220조 1항에 의거 1개월 전에 수익자에게 직접 안내됨에 따라 삭제
- 투자자에게 중요내용은 보다 세분화하고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제거

- 2호 서식: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사유
- 5호 서식: 집합투자규약등 및 투자설명서 변경
- 11호 서식: 소규모펀드 공시 중 처리방안결정사실(방법) 공시 중 환매연기(재개)의 예정일, 투자설명서 변경사유 등 투자자에게 중요한 내용의 세부항목 구체화
- 관련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항목 명확화
  - 4호 서식: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환매대금지급일의 연장’
  - 12호 서식: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를 신설하고 법령상 수시공시 대 항목이나 그 밖의 공시로 분류되어 있는 항목을 개별메뉴로 명확화

□ 집합투자기구 분류 개정(별지 15호)

- 투자유한책임회사 신설 및 기존 투자조합을 투자합자조합으로 명칭 변경
  - 제1차 집합투자기구
- 개정 법령에 따라 사업수익권에 투자하는 경우 특별자산으로 분류하도록 관련 내용 반영
  - 제2차 집합투자기구 종류 및 제11차 투자대상자산 등

**사. 2013/10/29 개정 · 10/30 시행**

**1) 개정목적**

- 2013년 9월 17일 금융투자업규정의 시행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현황을 협회를 통해 금감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별 신용공여 현황보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2) 개정내용**

- 제출자료의 종류 등(56조 3항 10호, 별지 55호)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별 신용공여 현황보고 관련 근거 마련 및 보고서식 신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별 신용공여 현황: 익일 12시까지

**아. 2013/11/1 개정 · 시행**

**1) 개정목적**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기업어음 편입한도 규정을 위한 시행세칙 개정 및 시행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듀레이션 및 유동성자산 운용비율 등을 규제하기 위한 시행세칙 개정<sup>79)</sup>에 따라 <별지 제43호> '표준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위험관리기준' 개정

---

79) 2013.11.1. 시행

2) 개정내용

- 표준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위험관리기준(별지 43호)
  - MMF 가중평균잔존만기(듀레이션) 변경(6조 2호 가1)
    - 기존 90일에서 75일로 하향 조정
  - 기업어음에 대한 별도 운용한도 신설(6조 3호 나2)
    - 채무증권 운용한도 외에 기업어음에 대한 운용한도 신설
  - 유동성자산 운용비율(6조 4호)
    - 유동성 자산의 운용비율(10%, 30%)을 의무화
  - 자구 수정 등(7조)

자. 2013/12/31 개정 · 2014/1/1 시행

1) 개정목적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펀드 · 일임 · 신탁의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편입 범위가 사채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협회 규정 시행세칙에 반영하기 위함

2) 개정내용

- 관계인수인과의 거래 공시(별지 제3호의2)
  - ‘종목의 종류’
    - 기존은 ‘영 제10조제2항제1호(은행채), 제9호(증금채), 제10호(증금채), 제12호(회사채(금융지주)), 제13호(여전채(카드채, 캐피탈채))’였음

- 개정 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채권(영 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제176조의13제1항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은 제외)'으로 변경
- 위의 사채권은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

### 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가. 2013/4/4 개정 · 4/5시행

##### 1) 개정목적

- 전자단기사채<sup>80)</sup>의 기업어음 대체 및 조기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협회 인수업무규정에서도 전자단기사채가 기업어음의 경제적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2) 개정내용

- 전자단기사채 등에 관한 특례 신설(22조)
  - 인수업무규정 중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발행절차 간소화

---

80) 전자단기사채는 CP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현행법상 사채권으로 분류되어 금융투자회사가 인수하는 경우 CP와 달리 인수업무규정 적용

□ 채권의 주관회사 실적공시 업무중복 해소(18조 1항)

—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인수실적을 일별로 보고받고 있어 증권사 업무중복 해소를 위해 주관실적 보고대상에서 전자단기사채를 제외

구분	전자단기사채의 만기		CP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대표주관계약 체결 및 협회보고	면제	기존 규정유지	면제 (인수업무 규정 적용대상 제외)
복수신용평가 및 사채관리계약	면제	기존 규정유지	
금리 결정 시 수요예측 실시	면제	기존 규정유지	
발행사와 이해관계인일 때 주관업무 제한	기존 규정유지	기존 규정유지	
발행일로부터 5일 이내 주관회사 실적 보고	면제	면제	

나. 2013/4/26 개정 · 5/1시행

1) 개정목적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지정자문인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선인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주관회사 제한에 관한 예외 인정 및 사채권자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이 확보된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사채관리계약 체결 면제

2) 개정내용

□ 코넥스시장 신설에 따른 용어정의 수정(2조 3호)

— ‘기업공개’의 정의에 코넥스시장 추가

□ 주식 주권회사의 제한 등 예외인정 확대(6조 1항, 5항)

- 기존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는 경우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어 주권회사업무 수행이 금지되거나 공동주권회사 수행이 의무화되어 있었음
  - 단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sup>81)</sup> 및 외국기업<sup>82)</sup>의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자본시장의 기업자금조달기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상장주선인의 최소투자의무<sup>83)</sup>와 코넥스시장의 지정자문인 제도가 도입
  -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협회의 인수규정상 주권회사 제한으로 인해 상장주선인 및 지정자문인 역할 수행에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음
- 이에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지정자문인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선인인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할 경우에도 상기 이해상충 회피를 위한 의무의 적용을 배제

□ 무보증사채의 인수 시 증권금융회사의 사채관리계약 체결 면제(11조의2 2항 6의2호)

- 금융투자업자가 인수할 수 있는 무보증사채는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간에 협회가 정한 표준사채관리계약서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81) 금융투자업규정 상 5%이상 의무보유

82) 거래소규정상 유가증권 시장 10%, 코스닥시장 5% 의무보유

83) 3% 의무보유

- 단, 금융회사 등<sup>84)</sup>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건전성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들이 발행한 사채의 경우는 사채권자보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동 계약서에 의한 계약체결을 면제하고 있음
- 법상 유일한 증권금융회사인 한국증권금융<sup>85)</sup>의 경우 금융당국의 신규업무 승인 및 감독 등 건전성 통제를 받고 있으며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정부와 위탁계약을 통해 국고금을 예수·운용하는 기관으로 경영 및 재무상의 안정성이 탁월
- 상법상 사채관리업무 수행가능 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채권자보호를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경우도 사채관리계약 체결을 면제

#### 다. 2013/8/29 개정 · 시행

##### 1) 개정목적

- 자본시장법 개정<sup>86)</sup>사항을 반영하여 ‘증권시장’, ‘인수’ 등 용어를 정비

##### 2) 개정내용

- “증권시장” 용어정의 근거법령 변경(2조 3호)
  - (기존) 법 9조 13항 → (개정) 법 8조의2 4항 1호

84) 은행, 여전사, 종금사, 금융투자회사 등

85) 2012년말 기준, 공공자금 1.17조원, 국고금 243조원으로 국고금융기관 중 최대규모

86) 2013.5.28 개정, 2013.8.29 시행

□ “인수” 용어정의 변경(8조의2 4항 1호)

- 기존은 잔액인수시 제3자 취득목적은 적용되지 않으나 개정 후 잔액인수의 목적을 제3자 취득목적이라 명시해 총액인수와 동일

**라. 2013/11/29 개정 · 12/2 시행**

**1) 개정목적**

-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 규정에 신규로 반영된 사항 및 협회의 위임사항 등을 감안하여 인수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인수업무규정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적용사항을 삭제

□ 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15조 1항)

- 부당한 청약·인수, 자금지원, 증권매매 금지에 관한 사항의 삭제로 금융투자업규정 적용에 따른 정비
  - 기존 15조 1항은 금융투자업규정 4-19조 1호 및 2호에 반영

□ 금융투자회사 보유주식의 상장 후 매각제한(6조 4항)

- 기존 6조 4항은 금융투자업규정 4-19조 5호에 반영

□ 계열사 등이 발행하는 증권에 대한 주관회사 수행 금지 및 최대물량인수·주선 금지(6조 1항·6항, 13조)

- 기존 6조 1항 각호의 부분은 15조 4항으로 이관
- 기존 6조 6항은 금융투자업규정 4-19조 7호에 반영
- 기존 13조는 금융투자업규정 4-19조 7호에 반영

나) 협회 위임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명확화

□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5조 1항, 4항)

-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함
  - 단, 공모예정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대표주관회사는 위에 따라 수요예측 등을 행함에 있어 인수회사 및 해당 발행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을 참여시켜서는 아니되며,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자신의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을 구분하여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 기업공개를 위한 인수업무조서 작성 등(15조 3항~4항)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할 것. 단, 대표주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인수회사의 경우 인수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작성
  - 기업실사 관련 사항
  - 공모희망가격 산정경과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수요예측 관련 사항
  - 공모가격 산정, 물량 배정 및 청약에 관한 사항

- 자신 및 자신의 이해관계인의 발행회사 주식등의 보유 현황 등 발행회사와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 자신 및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주식등의 처분제한 등에 관한 사항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 그 밖에 대표주관회사 또는 인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위에 따른 인수업무조서와 위 각 항목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자료를 해당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날부터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할 것

□ 주관사 수행금지 및 최대물량 인수·주선 금지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및 기업공개(장외법인공모 포함)의 범위(6조, 13조)

다) 무보증사채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조치 강화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관리(17조의2, 별표1)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자는 1개월간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참여가 금지되나, 참여제한기간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형평성과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제기
- 위반의 경중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을 차등화하여 기관투자자의 책임성을 제고
  - 금액기준: 위반금액 400억원 초과인 경우 4개월,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3개월, 200억원 이하 2개월

- 비중기준: 발행금액 대비 비중이 50% 초과인 경우 4개월, 20% 초과 50% 이하 3개월
- 위 두 기준으로 산정한 기간이 상이한 경우 더 긴 기간 적용

**<수요예측 참여제한 산정기준표>**

사유	위반금액	비중(%)	제한기간
미청약·미납입	400억원 초과	50% 초과	4개월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20% 초과 50% 이하	3개월
	200억원 이하		2개월
허위정보기재 등 그 밖의 사유			1개월

- 본 개정규정 시행 전 기존 위반사례(총 5건)는 반복위반횟수 산정에서 제외
  - 가중: 해당 건을 포함하여 최근 2년 이내 2회 위반시 1개월, 3회 이상 위반시 2개월 가중
  - 감경: 최근 1년 이내 위반사례가 없고 위반금액이 100억원 미만 등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50% 이내에서 감경
  - 가중과 감경이 중복될 때에는 우선 가중 후 감경기준을 적용하며, 월 단위 미만 기간은 절사(기업공개에도 공통적용)
- 제재금은 협회 회원사가 제재금을 납부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허용(기업공개 기적용)
  - 운용사의 과실책임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게로 전가(공모채권 미배정)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

라) 그 외 사항

□ 개정 자본시장법상 유상증자 시 실권주 처리방식 반영(9조 2항)

- 실권주 발생시 기존은 그 밖의 청약자에게 배정했으나 개정 후는 법 165조의6 규정에 따라 처리

**<자본시장법 165조의6 실권주 처리방식>**

□ 실권주는 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 다만, 발행가액의 적정성이 확보되고 아래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가능

- 투자매매업자가 실권주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
- 주주배정시 배정주식 수의 20%까지 초과청약 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
- 소액공모(10억원 미만 공모)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 코넥스시장 관련 용어정비(2조~3조, 9조, 17조)

- 자본시장법의 개정<sup>87)</sup>으로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과 분리되어 별도 증권시장으로 운영됨에 따른 용어정비
  - 기존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외에 증권시장 설립이 불가하여 코넥스시장을 코스닥시장의 하위시장으로 개설·운영하였음

□ 무보증사채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에 대한 조치 강화 규정은 2013년 12월 2일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

87) 2013.8.29. 시행

## 4.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지침

### 가. 2013/2/15 개정 · 시행

#### 1) 개정목적

-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수료 납부방식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도록 함

#### 2) 개정내용

- 등록수수료의 월별 산정 및 납부시기 변경(13조 2항)
  - 기존은 협회가 매년 발생한 등록수수료를 산정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는 연도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에 협회 납부하는 방식
  - 사업자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연1회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매월 발생한 등록수수료를 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는 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

## 5.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가. 2013/3/29 개정 · 4/1 시행

### 1) 개정목적

- 전문인력 등록신청 서류 간소화 방안과 증권투자상담사가 일반투자자에게 주식의 매수를 추천할 경우에 상담일지 작성의무의 효율적 운영을 돕기 위함

### 2) 개정내용

- 전문인력 등록신청 서류 간소화(2-1조 1항)
  - 펀드투자상담사와 동일하게 모든 전문인력 등록 시 신분증 정구 폐지
    -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은 회사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협회는 실명인증으로 대체
    - 기존은 펀드투자상담사를 제외한 전문인력으로 최초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sup>88)</sup>에 신분증 포함
  
- 증권투자상담사의 상담일지 작성의무 개선(2-11조 1항)
  - 추천사유 및 근거의 기록·유지에 대한 별도의 수단(녹취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투자상담일지 작성 예외

---

88) 등록시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경력증명서 등

-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62조 1항<sup>89)</sup>에 따라 투자권 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는 바, 대부분 전화녹취 등을 통해 고객 주문내역, 투자상담사의 추천내역 등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상담일지 작성 불필요

나. 2013/9/26 개정 · 9/30 시행, 일부 11/1 시행

1) 개정목적

- 금융당국은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평가 책임 강화를 위해 신용평가전문인력 제도의 도입을 추진해 이에 따라 신용평가전문인력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등록, 교육, 제재, 관리하기 위함

<신용평가전문인력 관련 법령 개정 내용>

자본시장법개정 (5.28)	신용평가 관련 규제를 자본시장법으로 이관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 (8.27)	신용평가전문인력을 주요직무종사자로 포함(307조 1항) 신용평가회사를 협회 회원으로 포함(306조)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로 주요직무종사자의 징계관리를 포함(307조 2항)

89) 투자권유관련 자료 10년 보관의무

## 2) 개정내용

- 신용평가회사 정의 신설(1-2조, 11/1 시행)
  - 금융투자전문인력에 신용평가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평가전문인력 자격을 포함
  
- 위험관리전문인력 영문명 신설 및 신용평가전문인력 정의 신설(1-3조, 11/1 시행)
  - 위험관리전문인력(Certified Financial Risk Manager)
  - 신용평가전문인력(Certified Credit Rating Professional)
    - 신용평가회사에서 법 9조 26항에 따른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결과를 심사·승인하는 자
  
- 신용평가전문인력의 정의, 등록요건 신설(1-4조, 11/1 시행)
  - 신용평가회사에 대해 금융투자회사와 동일하게 전문인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등록관리, 징계내역 보고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속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실무 및 준법·윤리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단, 교육은 협회에 최초로 등록할 경우에 한함
    - 3-1조 5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
    - 공인회계사
    - 영 324조의3 1항 1호~18호까지의 금융기관, 해외 금융투자회사 해외 신용평가회사(해외에서 신용평가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에서 기업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평가·분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신용평가회사에서 법 335조의10 2항 1호 및 2호, 영 324조의7 2항 1호에 따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금융투자업규정 3-43조 2항의 위험관리 조직에서 재무위험 등을 평가·관리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영 280조 2항의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
  - 영 285조 3항 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시행일 이전 신용평가업무 1년 이상 경력자와 금년말까지 신용평가 업무수행을 위해 신용평가전문인력으로 등록하는 자는 등록요건 인정

□ 그 밖의 규정 정비(3-11조, 11/1 시행)

- 금융투자회사 외에 신용평가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자격시험 유효기간제도 적용 제외
  - 유효기간제도: 시험합격 후 또는 금융투자회사 퇴사 후 5년 이내 금융투자회사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시험합격을 취소
- 등록신청서 등 각종 양식 개정

□ 금융투자분석사 경력요건 정비(1-4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전문인력 → 공인회계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증권 분석·평가업무 경력자(기존과 동일)

□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1-4조)

-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 다. 2013/10/25 개정 · 10/28 시행

### 1) 개정목적

-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대상 자산에 부동산을 추가<sup>90)</sup> 하면서 관련 자격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회 전문인력규정에 반영 요청

### 2) 개정내용

- 투자자문업자의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운용인력(1-6조, 1-7조)
  - 부동산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투자자문·일임업인력의 자격요건을 신설함
    - 부동산투자자문인력의 자격은 기존 투자권유자문인력이 부동산 관련 교육(시행세칙에 반영 예정)을 이수하는 경우 충족
    - 부동산투자일임인력의 자격은 투자자산운용사로서 부동산 관련 교육(54시간)을 이수하거나 일정기간(3~5년) 이상의 부동산 운용경력자가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충족
  - 투자자문·일임업 인력의 자격요건을 부칙에서 본문으로 이동시켜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새로운 업무 등록단위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함

---

90)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2013.8.29

<기존 투자자문·일임업 인력의 자격규정<sup>91)</sup>>

구분	자본시장법·시행령	전문인력규정
투자자문업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3가지 투자상담사(증권, 파생상품, 펀드)를 모두 갖춘 자 또는 투자자산운용사
투자일임업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	투자자산운용사

<개정 투자자문·일임업 업무단위 및 인력자격요건>

구분	업무 단위	대상자산	자격내용(택1)	비고
투자자문	5-1-1 5-1-2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금융기관 예치금	①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1인이 투자상담사 자격 3가지(펀드, 증권, 파생상품)를 모두 갖추고 부동산 관련 교육을 받을 것	부동산 관련 자격요건 신설
	5-3-1 5-3-2	부동산 금융기관 예치금	② 투자운용인력(투자자산운용사) 1인 이상 증권운용 및 부동산운용 자격을 모두 갖춘 자	
	5-2-1 5-2-2	금융투자상품 금융기관 예치금	①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1인이 투자상담사 자격 3가지(펀드, 증권, 파생상품)를 모두 갖춘 것 ② 투자운용인력(투자자산운용사) 1인 이상 증권운용 자격을 갖춘 자	기존과 동일
투자일임	6-1-1 6-1-2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금융기관 예치금	투자운용인력(투자자산운용사) 2인 이상 증권운용 및 부동산운용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부동산 관련 자격요건 신설
	6-3-1 6-3-2	부동산 금융기관 예치금		
	6-2-1 6-2-2	금융투자상품 금융기관 예치금	투자운용인력(투자자산운용사) 2인 이상 증권운용 자격을 갖춘 자	기존과 동일

91) 2013.10.24 기준

라. 2013/11/29 개정 · 12/2 시행

1) 개정목적

- 금융투자업규정의 개정<sup>92)</sup>으로 ‘해외자원개발운용 전문인력’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운용인력으로 인정됨에 따라 이를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규정에 반영

2) 개정내용

- 금융투자전문인력 중 투자자산운용사의 등록요건으로서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업무’ 자격을 신설(1-4조 5호)
  -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업무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3의 4호의 해외자원개발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단,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12조의3 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증권운용전문인력의 경우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업무 허용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상 자격요건>**

1. 자원공학, 지질학, 자원경제 등 자원개발 관련 석사+운용경력 2년 또는 자원개발 관련 업무 경력 3년
2. 광업자원 기술사+자원개발 관련 업무 경력 3년
3. 변호사 또는 회계사+자원개발 관련 업무 경력 3년
4. 금융기관\*에서의 자원개발 관련 운용 경력 3년
  - \* 증권·선물·자산운용사, 은행, 증권금융, 중금사, 상호저축은행
5. 학사+자원개발 관련 업무 경력 5년
6. 변호사, 공인회계사, 금융기관 경력자+ 해외자원개발협회 교육

92) 2013.10.22.

## 6.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가. 2013/4/2 개정 · 7/1 시행

#### 1) 개정목적

- 납부대상 회사의 수수료 납부를 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법<sup>93)</sup>상 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기 위함

#### 2) 개정내용

- 전문인력 등록수수료제도 시행일 유예 및 징수주기 변경(14조 2항)
  - 원래 2013년 1월부터 전문인력 등록수수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었으나 예산배정 확보 및 담당부서 지정 등의 준비기간을 위해 시행일을 2013년 7월 1일로 유예하고 징수주기도 매월 발생한 등록수수료를 익월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함

### 나. 2013/5/31 개정 · 6/3 시행, 단 일부 9/1 시행

#### 1) 개정목적

- 전문인력 제재사유에 주요 불공정행위의 누락을 개선하고 경합하는 제재의 기준마련과 그 외 임원에 대한 자격제재 기준을 정립하는 등 미비점 개선

---

9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4조 1항

2) 개정내용

□ 전문인력 제재사유에 주요 불공정행위 추가(2-11조)

- 기존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유로 징계조치를 받은 경우 자격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조치 가능

제재사유		전문인력 업무와 관련한 법규 위반, 횡령·배임·절도·금품수수, 전문인력 자격·명의 대여, 보수 교육 미이수 등
제재	전문인력	등록효력정지, 등록거부, 자격시험 합격취소, 자격시험 응시제한
	비전문인력	등록거부, 자격시험 합격취소, 자격시험 응시제한

- 자격제재가 부과되는 징계사유에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sup>94)</sup>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불공정거래행위로 징계를 받더라도 전문인력 자격과 관련한 제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함
- 전문인력관련 제재가 부과되는 징계사유에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를 추가

□ 경합행위에 대한 자격제재기준 마련(별표1, 9/1 시행)

- 기존 금융투자회사의 징계로 인해 전문인력의 자격을 제재하는 경우, 복수의 제재사유 경합시 명확한 처리규정 없음
- 경합행위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회사가 징계 보고한 시점에 (양정기준에 따라) 자격 제재기간을 산정·조치
  - 회사가 징계보고한 시점에 따라 기계적으로 자격제재를 처리함에 따라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 이를 개선하기 위함

94) 법 §174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 §176조(시세조종 행위), §178조(부정거래 행위)

- 경합하는 자격제재<sup>95)</sup> 중 가장 중한 제재에 1/2을 가중하여 총 제재기간을 산정하되, 각 제재를 합산한 기간 초과 금지

(경합사례)	단순합산방식	1/2 가중방식
3년/2년	5년	3+1.5=4.5년
4년/1년	5년	4+2=6년(x), 4+1=5년(o)

- 다만, 경합하는 제재사유 중 하나가 징계면직인 경우에는 총 제재기간이 징계면직에 따른 제재기간(5년) 초과 금지
  - 징계면직에 대해서도 가중할 경우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음

□ 임원에 대한 자격제재 기준 개선(별표1, 9/1 시행)

- 기존 임원 징계시 직원에 대한 전문인력 제재기준 준용
  - 임원에 대한 해임, 업무집행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는 각각 직원의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의 제재기준 준용
- 직원의 '감봉'은 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임원의 '문책경고'는 구분이 없어 제재수준 산정이 곤란한 바,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문책경고에 대해 직원 감봉조치의 중간수준인 감봉(3~4월) 적용

□ 정직에 대한 세부 양정기준 보완(별표1, 9/1 시행)

- 기존 회사가 정직을 징계한 경우 해당 정직기간(정직월수)에 일 정기간을 합산하여 자격제재 기간 산정
  - ex) 정직월수 + 6개월(12개월) 기간 동안 전문인력 등록의 효력 정지 및 등록거부

95) 형법상 경합범 처벌규정 원용, §38①(금융위, 검사제재규정상 경합 참조)

- 회사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정직’을 징계한 경우 자격제재 처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6개월을 초과한 정직’ 및 ‘무기정직’은 6개월 정직으로 간주하여 자격제재 기간 산정
  - 협회에 보고된 유기정직 중 최장기
  - 단, 6개월 내에 회사가 복직시킨 경우에는 실제 정직기간에 따라 제재기간 감경

□ 자율규제위원회 일부 권한 위원장에게 위임(제2-11, 13조)

- 기존 자율규제위원회는 전문인력규정상 전문인력의 자격 등과 관련하여 제재 권한 보유
- 일상적·단순 반복적으로 처리되고 있거나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일부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2012년 중 징계보고 접수·심사 436건(월 평균 36건), 제재조치 121건(월 평균 10건)
- 전문인력 자격제재와 관련한 자율규제위원회의 자격취소 등 일부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

자율규제위원회 권한		관련 조문	위임 필요
1	자격취소, 등록 효력정지, 시험 응시제한, 등록의 거부	2-11①	√
2	소속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문책 요구	2-11①	
3	회사 징계가 형평성이 결여된 경우, 별도 자격제재 의결	2-11⑤	
4	전문인력 자격제재의 가중 또는 감면	2-11⑦	
5	전문인력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회사에 징계 요구	2-11⑧	
6	회사에 대한 신규등록 정지조치 및 제재금 병과	2-12①	
7	비전문인력의 자격시험 응시 제한 또는 등록 거부	2-13①	√
8	임원 및 비전문인력에 대해 회사에 문책 등 요구	2-13④	

□ 부칙

-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도 회사의 징계조치일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제재
- 시행일 현재 경합으로 제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여 제재기간 감경

**다. 2013/10/16 개정 · 10/21 시행**

**1) 개정목적**

- 신용평가전문인력제도 도입에 따른 보수교육 등 관련 규정 개정

**2) 개정내용**

- 자격시험 유효기간 적용면제(10조 1항)

- 신용평가전문인력 보수교육을 신설하고, 유예대상자 범위 지정
  - ‘금융투자회사’를 ‘금융투자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 변경

- 등록수수료(14조 1항~2항)

- 특별회원인 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도 전문인력 등록신청 시 등록 수수료를 징수
  - 준회원: 3만원 → 준회원, 특별회원: 3만원
  - 금융투자회사 → 해당 금융투자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
  - 금융투자회사 → 통보받은 회사

- 자격시험 유효기간 적용면제 신청서(별지 1)
  - 신용평가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금융투자회사와 동일하게 자격 시험 유효기간 적용이 면제됨에 따라 관련 서식 변경
    - 시험합격 후 또는 금융투자회사 퇴사 후 5년 이내 금융투자회사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시험합격을 취소함
  
-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12조, 별표1, 별표3)
  -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 신용평가회사 및 신용평가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은 11월 1일부터 시행

**라. 2013/12/5 개정 · 12/6 시행**

**1) 개정목적**

- 전문인력규정에서 자율규제위원장에게 위임한 부동산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이수하여야 하는 부동산 교육 과정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위함

**2) 개정내용**

- 부동산 투자권유자문인력 교육 신설(15조)
  - 교육과목 및 실시시간
    - 이수요건: 출석률 80% 이상
  - 부동산 관련 경력자는 “부동산 실무” 교육 면제

-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자격을 충족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 경력자

필수내용	교육과목	최소교육시간
부동산 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관련 법규</li> <li>• 부동산 관련 세무</li> <li>• 부동산 가치평가 및 분석</li> <li>• 리스크관리</li> <li>• 부동산 투자상품</li> </ul>	20
직무 수행 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문 업무</li> <li>• 투자자문 사례</li> </ul>	10
계		30

## 7.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가. 2013/8/26 개정 · 8/29 시행

### 1) 개정목적

- 자본시장법의 시행<sup>96)</sup>에 따라 용어정비 등 개정내용을 반영

### 2) 개정내용

- 자본시장법이 복수거래소 제도를 도입해 기존 시장구분(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을 삭제하고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시장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함(9조 13항, 386조)

96) 2013.5.28 개정, 2013.8.29 시행

— 이에 따라 규정의 관련 용어를 개정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으로 변경

## 8. 신용평가기관 평가규정

### 가. 2013/12/19 개정 · 시행

#### 1) 개정목적

- 정량·정성평가의 성격이 상이하고, 합산비중도 인위적이어서 점수 합산이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정량평가 별점이 70점을 초과하는 사례 발생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함
  - 정량평가와 달리 정성평가(설문조사)는 설문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며 비중 조절에 따라 평가사간 순위 변동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

#### 2) 개정내용

-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변경(별지 1)
  - 기존은 각 신용평가기관별 I) 등급 신뢰도, ii) 등급 사후관리, iii) 이용자 활용도 측면을 평가
    - ‘등급 신뢰도’ 부문에 대해서는 정량·정성평가를 병행\*하고, 평가점수를 합산(정량 70% + 정성 30%)하여 산출
    - 타 평가항목은 설문조사 결과만을 반영

- 정량평가는 해외기준부도율 초과 시, 상하위 등급간 역전 시 별점을 부과하여 최대 70점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평가 항목	평가방법
① 신용등급 신뢰도	정량평가(부도율 평가) + 설문조사
② 신용등급 사후관리	설문조사(등급전망, 등급감시제도의 효용성 등)
③ 이용자 활용도	설문조사(세미나 및 대외활동 만족도 등)

- 등급 신뢰도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결과를 분리하여 발표
  - 최대점수 70점을 없애고 산출된 별점 크기에 따라 평가·발표

□ 신용평가 근거법을 이관(신용정보법 → 자본시장법)에 따른 용어정의 변경사항반영(2조)

-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업무를 허가 받은 자 → 인가 받은 자로 변경



## II. 모범규준

### 1. 표준투자권유준칙

#### 가. 2013/8/29 개정 · 시행

##### 1) 개정목적

-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 2) 개정내용

-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변경(※ 회사참고사항 2-1)
  - 적정성원칙의 적용대상인 “파생상품 등”의 범위를 개정법령에 맞게 반영

####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기존	개정후
1) 파생상품	1) <좌 동>
2) 파생결합증권(원금보장형 제외*)	2) 파생결합증권(금적립 계좌등 제외)
3)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파생상품펀드(인덱스펀드는 제외)	3) <좌 동>
4)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펀드	4) <좌 동>
<추 가>	5) 조건부자본증권

주: 개정법에서는 원금보장형일 경우 파생결합증권이 아님

- 펀드판매시 간이투자설명서 교부원칙(14. 설명의무 4 등)
  -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간이투자설명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상의 간이투자설명서 기재사항을 고려하여 투자권유시 설명사항을 일부 개정
  
-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사전교부하여야 하는 서면자료의 필수기재사항을 추가(20.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 투자자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 변경 또는 해지요구 권한이 있음을 기재하도록 내용 추가
  - 투자자문·일임업자의 투자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
    - “금융투자상품”을 “금융투자상품 등(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변경
    - 그 밖의 용어정비: 관리신탁계약 → 관리형신탁계약, 증권시장 등 → 금융투자상품시장
  
-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참조할 만한 법령사항 삭제(참고 7)

## 2. 컴플라이언스 매뉴얼(공통·증권·선물편)

### 가. 2013/12/31 개정 · 2014/1/1 시행

#### 1) 개정목적

- 최근 매뉴얼 개정('11.12월) 이후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무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각종 자료(감독기관 및 협회 배포 공문, 우수사례, FAQ, 검사·제재 사례 등)와 신규 이슈 사항을 추가·보완하였으며, 신규 주제(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투자일임업)를 추가함으로써 매뉴얼의 활용도와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 2) 개정내용

-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 관련 규정 등
  - 준법감시제도 개요
    - 준법감시의 정의
    - 준법감시제도
  - 준법감시 조직
    - 이사회
    - 대표이사
    - 준법감시인
    - 임직원
  - 내부통제기준

- 내부통제기준의 개념 및 제정목적
-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 내부통제기준의 내용
- 위반에 대한 제재

— 준법감시인

- 준법감시인의 법적지위
-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 준법감시체제의 운영

- 준법감시체제의 구축
-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운영
- 임직원의 보고의무
- 내부고발제도
-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 투자일임업

— 관련규정 등

— 투자일임업의 개요

- 투자일임업의 정의
- 투자일임업의 적용배제
- 투자일임업자의 위탁금지 업무

— 투자일임업자의 의무

- 선관의무
- 충실의무

-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 서면자료의 교부
  - 서면자료 기재사항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주요내용
  -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시행령 상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주요내용
  - 금융투자업규정 상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업규정 상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주요내용
  -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모범규준
  -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모범규준 주요내용
  - 랩어카운트 투자권유 시 유의사항
  - 투자자의 재산상황 등 확인 절차
- 투자일임계약의 성과보수 제한
  - 성과보수의 제한
-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
- 그 밖의 자료제출 및 공시 등
  -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 비교공시
  - 관계인수인과의 거래에 관한 공시
  - 투자일임규모 작성 및 제출
- 검사 사례
- FAQ

### 3.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자산운용편)

#### 가. 2012/12/17 개정 · 시행

##### 1) 개정목적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법규준수문화 확립 및 법령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있는 바 매뉴얼 제정 이후 개정된 관련법령 업데이트 및 매뉴얼 내용 중 구체적 설명이 미흡한 부분의 보완과 새로운 사항 추가

##### 2) 개정내용

###### 관련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 2011년 10월 자산운용편 제정 이후 변경된 자본시장법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영업규정 등 총 18개 변경사항 적용
  - 자본시장법시행령의 의결권행사 사후공시, 부동산 의무보유기간 등
  - 금융투자업규정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험평가액 산정방법 등
  - 영업규정의 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 의무 등
  - 그밖에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모범규준 폐지 등

###### 기존 내용의 미비점 보완

- 기존 매뉴얼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내용 보강으로 총 24개 사항

- 관련자료 추가: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 금융감독원 공문, 협회 배포 유의사항·모범규준 등 안내
- 자구수정, 각종 운용제한·공시사항 등 추가

□ 신규사항

- 상세한 매뉴얼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한 추가
  - 재산상이익의 제공 및 수령, 투자광고 등의 내용 작성 및 관련 참고자료 추가

**<매뉴얼(자산운용편) 개정사항>**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자산운용회사 내부통제모범규준	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에 없는 부분 매뉴얼 반영
	자본시장법 시행령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괄호안 표현 수정
		적격투자자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한도 예외 (100분의 400)
		부동산(국내)의무보유기간 개정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예외
		의결권행사 공시 사후공시로 완화(주총일 5일 이내)
		자산운용보고서 교부대상 예탁결제원 추가
		투자운용인력의 운영경력 공시기간
		공매도 제한
		적격투자자 사모집합투자기구 금융위보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개정
	소규모펀드의 모자형 전환	
	금융투자업규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운용제한 개정
		위험평가액 산정방법 개정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도입		
적격투자자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		
파생상품 업무규정	개별주식 선물, 옵션 종목 업데이트	
영업규정	연금지축펀드 비교공시 의무	

**<매뉴얼(자산운용편) 개정사항>(계속)**

내용 수정 보완	국세청 질의 회신 추가	펀드 합병시 펀드소유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내용 추가	특별자산펀드 중 모범규준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 언급 자구수정 등	
		적용유예 사항 추가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부분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의 동일종목 투자비율 초과시 의무 준법감시인 선임·해임시 공시의무 추가	
		업무보고서 제출기한 등 추가	
		경영공시 내용 추가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의 동일종목 투자비율 초과시 공시 그 밖의 실제 공시의무 사항 반영	
		금융감독원 공문 추가	주식매매 주문정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참고자료 첨부	불공정거래 방지 업무처리 모범규준
	환매조건부매수의 자전거래에 관한 모범규준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 기준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 요령			
월간운용보고서 자사 홈페이지 게시 유의사항			
상품서비스별 투자광고 심사 check list			
광고심사 주요사례(광고심사사례집 예시에서 일부 발췌)			
2010~11년도 자산운용사 주요 지적사례(PDF 자료) 자산운용산업 2012년 하반기 주요검사 이슈(PPT 자료)			
내용삭제	집합투자재산자산별 평가방법 삭제(모범규준으로 이관)		
신규 사항 추가	신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투자광고	

## 4.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 가. 2013/1/8 개정, 1/14 시행

#### 1) 개정목적

- 우리은행의 종합금융업 인가 종료(2013.8.1부)로 CP업무를 종료할 예정임에 따라 CP수익률 보고회사 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CP거래 실적 산정 시 발행물 증개와 관련된 할인 및 매출실적으로 구체화할 필요

#### 2) 개정내용

- CP 수익률 보고회사 구성 조정(3조 1항)
  - 기존 종합금융업 겸영 3개 은행 및 5개 증권사에서 종합금융업 겸영 2개 은행 및 6개 증권사로 변경
- CP 거래실적 기준 구체화(3조 5항)
  - 기존 CP거래실적에서 CP거래(할인 및 매출)실적으로 변경

## 5. 불공정거래방지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가. 2013/1/11 개정, 4/1 시행

#### 1) 개정목적

-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동 모범규준 상 이상매매가 다수 적출되어 모범규준 점검항목(별표)을 합리적으로 개선

#### 2) 개정내용

- 장 마감 동시호가 시 매매 제한(별표 점검항목 1, 2)
  - 장 마감 동시호가 주문량이 최근 20일 평균 장 마감 동시호가 거래량의 1%이내인 경우 위반에서 제외하고, 2일 연속 발생하는 경우에만 위반으로 처리
  - 당일 매매가 없는 경우 장 마감 동시호가 주문량이 최근 20일 평균 장 마감 동시호가 거래량의 1%이내인 경우 위반에서 제외
    - 기존에는 펀드별로 특정종목의 장 마감 동시호가 주문이 ① 3일 연속으로 발생제한, ② 당일 매매가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었음
- 거래량의 30% 초과 제한 개선(별표 점검항목 3)
  - 20일 평균 거래량 및 당일 거래량 중 많은 거래량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점검기준 초과로 산출하고, 5거래일 중 2일이 초과하는 경우에 위반으로 처리

- 기준은 회사전체의 특정종목 거래량이 20일 평균 거래량의 30%를 초과할 경우만 제한하고 있었음
  - 1일차 회사 전체 거래량 기준의 초과여부 판단기준: 1일차 회사거래량 > Max(20일 평균거래량 30%, 1일차 거래량 30%)
- 다만, 윈도우 드레싱의 개연성이 높은 선물·옵션 만기일 및 매분기 최종 거래일의 경우 기존기준을 그대로 적용
- 파생상품 만기일과 매 분기 마지막 거래일은 현행 기준(20일 평균거래량의 30% 초과제한) 유지

**윈도우 드레싱(window dressing)**

기관투자자들이 월말이나 분기말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보유 중인 주식을 추가 매수하거나 매도하여 인위적으로 당해 주식의 증가를 관리하는 것. '깔끔한 마무리'를 뜻하는데 연봉협상에 유리한 수익률이 좋은 종목만 남기고 마이너스 종목은 아예 없애는 것을 말함. 통상 연말의 윈도우 드레싱은 여타 분기말과 달리 수급 영향력이 큰 대형주를 중심으로 나타나며 일반투자자들은 기관선호종목들을 윈도우 드레싱 기간 전에 샀다가 이때를 이용해 고가에 처분해 단기간 큰 차익을 얻으려는 경향도 있음

**나. 2013/7/10 개정 · 시행**

**1) 개정목적**

-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원활한 성장자금조달을 위해 도입된 코넥스시장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 보완 필요

- 코넥스시장은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에 비해 본질적으로 거래량, 거래금액 등이 적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시장초기이므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

## 2) 개정내용

- 코넥스시장이 시장초기임을 감안하여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대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의무 적용배제(10조 3항)
  - 모니터링의무가 적용배제 됨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투자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

## 다. 2013/8/29 개정 · 시행

### 1) 개정목적

-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모범규준의 용어 정비

### 2) 개정내용

- 기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 적용되는 모범규준의 적용범위 관련 용어를 법 개정 취지에 맞춰 거래소시장(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조정(3조)
  -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를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로 변경

## 6. 녹색펀드 투자 모범규준

### 가. 2013/2/27 개정 · 시행

#### 1) 개정목적

- 녹색저축 및 녹색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관련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라 녹색자산에 대한 의무투자비율 완화를 반영

#### 2) 개정내용

- 녹색자산에 대한 의무투자비율 완화(2조 8항, 13조)
  - 기존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정부인증기관이 인정한 녹색전문기업의 채권 또는 녹색기술·사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의무 투자비율을 40%로 완화

#### <녹색펀드 관련 세제혜택 요건>

녹색자산 의무투자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정부인증기관이 인증한 녹색전문기업의 채권 또는 녹색기술·사업 등에 투자
세제혜택	배당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014년 12월 31일
투자기간	투자계약기간 3년 이상 5년 이하(계약기간 만료전 인출 및 제3자 양도 금지)
세제혜택 한도	3천만원(모든 녹색펀드 합계액) 녹색펀드와 별도로 모든 녹색저축을 합해 2천만원까지 세제혜택

## 7.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모범규준

### 가. 2013/3/29 개정 · 4/1 시행

#### 1) 개정목적

-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 선정 및 ELS·DLS 분류 기준 명확화

#### 2) 개정내용

- 기초자산 선정요건(Ⅱ.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ELS·DLS의 기초자산 선정 시 다음의 4가지 사항을 고려할 것
    - 유동성: 유동성이 충분한 기초자산을 사용할 것
    - 신뢰성: 신뢰성 있는 기관이 산출하는 지수를 사용할 것
    - 접근성: 기초자산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직접 또는 링크로 확인가능하게 할 것
    - 이해가능성: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일반투자자가 기초자산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 ELS·DLS의 분류기준(Ⅱ.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 주식 또는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은 ELS, 그 외의 것은 DLS로 분류

## 8.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 가. 2013/4/3 개정 · 시행

#### 1) 개정목적

- 투자자 편의 향상 및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주요국의 국채<sup>97)</sup> 등 외화증권을 예탁수단으로 허용

#### 2) 개정내용

- 증거금 예탁수단에 '외화증권' 추가(II. 장내파생상품거래 위험고지서 3.)
  -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증거금 예탁수단의 확대<sup>98)</sup>에 따라 협회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에 기재된 증거금 예탁수단 추가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설명서(자본시장법 123조의 투자설명서 포함)를 교부해야 하며, 협회는 상품별 표준안 형식을 제시

기존	개정
현금, 대응증권, 외화	현금, 대응증권, 외화, 외화증권

97) 환금성 · 지급보증성 등을 고려하여 미국국채(US Treasury Securities)를 우선적으로 도입

98)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8조

나. 2013/9/26 개정 · 9/30 시행

1) 개정목적

- KRX 업무규정 개정사항<sup>99)</sup>을 반영하여 관련 모범규준 및 설명서를 개정

2) 개정내용

- 통화옵션거래 권리행사결제방법 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개정요청사항 (Ⅲ-2, 3)

— ‘실물인수도방식’에서 ‘현금결제방식’으로 변경

구분	기존	개정
최종거래일	권리행사일로부터 3일째 거래일(T+2)	권리행사일의 다음 거래일(T+1)
결제방식	실물인도방식	현금(권리행사차금)수수방식
정규거래시간	09:00~11:30	09:00~15:00

99) 2013.7.3 개정, 9.30 시행

## 9. 금융투자회사의 임시사무소 운영을 위한 모범규준

### 가. 2013/6/5 제정 · 시행

#### 1) 제정목적

- 금융투자회사의 임시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시사무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
  - 지점 또는 영업소가 아닌 곳으로서 특정 지점의 관리 하에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곳을 말함

#### 2) 주요 제정내용

- 개설지점장을 관리책임자로 하여 지점과 동일한 업무절차를 갖추고 사고방지를 위한 내부기준 마련

<업무별 요건>

취급 업무	인적요건	물적요건	내부통제	관련조문
투자권유·상담·계좌개설서류징구·전자문서에 의한 계좌개설 및 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책임: 지점장(비상주)</li> <li>직원 1인 이상</li> </ul>	-	-	§3조
계좌개설·계좌이체(본인명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책임: 지점장(비상주)</li> <li>현장책임자 1인</li> <li>직원 1인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잠금장치를 갖춘 폐쇄된 장소</li> <li>단말기 등 전산장비</li> </ul>	-	§6조
카드발급(보안카드, OTP 단말기 포함)	상동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카드사용을 위한 본인 인증절차</li> </ul>	§7조①
계좌이체(본인명의 제외)	상동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체금액 제한</li> </ul>	§7조②
입출금 입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책임: 지점장(비상주)</li> <li>현장책임자 1인</li> <li>직원 2인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잠금장치를 갖춘 폐쇄된 장소</li> <li>단말기 등 전산장비</li> <li>금고, CCTV</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금액, 출고수량 제한</li> <li>자체경비체계 구축 등 방법 대책 강구</li> </ul>	§7조③

주: 1) 현장책임자: 지점 업무책임자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설지점 직원  
 2) 전산장비의 내부통신망 연결, 정보보안체계 등은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관련규정 준수

□ 적용 제외

- 투자권유, 상담, 계좌개설서류 징구만을 취급하는 파출영업의 경우
-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문서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의 경우
  - 다만, 위의 경우에도 개설지점장의 관리책임 및 임시사무소의 업무범위와 운영기간 등에 대한 투자자 고지 의무 등은 동일하게 부과

□ 그 밖의 사항

- 투자자가 본점 또는 지점이 아닌 임시사무소임을 알 수 있도록 관련 표지 게시
- 임시사무소의 취급 업무범위 및 관리지점 안내
- 임시사무소의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한 회사별 내부기준 마련
- 금융관련 법규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 구축
- 임시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상품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
  - 임시사무소가 동법 상 '사업장 외의 장소'에 해당될 경우 고객의 요청없이 임시사무소에서 상품을 권유·판매 시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됨

## 10. 표준 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가. 2013/7/25 개정 · 8/1 시행

### 1) 개정목적

-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중인 기한이익상실 관련 조항을 표준계약서에 편입하고, 상법과 일부 불일치한 사항을 법에 맞게 반영하기 위함

## 2) 개정내용

- 표준 사채관리계약서에 추가한 기한이익상실 조항 중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중인 조항을 표준계약서로 편입(1-2조)
  - 감독관청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 등
  
- 상법 개정사항 및 상법과 일부 불일치한 사항의 반영(1-2조, 5-3조)
  - 기한이익상실 관련 상법 개정사항(505조~506조 삭제) 반영
    - 기존은 원금 일부 또는 이자 지급의무 불이행시 사채권자집회를 통한 기한이익상실 선언시 2월 이상 변제기간 부여하였으나 개정 후 변제기간 부여 삭제
  - 사채 의결권 관련 상법 개정사항(492조) 반영
    - 기존은 사채의 최저액마다 1개의 의결권이 있었으나 개정 후 사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사채금액에 비례한 의결권으로 변경
  - 사채권자집회 의결권행사를 위한 채권 공탁기관을 상법과 동일하게 변경<sup>100)</sup>
    - 기존은 사채관리회사에 공탁하였으나 개정 후는 법원에 공탁
  
-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발행하는 현황을 반영(1-3조)
  - 기존은 채권 실물 발행을 기본으로 하는 사채양식이었으나 개정 후 등록발행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

---

100) 상법 부칙<1962.1.20> 7조

□ 발행회사의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정기보고서 사본 제출의무 조정(2-2조, 2-7조)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정기보고서가 DART 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본제출 의무를 통지 의무로 조정
  - (기존) 보고서 제출시 사본을 사채관리회사에 제출
  - (개정 후) 보고서 제출시 동 사실을 사채관리회사에 통지

□ 재무비율의 출처가 되는 재무제표의 종류 표시(2-3조)

- 재무제표가 연결, 별도, 개별재무제표로 나뉘는 바, 발행기업이 사업보고서 제출시 적용받는 재무제표의 종류를 표시함으로써 재무비율의 출처를 명확화
  - (기존) 재무비율의 출처가 되는 재무제표의 종류 미표시
  - (개정 후) 재무비율의 출처가 되는 재무제표의 종류 표시

□ 사채관리회사 사임과 관련하여 상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증권인수업무 규정 개정사항 반영(4-6조)

-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에서 발행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로서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동 제한요건이 개정 상법시행령에 비해 과도하여 동규정을 삭제한 것을 반영
  - (기존) 사임 사유로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을 인용
  - (개정 후) 사임 사유로 상법시행령을 인용

□ 2013년 8월 1일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 나. 2013/8/22 개정 · 시행

### 1) 개정목적

-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바젤 III 시행과 관련하여 은행지주회사 후순위 채의 보완자본 인정요건을 반영하기 위함

#### 바젤 III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10년 9월 12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를 열고 내놓은 새로운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이다.

종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조정하여 자본의 질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완충자본, 차입투자(레버리지) 규제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은행들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새로 마련된 자본건전성 기준을 충족 시켜야 한다.

### 2) 개정경과<sup>101)</sup>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자본규제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결과 2013년부터 바젤 III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
  - 2013년 7월 현재 바젤위원회 27개 회원국 중 25개국이 금년 또는 내년초에 시행키로 확정
    - 미국은 바젤 III를 2014년 1월부터 적용키로 발표(7.2)
  - 국내은행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1일부터 바젤 III 자본규제를 도입키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완료(7.8)

10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2월 1일부터 은행지주회사에 바젤 III 자본규제 등 시행”, 2013.7.31.

- 국내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바젤 I 을 적용
  - 은행지주회사 자본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바젤 III 자본규제와 위험가중자산 산정방법에 관한 바젤 II 기준을 도입

**<새로운 자기자본규제 시행 이후 변동 비교표>**

구분	현 행	새로운 자본규제 시행시
은행	바젤 II	바젤 II · III
은행지주회사 그룹	바젤 I <sup>1)</sup> 은행 카드 증권 자산운용 저축은행 기타 보험 (바젤규제 제외)	바젤 II · III <sup>1)</sup> 은행 카드 증권 자산운용 저축은행 기타 보험 (바젤규제 제외)

주: 1) 연결기준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와 자회사들이 보유한 자산과 자본을 모두 합산(내부 상호거래는 제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지주회사 그룹의 BIS자기 자본비율을 산출

**3) 개정내용**

- 은행지주회사 후순위채의 보완자본 인정요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은행지주회사 후순위채의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문 보완(1-2조)

— 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척상 보완자본 인정 요건

- 투자자는 파산 및 청산 이외에는 미래의 원금 또는 이자지급 일을 앞당기는 권리를 가지지 않을 것

## 11.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발행 및 운용에 관한 모범규준

가. 2013/8/29 개정 · 시행

### 1) 개정목적

-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원금보장 ELS·DLS가 채무증권으로 분류되나, 영업 목적의 원금보장 ELS·DLS는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 상품이므로 동 상품에 대해서도 모범규준 계속 적용

### 2) 개정내용

- 모범규준 명칭 변경

— 기존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모범규준」을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발행 및 운용에 관한 모범규준」으로 변경

- 발행대금 사용목적 명시

—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발행대금은 헤지자산 운용에 사용할 것

- 그 밖의 자구 수정
  - “과생결합증권”을 “과생결합증권 등”(과생결합증권 및 과생결합사채)으로 수정

## 12.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가. 2013/9/5 개정 · 시행

#### 1) 개정목적

- 금융투자업 규정의 개정으로 대표주관업무 관련 특정사항에 대해서 내부통제기준 반영이 의무화되어 대표주관업무 관련사항<sup>102)</sup>을 「표준 내부통제기준」에 추가할 필요

#### 2) 개정내용

-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의무 명시(95조)
  - 대표주관회사 업무 영위 시 공정성을 기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

---

102)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의 규율대상(조사, 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사항

□ 기업실사 수행의 최소기간(96조)

— 기업실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이상의 기업실사를 의무화

- IPO(3개월), 채권(3영업일), 그 밖의 사항(7영업일)

□ 기업실사 수행시 참여의무자(97조)

— 일정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인력으로 실사팀을 구성하도록 하여 기업실사 시 객관성 확보

- 인수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기업금융업무(자본시장법 제71조 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함) 3년이상 종사자
- 변호사(외국변호사 포함)
- 금융투자분
- 석사로서 1년 이상 경력자
- 증권분석, 산업분석 등에 관한 전문가(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1-4조 6호 나목부터 사목에 해당하는 자)

## 13.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가. 2013/9/26 개정 · 9/30 시행

#### 1) 개정목적

- KRX 업무규정 개정사항<sup>103)</sup>을 반영하여 관련 모범규준 및 설명서<sup>104)</sup>를 개정

#### 2) 개정내용

##### <KRX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주요 개정내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위험관리<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알고리즘매매거래계좌 신고의무화, 누적호가수량한도 신설 등</li></ul></li><li>② 파생상품투자자에 대한 증거금 관리 강화<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장중 위험노출액한도 축소(예탁총액 10배 → 5배), 장중추가증거금 제도 도입 등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모범규준 개정 필요</li></ul></li><li>③ 통화옵션거래 권리행사결제방법 변경(실물인수도 → 현금결제방식)<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에 따른 권리행사일, 거래시간 등 변경 ⇒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개정 필요</li></ul></li></ul> |
|---|

103) 2013.7.3 개정, 9.30 시행

104)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 위험노출액한도 초과 시 수탁 거부 의무화(5-4조 1항, 5-7조 1항)

— 단, 위험노출액을 감소시키는 반대거래 수탁은 가능

□ 위험노출액한도 축소(5-5조 2항)

— 예탁총액 10배 → 5배

□ 적격기관투자자 유형요건 추가(5-2조)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운용자산 총액 1조원 이상인 투자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기 존	개 정
1.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국가, 은행 등) 2. 전문투자자 대우를 희망하는 공사 등 단체(예보, 정리금융공사 등) 3. "2"에 준하는 외국법인·단체 4. 유렉스 청산기관 (코스피200옵션거래 限) 5. <신 설>	1. ~4. <좌 동>  5. 알고리즘거래계좌를 보유한 국 내·외 법인 중 회사의 위험관 리부서가 선정한 법인

- 회원의 위험관리부서가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산규모요건(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운용자산 총액 1조원 이상) 예외 허용

## 14.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 가. 2013/9/27 개정 · 10/1 시행

#### 1) 개정목적

-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sup>105)</sup>」에 포함된 발행시장 제도개선 사항 및 지난 3월 업계·당국 간 논의사항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반영
  - 발행시장 제도개선사항 중 희망금리밴드 산정기준 구체화 및 사전금리 확약 관행 제한을 동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제재 강화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재 수준을 세분화하여 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반영<sup>106)</sup>
  - 지난 3월 업계와 당국 간에 논의되었던 희망금리밴드 폭 확대 (10bp → 20bp) 및 밴드 내 참여물량 배정 의무화 등도 동 모범규준에 반영

#### <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 중 발행시장 제도개선 관련사항 >

- ① 수요예측시 발행사의 공정한 금리제시 유도
  - 발행사가 제시하는 희망금리밴드의 최고수준을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한 → 모범규준 개정사항
- ② 증권사의 과도하게 낮은 금리제시 관행 개선
  - 증권사 사전금리 확약 관행 제한 → 모범규준 개정사항
  - 증권사 미매각 물량 월별 보고(감독원)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 ③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제재 강화
  -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인수업무규정 개정사항

105) 금융위·금감원, 2013.7.8

106) 10월 예정

2) 개정내용

□ 희망금리밴드 제시 시 시장가격의 실질적 반영(3조 2항)

- 기존은 희망금리밴드 상하단의 위치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시장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밴드 제시로 인한 수요예측 실패사례 발생
  - 단, 희망금리밴드의 구간(폭)을 10bp이상으로 제시(의무적)

<낮은 수준의 밴드 제시로 인한 수요예측 실패 사례>

발행사	갑건설(AA-, 2천억원, 2012년 중 발행)
대표 주관회사	A증권, B증권
희망 금리밴드	국고5년 + 40bp~50 bp - 동사의 민평금리 수준은 80bp, 동일등급(AA-) 민평은 53bp
결과	65bp~79bp 사이에 수요예측 참여 6건 800억에 불과 - 최종 결정금리: +53bp - 2천억원 전량 미매각 및 인수단이 전량 인수

- 합리적인 희망금리밴드 산정·제시 및 밴드 폭 확대를 통한 기관 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 유도
  - 희망금리밴드 상단을 민평금리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합리적 이유를 공개
  - 증권신고서에 기재(금감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도 동내용 반영)
- 또한 기존 10bp의 희망금리밴드 폭을 20bp로 확대

□ 밴드 내 참여물량 배정의무화(4-2조 3항)

- 기존은 수요예측 이후 희망금리밴드 내 참여물량까지 배제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기준 부재
  - 희망금리밴드는 발행사와 주관사가 합의하여 제시된 것이란 점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 밴드 내 참여물량을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

**<밴드내 참여물량 임의적 배제 사례>**

발행사	을건설(AA-, 2천억원, 2012년 중 발행)
대표 주관회사	C증권, D증권
희망 금리밴드	국고5년 + 40bp ~ 50 bp
결과	총 6건 1,300억원(49~60bp), 이 중 밴드내 1건 400억원(49bp) - 밴드내 물량인 400억원이 유효수요에서 배제되고 38bp로 금리결정 - 2천억원 전량 미매각 및 인수단이 전량 인수

- 희망금리밴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높여 밴드내 참여 및 이를 통한 투자자간 경쟁을 유도
- 희망금리밴드 내 참여물량이 사실상 유효수요로 작동하게 됨에 따라 주관사의 가격(희망금리)산정 관련 책임성을 제고
  - 희망금리밴드 내 참여물량을 유효수요로 인정(원칙적 의무화)
  - 단, 합리적 사유<sup>107)</sup>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함(예외적 허용)

107)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이상치로 판단되는 경우 등

□ 대표주관계약 체결 전 발행금리제시 금지(8조)

- 증권사가 무보증사채 발행을 위한 대표주관회사에 선정되기 위하여 제안서에 낮은 금리를 제시
  - 발행금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sup>108)</sup>해야 함에도 제안서에 기재된 낮은 금리가 최종 발행금리로 오인됨에 따라 수요예측 결과가 금리결정에 잘 반영되지 않고(수요예측의 유명무실화) 인수회사의 미매각 인수위험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
- 수요예측의 금리결정기능을 제고하고 다양한 비가격 요소의 제시를 통한 질적 경쟁을 유도
  - 대표주관계약 체결 전, 금리 협의 및 대표주관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상 금리제시를 제한하고 발행금리는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됨을 명시토록 함

## 15.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가. 2013/11/8 개정 · 시행

#### 1) 개정목적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회계기준 변경, 평가위원회 지위 명확화 등을 반영하기 위함

---

108) (인수업무규정 제12조)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되 대표주관사와 발행사가 협의 후 결정

2) 개정내용

-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방법 일부 변경(4-8조)
  -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의 회수가능액이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이를 반영하여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
  
- 평가위원회의 지위 명확화(4-24조)
  - 가이드라인은 관련 법령의 위임없이 업계의 실무처리 상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 자발적 공통의견이 집적된 Best Practice이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공정가액 평가의 주체이며 평가결과에 대한 최종책임자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가이드라인에 추가·명시하여 가이드라인의 지위에 대한 산업 종사자 등의 이해를 제고
  
- 펀드발행분담금 부담 적용기한 기재(세부처리지침 4.(4))
  - 자본시장법 442조의 개정으로 집합투자증권발행분담금 부담주체가 집합투자기구에서 집합투자업자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
    - 단, 2013년 8월 28일 이전에 회계연도가 개시된 경우에는 펀드가 일부 부담할 수 있어 적용기간을 명시
  
- 회계감사 적용면제 기준금액 변경 반영(세부처리지침 4.(5))
  - 자본시장법 시행령 264조의 개정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외부회계감사 수감 면제 대상 자산총액 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

- 감사보수 적립은 평가일 현재 자산총액이 300억 초과인 펀드를 대상으로 함
- 단, 자산총액이 300억 초과 500억 이하인 경우로서 결산일 이전 6개월간 추가설정이 없는 펀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

## 16.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가. 2013/12/3 제정 · 2014/1/4 시행

### 1) 제정목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조 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3조 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하기 위함

### 2) 주요 제정내용

- 전체 6장 총 17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 총칙

- 목적
- 적용범위
- 용어의 정의

- 제2장 투자권유에 관한 사항
  - 일반원칙
  - 적정성의 원칙
  - 투자권유자문인력
  - 상품설명서 교부
  -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에 대한 유의사항
  
- 제3장 신탁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신탁계약 체결 절차
  - 신탁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제4장 신탁재산 운용 등에 관한 사항
  - 신탁재산 운용지시 등
  - 운용결과 통보
  - 신탁계약 해지 및 종료
  - 신탁재산 운용 관련 유의사항
  
- 제5장 홍보에 관한 사항
  - 기본원칙
  - 홍보 시 유의사항

□ 부칙

- 본 규준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최초로 체결(기존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을 포함)되는 신탁계약부터 적용
  - 단, II.6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

**<특정금전신탁 관련 10대 개선과제><sup>109)</sup>**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이 특정금전신탁을 사실상 예금이나 펀드처럼 판매·운용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금융규율을 확립하기 위하여 특정금전신탁 관련 10대 개선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 특정금전신탁은 본질적으로 고객(위탁자)이 위탁 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여 금융회사(수탁자)에 맡기는 1:1 맞춤형 실적배당상품
  - 그러나, 영업현장에서는 특정금전신탁을 사실상 펀드처럼 운용하거나 예금처럼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 발생
  - 따라서, 특정금전신탁이 본래의 취지와 특성대로 운용되고 투자자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영업관행을 개선
- 10대 개선과제
  -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서 외에 “원본 손실 가능성” 등 투자 위험과 상품의 내용이 보다 명료하고 쉽게 설명된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함
  - 무분별한 상품 홍보 및 고객행위 차단
    - 금융회사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는 등 특정금전신탁상품을 미리 설계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홍보하고 예정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함
  - 투자권유자의 자격 제한
    -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상품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투자권유자문인력)만이 투자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함

10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특정금전신탁제도 및 영업관행개선-10대 개선과제 추진, 정도 벗어난 영업관행 시정하고 투자자보호 강화-”, 2013.11.26.

**<특정금전신탁 관련 10대 개선과제>(계속)**

- 자전거래(自轉去來) 규제 강화
  - 자전거래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업자간 중개 등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특정금전신탁 편입 상품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강화
  -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파생결합증권(원금비보장 ELS·DLS 등) 발행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함
- 최소 가입금액 설정
  - 특정금전신탁을 펀드처럼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별 최소 가입금액을 5천만원으로 설정
- 신탁자금 운용 지정방법 구체화
  - 특정금전신탁을 취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위탁자)이 금전의 운용대상의 종류와 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자필로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함
- 계약시 “적정성원칙” 적용
  -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정성원칙”을 적용
- 예금처럼 오인할 수 있는 판매 행위 차단
  - 통장발행 대신 개별계약서와 투자설명서를 교부토록 지도하고, 불가피하게 통장을 발행할 경우는 은행예금통장과는 확연히 구별되도록 표지·문양 등을 개선토록 지도
-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 개선(중장기 과제)
  - 장기재산관리라는 특정금전신탁의 취지에 맞지 않는 수시입출금식 신탁(MMT 등)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면서 단계적으로 개선방안 강구



### Ⅲ. 설명서 및 위험고지

#### 1.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요령

가. 2013/10/7 개정 · 10/24 시행

##### 1) 개정목적

- 2013년 4월 23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른 내용을 협회 요령에 반영
  -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 요령」은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산운용보고서의 표준서식을 제공하기 위해 '09.6월 협회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2) 개정내용

- 보수 및 비용지급 현황 작성예시(별지 1호-Ⅱ. 5장 2절)
  - 항목 중 '매매·중개수수료'를 '(단순)매매·중개수수료'와 '조사분석업무 서비스 수수료'로 구분



## IV. 표준약관

### 1.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 가. 2013/3/6 제정 · 3/7 시행

##### 1) 제정목적

-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가입자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고 그 계좌 내에서 매매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금융투자회사는 가입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해야 함
- 금융투자회사의 개별약관 제정업무 부담의 경감과 복잡한 세제내용을 반영하고 가입자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

##### 2) 주요 제정내용

- 가입기간의 기산일: 계좌설정일(3조)
  - 연금저축계좌의 가입기간은 계좌설정일로부터 기산하므로 가입자가 계좌만 설정하고 펀드는 매입하지 않더라도 가입기간은 계속 경과함
  - 최소계좌설정금액은 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0원, 1,000원, 10,000원 등
    - 종전 연금저축펀드는 매수일이 가입기간의 기산일이었음

□ 연납입한도: 1,800만원(4조)

-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를 합산하여 분기별 제한 없이 연 1,800만원 한도로 납입 가능
- 종전 연금저축의 납입한도는 1,200만원(분기 300만원)
- 다만, 이연퇴직소득<sup>110)</sup> 및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한도에 적용받지 않음

□ 자유로운 집합투자증권의 매매(6조)

- 펀드 매입 또는 환매에 대한 제한이 없어 가입자가 증시변화에 따라 펀드보유비율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음
  - 다만, 가입자가 매매할 수 있는 펀드는 연금저축전용펀드 및 연금저축전용클래스 펀드로 한정됨
  - 종전 연금저축펀드는 펀드 내에서 전환만 가능(예: 주식형 ↔ 채권형)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우대(7조)

- 일반펀드는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가입자가 1년 이상 유지하면 환매수수료 면제
  - 또한 소규모펀드로 해지 시 상환금으로 가입자가 매입한 펀드의 경우 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도 면제
- 상기 우대조항을 연금저축계좌에 편입된 펀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9조(저축자의 우대) 1항, 3항, 4항과 동일

---

110)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은 퇴직소득

□ 자유로운 인출(8조)

- 가입자는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현금 또는 펀드를 환매하여 인출할 수 있음
  - 기존 연금저축펀드는 반드시 해지 후 인출이 가능했음(중도해지 불가)
  - 인출순서는 세금부담이 없거나 낮은 금액부터 인출되도록 하여 가입자의 세금부담을 경감

<인출순서>

- ① 과세제외금액(해당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 ② 이연퇴직소득(원천징수 되지 않은 퇴직소득)
- ③ 그 밖의 금액(해당연도에 소득공제 받은 금액 + 펀드수익)

□ 계좌해지(10조)

- 가입자는 언제든지 계좌를 해지할 수 있고, 회사는 계좌 내 펀드를 모두 환매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 외 수령 또는 계좌해지(11조)

-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가입자는 연금 외로 수령하여 계좌를 계속 유지하거나, 계좌해지 중에 선택할 수 있음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 선고
- 가입자가 계좌를 계속 유지할 경우 기존에 가입한 기간은 그대로 유지
- 종전 연금저축펀드는 자동 해지되어 가입기간에 대한 기득권도 상실

□ 연금수령개시 전 자유로운 이체(12조)

- 가입자는 본인 명의의 다른 연금계좌로 일부 또는 전액을 언제든지 이체할 수 있어 가입자의 회사 선택권을 보장. 단, 연금수령이 개시되면 이체는 불가

□ 연금의 지급(13조 및 14조)

- 가입자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에 해당되어 나이에 따라 소득세를 차등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후 지급
-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가입일로부터 5년경과, 매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
  - 기존 연금저축펀드는 10년이 경과해야 하고 연금수령한도 없음

<p style="margin: 0;">&lt;연금수령한도&gt;</p> $\frac{\text{연금계좌의 평가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frac{120}{100}$
---

## &lt;나이에 따른 소득세율&gt;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55세 이상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 연금수령 외에 해당되는 경우 그 밖의 소득세(2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

## □ 배우자의 계좌 승계(15조)

-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 한하여 계좌 승계 가능
  - 배우자가 승계한 계좌의 가입기간은 가입자의 가입일로부터 기산하고 추가불입 가능
  - 연금수령개시 후에는 가입자의 사망일 당시 연금수령연차로 연금수령한도가 계산되어 배우자에게 연금이 지급됨
  - 기존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동 해지되었음

## □ 계좌수수료(17조)

- 회사는 계좌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음
- 다만, 펀드매매로 발생하는 각종 보수, 수수료 등은 해당펀드의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별도로 징수

□ 양도 및 질권설정(22조)

—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계좌의 특성상 계좌 내 보유재산을 인출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은 불가

- 그러나 질권설정 등의 담보제공은 회사의 동의 후 가능

**나. 2013/12/5 개정 · 2014/1/1 시행**

**1) 개정목적**

□ 예탁금 이용료 산정과 관련된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

**2) 개정내용**

□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사전 안내(5조 1항)

— 기존은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약관의 별첨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지급기준 변경 시마다 약관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 개정 후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약관의 별첨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고객에게 사전 고지

- 지급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자본시장법(56조 1항)상 약관 변경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회사업무 간소화
- 예탁금 이용료 변경 시 회사의 고객에 대한 사전 고지는 종전과 동일

## □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 시 고객안내 방법 추가(5조 2항)

- 기존은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 시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비치 또는 게시하고 있으나, 월간 매매내역 통지 시 같은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음
- 개정 후는 월간 매매내역 통지시 변경된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함께 통지토록 하여 고객에 대한 안내방법을 추가하되 회사의 비용부담은 최소화

## □ 매매내역 등 통지 조항 신설(7조)

- 기존은 회사의 매매내역 등의 통지의무를 명시한 표준약관과 명시하지 않은 표준약관이 있어 약관 간 체계정비 필요
  - 개정 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70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4-36조를 반영하여 매매내역 등의 통지 조항 신설
- 회사는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
  -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할 것
    - ✓ 서면 교부
    - ✓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 ✓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 ✓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 ✓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단,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
-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함
-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등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위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함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간주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한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비치한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 2. 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

### 가. 2013/4/17 개정 · 5/2시행

#### 1) 개정목적

- CP의 원천징수 누락방지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sup>111)</sup>으로 인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CP의 경우 만기일 전에 실물인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2) 개정내용

- 원천징수시기가 만기일인 예탁 CP의 경우에는 만기일 전 실물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2조 3항)
  - 소득세법 시행령은 원천징수 누락 방지를 위해 원천징수시기를 기존 “할인 매출하는 날”과 “만기일”중 선택하는 방식에서 “할인 매출하는 날”로 일원화
    - 단 기업어음이 만기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는 경우 원천징수가 누락될 가능성이 없음을 고려해 이 경우에만 만기일 선택을 허용
  - 이에 원천징수시기를 만기일로 정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CP의 경우에는 만기일 전에 실물인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111) 소득세법 시행령 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

### 3. 신용거래약관

#### 가. 2013/6/25 개정 · 7/1 시행

##### 1) 개정목적

-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로 변경되었으므로 표준약관상 해당 용어 개정 필요

##### 2) 개정내용

- 신용거래약관상 기한이익상실 사유 중 하나인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성년후견·한정후견개시 심판'으로 개정(12조)
  - 기존 신용거래 시 개인고객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즉시 채무 변제 의무 발생
    - 종전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 도입<sup>112)</sup>

#### <금치산·한정치산제도 관련 민법개정 내용>

- 성년후견: 일용품 구입 등 일상 행위나 가정법원이 정한 법률행위는 독자적으로 가능
- 한정후견: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동의 필요

---

112) 2013년 7월 1일 시행.

## 4.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가. 2013/6/25 개정 · 7/1 시행

#### 1) 개정목적

-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대한 매매와 관련하여 기본예탁금 납부 및 미납부 고객의 주문에 대한 수탁거부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

#### 2) 개정내용

- 코넥스상장주권의 기본예탁금 납부 조항 신설(3조의3)
  - 고객은 코넥스시장 상장주권에 대한 매수주문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납부하여야 함
    - 개인투자자는 3억원 이상(현금+대용증권)이며 전문투자자 및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자(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는 면제
- 공매도 주문시 수탁거부(4조 2항)
  - 코넥스시장 상장주권에 대한 공매도 주문시 회사의 수탁거부 내용 추가
- 기본예탁금 미납부 주문의 수탁거부(4조 4항)
  - 주식 워런트 증권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주권에 대한 기본예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객의 주문시 수탁거부 조항 신설

## 나. 2013/9/24 개정 · 9/30 시행

### 1) 개정목적

- 자본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

### 2) 개정내용

- 매매거래 등의 통지 방법 추가(11조)
  - 매매거래 등의 통지 방법으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추가
  
-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 인용 내용 수정(5조)
  - 기존 '매매주문'을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으로 변경
    - 자본시장법 70조 개정내용 반영

## 다. 2013/12/5 개정 · 2014/1/1 시행

### 1) 개정목적

- 예탁금 이용료 산정과 관련된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

## 2) 개정내용

-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사전 안내(6조 1항)
  - 기존은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약관의 별첨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지급기준 변경 시마다 약관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 개정 후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약관의 별첨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고객에게 사전 고지
    - 지급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자본시장법(56조 1항)상 약관 변경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회사업무 간소화
    - 예탁금 이용료 변경 시 회사의 고객에 대한 사전 고지는 종전과 동일
  
-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 시 고객안내 방법 추가(6조 2항)
  - 기존은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 시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비치 또는 게시하고 있으나, 월간 매매내역 통지 시 같은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음
  - 개정 후는 월간 매매내역 통지 시 변경된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함께 통지토록 하여 고객에 대한 안내방법을 추가하되 회사의 비용부담은 최소화

## 5.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약관

### 가. 2013/8/20 개정 · 9/26 시행

#### 1) 개정목적

-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이드라인」 배포<sup>113)</sup>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표준 약관에 반영

#### 2) 개정내용

- 자금이체 시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 의무적 사용 반영(12조 2항)
  - 고객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1일 누적기준 300만원 이상 전자자금이체를 할 경우 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등을 통해 고객에게 사전 안내한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 본인확인을 위한 구체적 · 세부적 내용은 약관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 아님<sup>114)</sup>
    - 회사마다 그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세부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점 안내 등을 통해 사전 안내
    - 공인인증서 (재)발급 관련 본인확인 절차는 코스콤의 인증서(가입)이용 약관에 반영될 예정

113) 2013.9.26 전 금융업권 시행예정

114) 공정거래위원회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참조

나. 2013/11/26 개정 · 12/2 시행

1) 개정목적

-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의 주요 관련 개정내용>**

- 해킹 관련 전자금융사업자 등의 책임 명확화(전자금융거래법 9조 1항)
  - 해킹(정보통신망 등에 침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사업자 등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해킹사고에 대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범위 조정(법 시행령 8조 3호~4호)
  - 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해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여 해킹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도 고의·중과실 범위에 포함

2) 개정내용

- 해킹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전자금융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지는 내용의 추가(8조 1항 3호)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해킹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경우로 다음의 내용을 추가(8조 2항 4호~5호)
  - 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전자금융거래법 9조 1항 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고객이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법 9조 1항 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6.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가. 2013/9/10 개정 · 9/30 시행

### 1) 개정목적

-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내용 등을 표준약관에 반영하기 위함

## 2) 개정내용

가)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험노출액 관리방법 개선

□ 회사는 위험노출액한도 초과 시 기존 1시간 유예기간 없이 수탁거부  
(3조 1항 8호, 7조의2 1항)

— 기존은 위험노출액한도 초과시점부터 1시간 이내에 위험노출액이  
감소되지 않는 경우, 사전위탁증거금을 적용하거나 반대거래를  
통해 초과분을 해소

- 위험노출액한도: 고객 예탁총액의 5배 이내에서 회사가 정함

□ 또한, 위험노출액한도 초과 우려 또는 초과 시 고객에게 통지(7조의2  
3항)

나) 과다호가부담금 부과조항 신설

□ 코스피200선물·옵션거래에 한해 거래소규정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  
로 과도한 호가 건수를 제출한 고객은 거래소에 과다호가부담금 납  
부(12조의2 1항)

— 알고리즘거래 등 거래소전산시스템 사용률이 매우 높는데 반해,  
실제 체결률은 미미해 수수료 부담 기여도가 극히 낮은 과다호가  
제출을 제한하여 거래 효율성 증대

—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과다호가부담금을 받아 거래소에 납부

- 예컨대 1일 계좌당 최대 200만원 부과 가능(KOSPI200선물거래  
100만원 + KOSPI200옵션거래 100만원)

**<과다호가부담금(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164조의3)>**

당일 정규거래시간 동안 총호가건수가 2만건 이상~10만건 미만시 체결률 5% 이하 또는 총호가건수가 10만건 이상시 체결률 10% 이하의 경우 100만원 부과

다) 미국달러옵션거래의 최종결제를 현금결제방식으로 전환

미국달러옵션거래의 최종결제를 권리행사결제수량에 권리행사차금을 수수하는 현금결제방식으로 개정(24조 2항)

— 기존은 미국달러옵션거래의 최종결제는 기초자산인 미국달러와 권리행사대금을 수수하는 실효인수도 방식

주가지수옵션거래, 주식옵션거래 및 미국달러플렉스선물의 현금결제 방식 내용 보완(24조 2항 및 3항)

라) 회사의 업무실질 반영 및 거래소 업무규정과 조문일치

글로벌거래의 참여계좌 지정요건을 삭제하고, 글로벌거래 수탁계약 미체결 고객의 주문 시 수탁 거부(5조 1항 7호)

현금결제 및 인수도결제 대상상품 및 결제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24조~26조)

마) 그 밖의 사항

용어 개선

- 부합하지 → 일치하지(5조 1항 5호)
- 경과 후 → 완전히 지난 후(5조 2항 4호)
- 개설한 → 새로 만든(5조 3항)
- 제반비용 → 모든 비용(11조 3항)

## 나. 2013/9/24 개정 · 9/30 시행

### 1) 개정목적

- 자본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

### 2) 개정내용

- 매매거래 등의 통지 방법 추가(20조)
  - 매매거래 등의 통지 방법으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추가

다. 2013/12/5 개정 · 2014/1/1 시행

1) 개정목적

- 예탁금 이용료 산정과 관련된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

<관련규정 주요 개정 사항>

(금융투자업규정 4-46조)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예탁금 이용료 산정

(회사의영업및업무규정 3-7조)

예탁금 이용료 산정시 관련 요소(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지급결제 관련 비용, 인건비, 전산비 등)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지급기준에 반영하고, 변경되는 경우 월간 매매내역 통지시 함께 변경내용 통지

2) 개정내용

-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사전 안내(19조 1항)

- 기존은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약관의 별첨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지급기준 변경 시마다 약관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 개정 후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약관의 별첨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고객에게 사전 고지
  - 지급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자본시장법(56조 1항)상 약관 변경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회사업무 간소화
  - 예탁금 이용료 변경 시 회사의 고객에 대한 사전 고지는 종전과 동일

## □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 시 고객안내 방법 추가(19조 2항)

- 기존은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 시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비치 또는 게시하고 있으나, 월간 매매내역 통지 시 같은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음
- 개정 후는 월간 매매내역 통지시 변경된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함께 통지토록 하여 고객에 대한 안내방법을 추가하되 회사의 비용부담은 최소화
  - 회사가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변경 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하고 20조 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시에 함께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함

**7.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가. 2013/9/24 개정 · 9/30 시행****1) 개정목적**

- 자본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

## 2) 개정내용

### □ 매매거래 등의 통지 방법 추가(4-36조 1항)

- 매매거래 등의 통지 방법으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추가

## 나. 2013/12/5 개정 · 2014/1/1 시행

### 1) 개정목적

- 예탁금 이용료 산정과 관련된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

### 2) 개정내용

#### □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사전 안내(10조 1항)

- 기존은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약관의 별첨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지급기준 변경 시마다 약관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 개정 후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약관의 별첨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고객에게 사전 고지
  - 지급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자본시장법(56조 1항)상 약관 변경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회사업무 간소화
  - 예탁금 이용료 변경 시 회사의 고객에 대한 사전 고지는 종전과 동일

## □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 시 고객안내 방법 추가(10조 2항)

- 기존은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 시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비치 또는 게시하고 있으나, 월간 매매내역 통지 시 같은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음
- 개정 후는 월간 매매내역 통지 시 변경된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함께 통지토록 하여 고객에 대한 안내방법을 추가하되 회사의 비용부담은 최소화
  - 회사가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하고 제5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시에 함께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함

**8. 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가. 2013/9/24 개정 · 9/30 시행****1) 개정목적**

- 자본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

## 2) 개정내용

-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문변경 반영(11조)
  - ‘제7조 제3항’을 ‘제7조 제4항’으로 변경

## 9.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 가. 2013/9/24 개정 · 9/30 시행

#### 1) 개정목적

- 자본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

#### 2) 개정내용

- 매매거래 등의 통지 방법 추가(13조)
  - 매매거래 등의 통지 방법으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추가

나. 2013/12/5 개정 · 2014/1/1 시행

1) 개정목적

- 예탁금 이용료 산정과 관련된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

2) 개정내용

-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사전 안내(12조 1항)
  - 기존은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약관의 별첨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지급기준 변경 시마다 약관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 개정 후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약관의 별첨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고객에게 사전 고지
    - 지급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자본시장법(56조 1항)상 약관 변경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회사업무 간소화
    - 예탁금 이용료 변경 시 회사의 고객에 대한 사전 고지는 종전과 동일
-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 시 고객안내 방법 추가(12조 2항)
  - 기존은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 시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비치 또는 게시하고 있으나, 월간 매매내역 통지 시 같은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음

- 개정 후는 월간 매매내역 통지시 변경된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함께 통지토록 하여 고객에 대한 안내방법을 추가하되 회사의 비용부담은 최소화
  - 회사는 예치금 지급기준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하고, 회사가 예치금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이항 전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비치 또는 게시하고 13조 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시에 함께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함

□ 매매내역 등 통지 조항 신설(13조 3항)

- 기존은 회사의 매매내역 등의 통지의무를 명시한 표준약관과 명시하지 않은 표준약관이 있어 약관 간 체계정비 필요
  - 명시한 표준약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과생상품계좌설정약관
  - 명시하지 않은 표준약관: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 개정 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70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4-36조를 반영하여 매매내역 등의 통지 조항 신설
  -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등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1항 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함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간주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한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비치한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 10. 증권대차거래약관

### 가. 2013/9/24 개정 · 9/30 시행

#### 1) 개정목적

- 자본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

#### 2) 개정내용

- 증권대차거래 담보설정 방법 추가(5조 2항)
  - 증권의 담보설정 방법으로 질권설정 방법 추가, 증권 및 현금 이외의 담보의 경우 질권설정 방법으로 담보설정 가능

- 금융투자업규정 5-26조 1항의 개정에 따른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문변경 반영(2조)

— ‘제7조 제3항’을 ‘제7조 제4항’으로 변경

## 11.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가. 2013/12/5 개정 · 2014/1/1 시행

### 1) 개정목적

□ 예탁금 이용료 산정과 관련된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

### 2) 개정내용

□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사전 안내(6조 4항)

- 기존은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약관의 별첨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지급기준 변경 시마다 약관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 개정 후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약관의 별첨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고객에게 사전 고지

- 지급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자본시장법(56조 1항)상 약관 변경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회사업무 간소화
- 예탁금 이용료 변경 시 회사의 고객에 대한 사전 고지는 종전과 동일

□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 시 고객안내 방법 추가(6조 5항)

- 기존에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 시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비치 또는 게시하고 있으나, 월간 매매내역 통지시 같은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음
- 개정 후는 월간 매매내역 통지시 변경된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함께 통지토록 하여 고객에 대한 안내방법을 추가하되 회사의 비용부담은 최소화
  - 회사는 저축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
  - 또한 회사가 저축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위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비치 또는 게시하고 9조 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시에 함께 저축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매매내역 등 통지 조항 신설(9조)

- 기존에 회사의 매매내역 등의 통지의무를 명시한 표준약관과 명시하지 않은 표준약관이 있어 약관 간 체계정비 필요
- 회사는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저축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저축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할 것
- 단,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
  - 가. 서면 교부
  -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저축자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회사는 저축자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저축자가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함
-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등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1항 2호의 방법으로 저축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간주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저축자계좌에 대하여 저축자의 요구 시 즉

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한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  
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저축자 요구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비  
치한 경우
3. 매매내역을 저축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  
로 거래하는 경우



색 인





## 색 인

(가)

가장납입	208, 253, 260
가중평균잔존만기(듀레이션)	127, 359
간이투자설명서	28, 31, 346, 388
간이합병	97
간주의결권행사	123
결제불이행	6, 8, 52, 175, 228, 236, 275, 277, 299, 301, 320
결제불이행자	179
겸영업무	118, 144
경개	6
경고문구	339, 346
경매매제도	226, 234, 274
경쟁매매	16, 20, 23, 66, 121, 226, 234, 274
경합행위	378
골드뱅킹	119
공매도	175, 179, 228, 236, 275, 321, 328, 392, 437
과다호가부담금	301, 309, 443
과징금	141, 159, 163, 167
구상권	10
국제회계기준(K-IFRS)	45, 204, 257, 270, 279
권리행사결제방법	299, 302, 310, 402, 413
글로벌 우량기업	182, 185, 240
금산분리제도	99
금융소비자보호	111, 169
금융전산	91, 93, 161, 164, 166

금융투자분석사 ..... 334, 336, 37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 6, 9, 50, 77, 115, 319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제도 ..... 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 5, 8, 52, 58, 77  
 기구위험관리기준 ..... 358  
 기본예탁금제도 ..... 227, 274, 304  
 기술평가 상장특례 ..... 239, 251  
 기업실사 ..... 243, 250, 365, 411  
 기업어음증권 ..... 48, 65, 111, 128, 333, 352, 435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 37, 40  
 기업현황보고서 ..... 75, 243, 245, 281, 285, 337, 338  
 기초자산 ..... 30, 52, 114, 120, 123, 146, 190, 196, 203, 222, 311, 400, 444  
 기한이익상실 ..... 405, 409, 436

(ㄴ)

내부통제모범규준 ..... 393  
 녹색자산 ..... 399  
 녹색저축 ..... 399  
 누적호가수량한도 ..... 300, 308, 413

(ㄷ)

다자간매매체결회사 ..... 14, 19, 20, 22, 23, 61, 66, 70, 79,  
 80, 121, 25, 131, 398  
 단기과열종목 ..... 121, 177, 231, 32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45, 48, 110, 112, 127, 136, 358, 393  
 단기지표금리 ..... 105, 108, 110  
 대량보유 ..... 123, 132, 159

대용증권 ..... 230, 235, 302, 306, 313, 320, 401, 437  
 대주주 ..... 7, 16, 21, 55, 72, 77, 80, 83, 117, 140  
 대체거래시스템 ..... 4, 14  
 대표주관계약 ..... 361, 418  
 대형기술기업 ..... 241  
 돈육선물 ..... 304, 311  
 등록수수료제도 ..... 377

(ㄹ)

매매거래정지제도 ..... 260  
 매출신고서 ..... 140  
 맥(MAC)주소 ..... 313  
 모니터링의무 ..... 398  
 무보증사채 ..... 46, 211, 362, 366, 368, 405, 415, 418  
 미공개중요정보 ..... 29, 36  
 미니금선물거래 ..... 304, 311  
 미수동결계좌 ..... 179, 228, 236, 275, 277

(ㄷ)

바젤 III ..... 408  
 배상책임 ..... 26, 28  
 벤처기업 ..... 37, 75, 97, 225, 235, 239, 397  
 보완자본 ..... 408, 410  
 보호예수 ..... 187, 191, 198, 238, 252  
 복수거래소 제도 ..... 383  
 부동산 투자권유자문인력 ..... 382  
 부수업무 ..... 8, 71, 125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111  
 불공정거래 ..... 4, 26, 31, 157, 313, 321, 327, 378, 394, 396, 398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 366, 368, 415  
 불성실공시 ..... 207, 209, 212, 258, 264, 267, 269, 286, 288, 291, 296  
 비금융주력자 ..... 99

(스)

사모투자전문회사 ..... 19, 37, 38, 40, 79, 99, 124, 131  
 사업보고서 ..... 36, 39, 75, 192, 217, 287, 292, 407  
 사채관리계약 ..... 361  
 사후위탁증거금계좌 ..... 299, 301, 307, 312, 443  
 상장공시위원회 ..... 185, 282, 286, 294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188, 201, 216, 246, 253, 285, 294  
 상장지수 ..... 188  
 상장지수펀드 ..... 194, 196, 219, 222, 225, 227, 230, 304, 350  
 상장지수펀드·사모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350  
 석유사업자 ..... 314  
 석유전자상거래 ..... 317  
 선물스프레드거래 ..... 308  
 성년후견 ..... 436  
 세금우대펀드 ..... 353  
 손상차손 ..... 208  
 손해배상공동기금 ..... 9, 50, 57, 79  
 수탁회사 ..... 151  
 순자산가치 ..... 191, 196, 202  
 시가평가기준수익률 ..... 344, 355  
 시세조종 ..... 4, 30, 36, 325, 378

시장경보제도 ..... 178, 322, 325  
 신성장동력기업 ..... 239, 251, 272  
 신용공여 ..... 15, 17, 22, 62, 65, 71, 80, 82, 122, 131, 358  
 신용평가서 ..... 24, 71  
 신용평가업 ..... 25, 71, 79, 83, 211, 372  
 신용평가전문인력 ..... 349, 371, 381,  
 신용평가회사 ..... 24, 71, 124, 131, 194, 347, 371, 381  
 신종사채 ..... 36, 262  
 신주인수권부사채 ..... 19, 33, 39, 142  
 신주인수권증서 ..... 14, 16, 120, 140, 142  
 신탁업자 ..... 5, 75, 113, 124, 129, 420, 423  
 신탁재산 ..... 75, 113, 127, 129, 143, 145, 421  
 실권주 ..... 14, 16, 34, 140, 142, 368  
 실적예측공시 ..... 268, 269

(ㅇ)

알고리즘거래 ..... 299, 300, 306, 307, 308, 413, 443  
 약식심사 ..... 216, 217  
 약식제재금 ..... 324, 325, 328  
 양도성예금증서 ..... 105, 110, 114, 128  
 양정기준 ..... 378, 379  
 연금저축 비교공시 ..... 345, 352  
 연금저축펀드 ..... 345, 392, 427  
 연대책임 ..... 10, 151  
 예비인가 ..... 56, 77, 84, 89, 115, 118  
 예비투자설명서 ..... 28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 432, 439, 446, 451, 454

예탁증권 ..... 36, 346  
 외화증권 ..... 302, 320, 401, 447  
 우리사주조합원 ..... 5, 34, 365, 368  
 워런트 ..... 14, 16, 199, 219, 221, 437  
 원금보장 ELS · DLS ..... 410  
 원천징수 ..... 136, 162, 165, 428, 435  
 위임장 ..... 32  
 위탁회사 ..... 147, 151, 153, 154  
 위험관리전문인력 ..... 372  
 위험노출액한도 ..... 301, 312, 413, 443  
 윈도우 드레싱 ..... 397  
 유동성공급자 ..... 175, 179, 181, 250  
 유지위탁증거금제도 ..... 299, 307  
 윤리교육 ..... 334, 372  
 윤리서약서 ..... 297  
 은행지주회사 ..... 100, 408  
 의결권 ..... 19, 23, 32, 58, 97, 100, 123, 132, 205  
 의결권권유자 ..... 32  
 의무인수제도 ..... 242  
 이해상충방지의무 ..... 411  
 이해상충방지체계 ..... 7, 22, 26, 55, 67, 72, 118, 125, 194  
 인가업무단위 ..... 7, 54  
 인수업무조서 ..... 365

(즈)

자동호가취소기능 ..... 306, 309  
 자산운용산업 ..... 13, 394

자원개발 .....	292, 376
자율공시사항 .....	213, 260, 266, 322, 328
자율규제위원회 .....	338, 380
자선거래 .....	129, 144, 394, 423
잔존만기별수익률 .....	344
장외거래 중앙청산소 .....	4, 16
장외파생거래 .....	6, 12
장외파생상품거래청산회사 .....	320
장중대량매매제도 .....	226, 274
장중추가증거금 .....	299, 302, 413
재간접형 ETF .....	223
재형펀드 .....	341, 353
적격기관투자자 .....	143, 146, 311, 414
적격엔젤투자자 .....	139, 235
적격해외증권시장 .....	193, 240, 251
적정성원칙 .....	387, 423
전매기준 .....	137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	63, 65, 122, 132, 373, 382
전문평가제도 .....	256, 271
전산설비 .....	7, 21, 26, 54, 67, 72, 117, 147, 155, 195
전자금융거래 .....	87, 92, 94
전자금융보조업자 .....	87, 93, 95
전자금융사업자 .....	88, 441
정량평가 .....	216, 384
정보보호위원회 .....	164
정보보호최고책임자 .....	93, 162, 165
정보처리 .....	147, 150, 155

정성평가 .....	216, 384
제3자발행 .....	5
조인트 벤처 .....	204, 206
주식매수선택권 .....	36, 98
주식전환 .....	14, 210
주요사항보고서 .....	45
준법감시인 .....	334, 343, 348, 389, 394
중립적의결권행사제도 .....	36
중앙청산결제서비스기구 .....	6
중앙청산제도 .....	12
증권대차거래 .....	51, 453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213, 265, 407
증권투자상담사 .....	370
지정자문인 .....	225, 226, 235, 243, 249, 255, 259, 268, 273, 280, 284, 287, 295, 337, 361
지정자문인 제도 .....	243, 362
질권설정 .....	123, 432, 453
질적심사 .....	182, 185, 197, 218, 221, 238, 244, 250, 270, 280, 284
집합투자증권 잔고 .....	349
(츠)	
채권수익률 .....	354
청산의무거래 .....	6, 50, 53
청산증거금 .....	9, 58, 79, 319
최선집행의무 .....	69, 80
침해사고대응기관 .....	163, 166

(ㄱ)

코리보 ..... 109  
 콜시장 ..... 105, 106, 107, 108  
 코넥스시장 ..... 37, 74, 273

(ㄷ)

통화옵션거래 ..... 307, 310, 402, 413  
 퇴직연금사업자 ..... 369  
 투자권유대행인 ..... 336, 351  
 투자유한책임회사 ..... 347, 357  
 투자일임업 ..... 18, 375, 389  
 투자일임재산 ..... 75, 113, 126, 127, 388  
 투자자문업 ..... 18, 375  
 투자주의종목 ..... 322, 325  
 투자합자조합 ..... 347, 357  
 특수목적기업 ..... 204, 205  
 특수채증권 ..... 75, 128

(표)

파생결합증권 ..... 27, 387, 400, 410, 423  
 펀드발행분담금 ..... 419  
 펀드수익률 ..... 341, 342  
 포상금 ..... 157, 158, 327  
 표준단기금융집합투자 ..... 358  
 표준사채관리계약서 ..... 362  
 프라임브로커 ..... 15, 62

(ㅎ)

한국증권금융 ..... 363  
한정후건 ..... 436  
할당관세 ..... 317, 318  
합병규제 ..... 48, 49, 50  
합성 ETF ..... 188, 194, 223  
해외자원개발운용 전문인력 ..... 376  
해킹사고 ..... 92, 94, 441  
헤지펀드 ..... 15, 62  
협회심사면제 ..... 338, 343  
환매조건부매도 ..... 127  
회원제채금 ..... 322, 324  
희망금리밴드 ..... 415

(A)

ABCP ..... 109, 145  
ABS ..... 146

(C)

CCO ..... 170  
CD금리 ..... 105, 108, 110  
CISO ..... 93, 162

(E)

ELS · DLS ..... 144, 400, 410, 423

(L)

LIBOR금리 ..... 305

(M)

MMF ..... 45, 48, 110, 112, 127, 136, 350

MMW ..... 145

(P)

PEF ..... 37, 145